



#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6권 1호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목차

1 미국연방민사소송에서 청구병합에 관한 연구

김상균

19 건강권에 관한 일 고찰

김현진

31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

나동석

45 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박풍규

71 군용 비행장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갈등 완화방안 연구

양철호

87 내부고발자 보호의 주요쟁점 및 관련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이주희

105 대학생의 도박행동과 정신건강

장수미

117 부모양육행동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 일반가정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의 비교를 중심으로

황혜원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6권 1호  
2014년 7월호

## 미국연방민사소송에서 청구병합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김상균

### 국문요약

미국연방민소규칙 제18조는 청구병합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18조는 당사자병합을 그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반소청구, 횡소청구, 제3당사자 청구를 제기하면서 이에 병합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초의 청구와 병합되는 청구 상호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구의 병합을 허용하고 있다. 청구병합은 소답서면 제출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병합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방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사항 관할권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 보충관할권이 인정되어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청구가 병합되더라도 법원은 심리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소송경제를 위해서 병합된 청구의 사실심리를 분리할 수 있다. 한편 최초의 소송의 청구와 동일한 소송원인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하지 않은 경우, 그 청구는 기판력의 작용에 의해 후소 제기가 차단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소법상 후발적 청구병합은 소의 추가적 변경, 중간확인소, 반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후발적 청구병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적 방안으로 미국연방민소규칙 제18조의 규정처럼 병합되는 청구가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구병합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안으로서 현행 민소법 제23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청구의 추가적 변경, 중간확인소, 반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주제어: 청구병합-당사자병합-반소청구-횡소청구-제3당사자 청구

## I. 서론

오늘날의 민사분쟁은 사회생활과 경제거래관계가 복잡해지고 또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1인의 원고와 1인의 피고 사이에 1개의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소송유형 보다는 하나의 소송절차에 복수의 청구가 병합되거나 다수당사자가 존재하는 소송유형이 다수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같은 원고가 같은 피고에 대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청구병합으로 다루고(민소법 제253조), 다수당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소송으로 다루어서(민소법 제65조 이하),<sup>1)</sup>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소송경제와 재판의 모순저축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the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이하 ‘연방민소규칙’ 또는 ‘규칙’으로 약칭함)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하나의 소송에서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구병합(규칙 제18조)과 당사자병합(규칙 제19조·제20조)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밖에도 규칙 제13조(반소청구·횡소청구), 제14조(제3당사자청구)에 의한 청구병합이나 당사자병합에 의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청구병합에 관한 미국연방민소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고, 이에 비추어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청구병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구병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법상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 II. 청구병합의 연혁

미국연방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율은 일반적으로 보통법과 형평법이 적용되던 시기, Field 법전이 적용되던 시기, 그리고 현행 연방민사소송규칙이 적용되는 시기로 구별될 수 있는 바 각 시기별로 청구병합에 관한 규율의 모습을 살펴본다.

### 1. 보통법과 형평법상의 청구병합

보통법(common law)이 적용되는 소송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방식(forms of action)이 다른 청구들은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병합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었다.<sup>2)</sup> 예컨대 A가 여러 사람 앞에서 B를 도둑이라고 부르고, 상품 X를 B가 절취했

---

\* 이 논문은 2012~2014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1) 김홍규·강태원, 민사소송법(제3판), (삼영사, 2014), p.729;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8판), (박영사, 2014), p.675 참조.

2) Richard L. Marcus/ Martin H. Redish/ Edward F. Sherman, *Civil Procedure*, 4th.ed., [이하 Marcus, *Civil Procedure*로 약칭함], Thomson/West, 2005, p.234; Fleming James, Jr./ Geoffrey C. Hazard, Jr./ John Leubsdorf, *Civil Procedure*, 4th.ed., [이하 Fleming James,

다고 하여 그 상품을 강제로 탈환한 후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통하여 B를 체포하여 교도소에 구금한 사례에서, 청구병합이 허용되는지는 이들 청구의 소송방식이 동일한지 여부에 달려 있었다. 당해 사례에서 B는 보통법상 3가지의 소송원인(cause of action)에 의해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첫째, 구술에 의한 명예훼손(slander for the words spoken)을 이유로 한 소송, 둘째, 상품의 횡령을 이유로 한 동산침해소송(action in trover), 셋째, 불법감금(false imprisonment)을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B의 A에 대한 이들 청구는 특수주장침해소송이라는 소송방식(trespass-on-the-case form of action)에 해당되기 때문에, B는 단일한 소송에서 A를 상대로 이들 청구를 병합할 수 있었다.<sup>3)</sup> 그러나 만일 A가 영장 없이 B를 체포하였다면, 그 경우 불법감금에 관한 청구는 구술에 의한 명예훼손과 횡령에 관한 소송에 병합할 수 없었다. 영장 없는 체포는 특수주장침해소송이 아니라 불법침해소송(action in trespass)이라는 별개의 소송방식에 속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A에 의한 불법감금, 구술에 의한 명예훼손, 횡령행위가 모두 동일한 사건으로부터 발생했다고 해도 불법감금에 관한 청구는 병합될 수 없어서 하나의 소송으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sup>4)</sup>

보통법과 달리 형평법이 적용되는 소송절차에서는 1인의 원고와 1인의 피고 사이의 소송에서는 청구병합이 제한 없이 허용되었으며, 다수당사자가 존재하는 소송에서는 법관이 전체의 분쟁을 하나의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편리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병합을 허용하는 재량권을 갖고 있었다. 다만 보통법과 형평법은 별개의 법체계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보통법상의 청구와 형평법상의 청구의 병합은 허용되지 않았다.<sup>5)</sup>

## 2. Field 법전<sup>6)</sup>상의 청구병합

Field 법전 및 이를 모방한 卅의 법전들은 보통법과 형평법상의 청구병합에 관한 실무를 융합하기 위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종류별로 청구를 구별하고, 어느 한 종류에 속하는 청구들의 병합을 허용하였다. 즉, ①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기한 청구, ② 신체 침해를 이유로 한 청구, ③ 인격 침해를 이유로 한 청구, ④ 재산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한 청구, ⑤ 금전배상과 함께 또는 금전배상을 구하지 않는 부동산 회복을 위한 청구, ⑥ 동산회복을 위한 청구, ⑦ 소송의 심판대상을 형성하는 거래 또는 거래행위들로부터 발생하는 청구 등으로 그 종류를 구별하였다. 이러한 Field 법전상의 청구병합은 보통법상의 청구병합에 관한 제한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즉 전술한 사례에서 A가 구술로 B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그를 교도소에 구금했

*Civil Procedure*로 약칭함], Little, Brown and Company, 1992, p.464.

3) Charles Alan Wright/ Arthur R. Miller/ Mary Kay Kane/ Richard L. Marcus/ Adam N. Steinman, 6A Federal Practice & Procedure[이하 FPP로 약칭함], §1581, p.1. <<http://international.westlaw.com>> (last visit: 2014. 4. 10.)

4) FPP §1581, p.2.

5) Jack H. Friedenthal/ Mary Kay Kane / Arthur R. Miller, *Civil Procedure*, 4th.ed.,[이하 Friedenthal, *Civil Procedure*로 약칭함], Thomson/West, 2005. p.366.

6) Field 법전이란, David Dudley Field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서 1848년에 성립한 뉴욕 주의 민사소송법전(Code of Civil Procedure)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Field 법전은 보통법상의 소송방식을 폐지하고 또한 보통법과 형평법의 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당시 주의 절반 정도가 이 법전을 모방하여 자신들의 민사소송법전을 만들었을 정도로 미국 민사소송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다고 한다면, B는 구술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청구와 불법감금을 이유로 한 청구를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병합할 수 없었다. 양자의 청구가 동일한 사건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해도, 전자의 청구는 위 ③의 유형에 해당하고, 후자의 청구는 ②의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sup>7)</sup>

### 3. 연방민소규칙상의 청구병합

1938년 제정된 연방민소규칙 제18조는 전술한 Field 법전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구별을 폐지하고, 당사자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청구를 병합할 수 있도록 입법화되었다. 즉, 보통법이나 Field 법전에서와 같은 청구병합에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유로이 청구병합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sup>8)</sup> 산업화·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복잡한 분쟁들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 분쟁을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의 소송으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기 위함이었다. 더욱이 규칙 제18조는 형평법상의 청구, 보통법상의 청구, 해사법상의 청구들의 병합을 허용함으로써, 보통법·형평법·해사법상의 소송실무의 통합을 촉진하려 하였다.<sup>9)</sup>

이후 규칙 제18조는 1966년에 개정되었는데, 다수당사자소송에서 규칙 제18조의 적용에 관한 실무상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규정의 취지나 적용요건이 변경된 것은 아니었다.<sup>10)</sup> 예컨대 규칙 제20조(a)는 당사자들에 대한 청구가 동일한 거래로부터 발생하고 그리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당사자들을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칙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제20조(a)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판결들이 있었다. 즉, 다수당사자가 병합되는 사건에서, 모든 피고들에 대해 공통하는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청구들만이 병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공동피고들 중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들과 모든 피고들에 대한 다른 청구들이 동일한 거래로부터 발생하고 공통의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만 규칙 제18조(a)와 제20조(a)에 의거하여 청구병합이 허용된다는 것이었다.<sup>11)</sup>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Federal Housing Administrator v. Christianson* 사건<sup>12)</sup>이 있다. 당해 사건에서 A·B 두 개의 어음을 양수한 P가 A 어음의 지급에 관해서는 3인의 공동발행인 D1·D2·D3을 공동피고로 제소하고, B 어음의 지급에 관해서는 공동발행인 D1·D2를 공동피고로 병합을 구한 사건에서, A 어음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과 B 어음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은 각각 단일한 거래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각자 당사자병합이 허용되지만, A 어음과 B 어음의 발행은 다른 거래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B 어음에 관한 청구는 D1·D2·D3 피고 모두에게 공통하는 거래행위

7) *FPP §1581*, p.2.

8) 이러한 연방민소규칙상의 청구병합에 관한 변화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은 *United Mine Workers of America v. Gibbs* 사건(383 U.S. 715, 724, 86 S.Ct. 1130, 1138, 16 L.Ed.2d 218(1966))에서 “연방민소규칙 하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공정성에 모순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게 소송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병합과 당사자병합은 강력히 권장된다.”고 판시하였다. : Friedenthal, *Civil Procedure*, p.367.

9) *FPP §1581*, p.2.

10) *FPP §1583*, p.1.

11) *U.S. v. Anchor Line, Limited*, 232 *F.Supp.* 379 (S.D.N.Y. 1964); *Philadelphia Dressed Beef Co. v. Wilson & Co.*, 19 *F.R.D.* 198 (E.D.Pa. 1956); *Carl Gutmann & Co. v. Rohrer Knitting Mills*, 86 *F.Supp.*506 (E.D.Pa. 1949) 등.

12) 26 *F.Supp.* 419 (D.Conn. 1939).



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A 어음의 지급청구에 B 어음지급청구의 병합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A 어음에 관한 청구와 B 어음에 관한 청구가 동일한 거래 또는 사건으로부터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규칙 제18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청구병합을 인정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sup>13)</sup>

그리하여 규칙 제18조(a)에 관한 1966년 개정에서는 어떤 청구가 당사자 병합의 요건을 일단 충족하면, 그 청구가 본소청구이든 반소청구이든 횡소청구이든 제3당사자청구이든 관계없이 이들 청구를 제기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 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청구 모두를 병합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청구들이 다른 거래행위로부터 발생하고 그리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공통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문제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병합이 가능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되었던 것이다.<sup>14)</sup>

### Ⅲ. 청구병합의 특색과 유형 및 요건

#### 1. 특색

##### (가) 임의적 성격

규칙 제18조에 의한 청구병합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이다. 여기에서 강제적이라는 의미는 만일 어떠한 소송에서 청구를 병합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후 다른 소송으로 그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규칙 제18조는 소송절차의 편의성, 용이성, 경제성을 위해 인정된 것으로 어떤 청구를 병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후 그 청구를 제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sup>15)</sup> 다만 기판력(res judicata) 또는 청구배제효(claim preclusion)에 의해 청구를 최초의 소송에 병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청구를 그 후의 소송에서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은 기판력의 작용과 관련하여 후술한다.

##### (나) 권리로서의 성격

당사자가 규칙 제18조에 의한 청구병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의해 그 병합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규칙 제18조에 의한 청구병합은 당사자의 권리로서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 (다) 당사자 병합과의 관계

전술한 것처럼 규칙 제18조는 청구병합만을 규율하는 규정이며, 당사자 병합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즉, 당사자 병합에 관해서는 규칙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에서 그 요건들을 규율하고 있으며,<sup>17)</sup> 규칙 제18조는 이들 규정에 독립하여 적용되는 것이다.<sup>18)</sup> 따라

13) *FPP §1583*, p. 1.

14) *Kaminsky v. Abrams*, 41 *F.R.D.* 168, 171-172 (S.D.N.Y. 1966); *FPP §1583*, p.2.

15) *FPP §1582*, p.2; *Friedenthal, Civil Procedure*, p.367.

16) *FPP §1582*, p.2.

17) 당사자 병합에 관해서는, 쯔저,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상의 당사자병합”, 법학논총 제30권 제2호, 청

서 A 청구가 당사자 병합에 관한 위 규정들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적 병합을 구하는 B 청구는 최초의 A 청구와 관련성이 있든 없든 또는 그 청구를 당사자 모두가 제기하든 모두를 상대로 제기되든 또는 당사자 중 일부가 제기하든 그 일부를 상대로 제기되든, 규칙 제18조(a)에 의해 병합될 수 있다. 예컨대 P가 D1·D2·D3을 피고로 할 때, 그들에 대한 청구들이 동일한 거래 또는 사건에서 발생하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의 문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0조(a)에 의해 하나의 소송에서 당사자 병합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 병합에 관해서 법원이 규칙 제20조(a)의 요건이 충족되어 그 병합이 적법하다고 결정하면, 이후 규칙 제18조(a)가 적용되어 P는 D1·D2·D3 각자에 대하여 또는 이들 중 일부를 공동피고로 하는 다른 청구들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청구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 3인의 피고를 상대로 제기되었던 최초의 청구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도 병합될 수 있다<sup>19)20)</sup>

## 2. 청구병합의 유형

### (1) 서

규칙 제18조(a)는 청구병합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어떠한 청구, 반소청구(counterclaim), 횡소청구(crossclaim) 또는 제3당사자 청구(third-party claim)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그가 상대방 당사자(opposing party)에 대해서 갖는 모든 청구를 별개 독립한 청구로써 또는 선택적인 청구로써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칙 제18조(b)는 미확정적 청구(contingent claims)의 병합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는 두 개의 청구 중 어느 한 청구가 다른 청구의 처리결과에 의존하는 경우라도 두 개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으며, 다만 법원은 각 당사자들이 관련된 실제적인 권리와 모순되지 않는 한도에서 구제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원고는 금전의 지급청구와 함께 원고에 대한 사기적 양도(fraudulent conveyance)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금전지급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먼저 취득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양자의 규정을 나누어서 청구병합의 유형을 살펴본다.

### (2) 규칙 제18조(a)에 의한 청구병합

#### 가. 원시적·후발적 청구병합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장에 처음부터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제기(원시적 청구병합)하거나 또는 소제기 후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청구를 병합(후발적 청구병합)할 수도 있다. 병합되는 청구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어떠한 계약상의 청구는 이와 완전히 별개의 계약상의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와 병합될 수 있다.<sup>21)</sup>

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1), pp.61~87 참조.

18) *FPP §1585*, p.1

19) *FPP §1585*, p.1

20) 이와 같이 규칙 제18조는 병합되는 청구에 관해서 관할상의 요건을 제외하면 거의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재 청구병합에 관한 사건에서는 그 병합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쟁점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FPP §1587*, p.1.

21) *Ibid.*

나. 반소청구·횡소청구·제3당사자청구와 청구병합

(가) 반소청구란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제기하는 청구를 의미한다. 피고의 반소청구가 원고의 본소청구와 동일한 거래 또는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반소청구의 제기가 강제되지만(강제적 반소청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소청구의 제기는 임의적이다(임의적 반소청구). 양자의 차이는 강제적 반소청구에 해당하는 청구를 피고가 병합하지 아니한 경우 추후의 소송에서 그 청구의 제기가 차단되지만, 임의적 반소청구에 해당하는 청구를 병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의 소제기가 차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sup>22)</sup> 예컨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선적화물에 대한 운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화물이 운송 중 소실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sup>23)</sup>,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의 무효에 관한 확인청구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sup>24)</sup>들은,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와 동일한 거래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강제적 반소청구이다.

횡소청구란 어느 한 공동소송인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해 제기하는 청구를 뜻한다. 횡소청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횡소청구가 본소청구의 대상이 된 거래 또는 사건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본소청구의 대상인 재산에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sup>25)</sup> 예컨대, 자동차사고에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운전자와 피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한 경우 공동피고중 1인인 피해자가 다른 공동피고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때,<sup>26)</sup> 또는 택시 운전자가 충돌사고를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와 그 사용자를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운전자를 상대로 자동차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때,<sup>27)</sup> 이를 횡소청구로 제기할 수 있다. 횡소청구는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점에서 반소청구와 다르며, 또한 원고의 본소청구와 거래 또는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임의적 반소청구와 구별된다.

제3당사자 청구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책임이 있는 소외 제3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에 병합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에 의해 소송에 병합되는 제3자를 제3당사자 피고(third party defendant), 그 청구를 제기한 피고를 제3당사자 원고(third party plaintiff)라고 한다. 예컨대, 운행중이던 열차의 문이 고장 나서 그 문을 통해 떨어진 우편행낭으로 인해 원고가 부상당했다고 주장하며 철도회사를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연방정부에 의해 고용된 우편배달부가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철도회사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3당사자 청구를 주장하여 연방정부를 자신의 피고로 하여 소송에 병합할 수 있다.<sup>28)</sup> 이러한 제3당사자 청구는 본소청구와 동일한 거래 또는 사건으로부터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의 충족만으로는 부족하며, 제3당사자 피고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22) Friedenthal, *Civil Procedure*, p.370.; 반소청구에 관해서는, 손한기, “미국연방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반소와 횡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3), pp.124~137.; 졸저,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상의 반소청구”, 법학논총 제14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12), pp.153~175 참조.

23) *Eastern Transp. Co. v. U.S.*, *C.A.2d*, 1947, 159 *F.2d* 349.

24) *Planis Ins Co. v. Sandoval*, DC. Colo. 1964, 35 *F.R.D.* 293; *Aetna Life Ins. Co. v. Little Rock Bastet Co.*, 14 *F.R.D.* 381.

25) Friedenthal, *Civil Procedure*, p.377; 횡소청구에 관해서는, 손한기, 전제논문, pp.137~142.; 졸저, “공동당사자간의 횡소”, 비교사법 제6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6), pp.571~598 참조.

26) Friedenthal, *Civil Procedure*, p.379.

27) 손한기, 전제논문, p.139.

28) *U.S. v. Acord*, 209 *F.2d* 709 *C.A.10* 1954.

책임이 있을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반소청구나 횡소청구는 기존의 소송의 당사자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제3당사자 청구는 소의 제3자를 피고로 추가하는 점에서 당사자 추가의 모습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29)</sup>

한편,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소송에서 추후에 제기되는 반소청구, 횡소청구, 제3당사자 청구가 허용되면 이들 청구가 원고의 청구와 병합된다고 해서 이를 규칙 제18조(a)가 규정하는 청구병합의 유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반소청구는 규칙 제13조(a)~(f)·(h), 횡소청구는 규칙 제13조(g)·(h), 제3당사자 청구는 규칙 제14조에서 그 요건이 규율되고 있으며, 규칙 제18조(a)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즉, 반소청구, 횡소청구, 제3당사자 청구가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당해 청구를 제기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별개의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규칙 제18조(a)에 의한 청구병합 유형에 해당된다.

(나) 따라서 예컨대, 택시 운전자가 충돌사고를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와 그 사용자를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운전자를 상대로 자동차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횡소청구로 유효하게 제기한 경우, 횡소원고인 사용자는 횡소피고인 운전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청구를 규칙 제18조(a)에 의해 병합할 수 있으며, 이 때 추가되는 청구는 본소청구와 전혀 무관계한 것이라도 무방하다.<sup>30)</sup> 또한 예컨대, P는 전기회사 D가 전기선을 잘못 관리하여 이로 인해 부상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D를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송에서, D는 X가 크레인을 잘못 조작하여 전기선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D가 P에게 배상한다면 X는 D에게 그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D가 위 소송에 X를 제3당사자 피고로 병합하였다. 이 후 P는 X의 과실도 자신의 부상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X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규칙 제18조(a)에 의해 허용된다.<sup>31)</sup>

#### 다. 단순·선택적·예비적 청구병합

규칙 제18조(a)는 별개 독립한 것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비적 청구병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소답서면의 기재내용 및 그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 제8조(e)(2)에 의하면, 당사자는 복수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해 청구의 예비적 병합도 허용된다.<sup>32)</sup>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상의 이론에 근거하여 청구를 주장함과 동시에 이와 선택적으로 또는 예비적으로 그 주장을 부인하면서 불법행위 이론에 근거하여 청구를 병합할 수 있으며,<sup>33)</sup>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대리인이 유권대리인 또는 표현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청구들을 병합할 수 있다.<sup>34)</sup>

#### (3) 규칙 제18조(b)에 의한 청구병합

29) Friedenthal, *Civil Procedure*, p.383.

30) 손한기, 전제논문, pp.139~140.

31) 서철원, 미국 민사소송법, 법원사, 2005, p.104 참조.

32) Charles Alan Wright/ Arthur R. Miller/ Mary Kay Kane/ Richard L. Marcus/ Adam N. Steinman, 5 Fed. Federal Practice & Procedure, §1282, p.1. <<http://international.westlaw.com>> (last visit: 2014. 4. 10.).

33) Justice v. Prudential Ins. Co. of America, C.A.4th., 1965, 351 F.2d 462; Herlihy Mid-Continent Co. v. Bay City, C.A.6th, 1961, 293 F.2d 383 등.

34) Carroll v. Morrison Hotel Corp., C.A.7th, 1945, 149 F.2d 404; Btresh v. City of Maitland, Fla., 2010 WL 2639562, 5 n.4 (M.D.Fla. 2010) 등.

가. 규정의 취지

규칙 제18조(b)가 규정하는 청구병합의 유형은 사실상 규칙 제18조(a)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특히 규칙 제18조(b)가 별도로 미확정적 청구의 병합을 규정한 취지는, 과거 미확정적 청구가 의존하고 있는 청구에 관한 중국판결이 있어야 함을 이유로 미확정적 청구의 병합을 불허하였던 실무가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sup>35)</sup>

나. 미확정적 청구의 병합

규칙 제18조(b)는 미확정적 청구 또는 장래의 청구(contingent claim or prospective claim)의 병합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한 청구에 대한 소송의 심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미 다른 청구에 대한 중국적인 재판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 경우 전자의 청구를 미확정적 청구라고 한다. 즉 후자의 청구에 대한 중국판결이 있어야 전자의 청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전자의 청구 성립은 후자의 청구에 의존관계에 있게 된다. 예컨대 채권자 P가 채무자 D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그 담보재산이 Z에게 이전되었다고 하자. P가 Z를 상대로 그 재산의 이전은 P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P의 D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승소판결이 확정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P의 D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와 Z를 피고로 하여 사기에 의한 재산 이전의 취소를 병합할 수 있다는 것이 규칙 제18조(b)의 취지이다.<sup>36)</sup>

규칙 제18조(b) 제1문은 사기적 양도를 구하는 청구의 병합을 특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예시에 불과하며 다른 유형의 미확정 청구의 병합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다수의 州의 법률에서는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관한 승소판결을 획득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판결을 조건으로 하므로 미확정적 청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규칙 제18조(b)에 의해 병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유력한 견해는 그 청구병합을 허용하고 있다.<sup>37)</sup>

다. 반소청구·횡소청구·제3당사자청구

규칙 제18조(b)가 적용되는 사례인 경우에도 청구병합에 관한 일반규정인 규칙 제18조(a)가 적용된다. 따라서 반소청구·횡소청구·제3당사자 청구를 제기한 당사자는 미확정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sup>38)</sup>

35) *FPP §1590*, p.2.

36) Friedenthal, *Civil Procedure*, p.367.

37) *FPP §1594*, pp.1~2. 이와 달리 보험회사에 대한 미확정 청구의 병합을 허용하면, 보험회사의 실제 법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 법률의 취지가 몰각됨을 이유로 그 청구병합을 불허하는 판례들 [*Pennsylvania R. Co. v. Lattavo Bros.*, 9 F.R.D. 205 (N.D.Ohio 1949); *Jennings v. Beach*, 1 F.R.D. 442 (D. Mass., 1940); *Allegheny County v. Maryland Cas. Co.*, 32 F. Supp. 297, 301 (W.D. Pa. 194) 등]이 있다. 한편, 위 유력한 견해에 의하면 보험회사 피해자와 피보험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소송에서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미확정적 청구를 반소청구로 제기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38) *FPP §1591*, p.1.

### 3. 요건

#### (1) 청구병합의 시기

규칙 제18조에 의한 청구병합은 원칙적으로 소답서면(pleading)의 제출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sup>39)</sup> 소답서면에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권리의 구제를 구하는 주장을 담은 소장(complaint), 이것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권리주장을 부인하거나 방어방법을 제기하거나 또는 반소청구의 제기를 담은 답변서(answer), 답변서에 기재된 피고의 적극적인 방어방법이나 반소청구에 대한 원고의 반박을 담은 반박준비서면(reply)을 포함한다.<sup>40)</sup> 이러한 소답서면이 제출된 후에는 정식사실심리전 절차(pretrial proceedings)인 증거개시절차(discovery)와 심리전 협의절차(pretrial conference) 등을 거친 후 정식사실심리(trial)가 진행된다. 이처럼 규칙 제18조에 의한 청구병합은 소답서면 제출단계 이후인 정식사실심리전 절차나 정식사실심리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데, 소답서면 제출단계에서 청구 모두를 병합하게 하여 쟁점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증거개시를 통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 (2) 관할상의 요건

##### 가. 연방법원의 관할 요건 일반

연방법원이 제소된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심판사항 관할권(subject-matter jurisdiction)과 인적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을 가져야 한다. 전자의 관할권은 사건의 형태(case type)에 기초한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이고, 후자는 지역적 위치(geographic location)를 근거로 하여 사람에 대한 법원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sup>41)</sup>

(가) 심판사항 관할권은 사건을 기준으로 미국의 연방법원과 주법원 사이에서 어느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연방법원에 심판사항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연방문제를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당사자 간의 州籍(citizenship)이 상위하여야 한다. 전자를 연방문제 사건(federal question case)이라고 하고 후자를 주적상위사건(diversity jurisdiction case)이라고 한다.

연방문제 관할권은 연방헌법, 연방법률, 조약 등 연방법에 근거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서 연방법원에 인정된 재판관할권을 말한다. 특히 해사관련 사건, 파산사건, 특허사건, 유가증권관련 청구사건, 독점금지사건 등은 연방법원에만 배타적 관할권이 인정되며 주법원은 이들 사건에 관해서는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sup>42)</sup>

주적상위사건 관할권이란 다른 주의 주민들 사이의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서, 각 원고와 각 피고의 州籍이 다른 경우 연방법원에 인정되는 재판관할권을 말한다. 원고와 피고의 주적이 상위한 사건을 만일 원고가 속한 주의 법원이 심리하도록 허용하면 타주민인 피고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연방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sup>43)</sup> 주적상위 관할권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원고와 각 피고 사이의 주적이 상위하여야 하는데, 이

39) *FPP §1582*, p.1; Marcus, *Civil Procedure*, p.234.

40) Friedenthal, *Civil Procedure*, p.256; 서철원, 전게서, p.175.

41) 장영진·하혜경, 미국법강의, 세창출판사, 2008, p.348.

42) 서철원, 전게서, p.99.

43) Friedenthal, *Civil Procedure*, p.25.

를 완전한 주적상위(complete diversity jurisdiction)라고 한다. 따라서 원고나 피고 중 주적이 동일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예컨대, 공동원고 A·B·C가 공동피고 X·Y·Z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A·B는 뉴욕 주 주민이고, X·Y는 미네소타 주 주민이며, C·Z는 몬테나 주 주민이라고 할 때 이 사건은 완전한 주적상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즉, C와 Z가 동일한 주의 주민이므로, 각 원고와 각 피고의 주적이 달라야 한다는 완전한 주적상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sup>44)45)</sup> 둘째, 주적상위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이자와 소송비용을 제외한 청구금액(소가)이 \$75,000를 초과하여야 한다. 청구금액 요건은 원고가 주장한 소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피고가 복수일 때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한다.<sup>46)</sup>

(나) 한편 인적 관할권은, 연방법원에 심판사항 관할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 예컨대 피고가 소재하고 있는 곳 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연방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피고를 기준으로 인적 관할권이 인정될 때를 대인 관할권(in personam jurisdiction), 재산을 기준으로 인적 관할권이 인정될 때를 대물 관할권(in rem jurisdiction) 또는 준대물 관할권(quasi-in-rem jurisdiction)이라고 한다.<sup>47)</sup>

#### 나. 청구병합에 관한 관할 요건

(가)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도 연방법원은 원칙적으로 각 병합된 청구에 관하여 심판사항 관할권과 인적 관할권이 있어야 재판할 수 있다.<sup>48)</sup>

(나) 그런데 심판사항 관할권에 있어서, 예컨대 연방문제를 포함하는 청구에 관해서 연방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된 경우에 연방문제를 포함하지 않은 즉, 州法을 근거로 한 청구가 병합되었을 때, 연방법원이 당해 청구도 병합하여 재판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또한 완전한 주적상위를 근거로 연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었는데, 병합된 청구가 완전한 주적상위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방법원은 그 병합된 청구를 재판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과거 이러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병합된 청구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방문제 사건에서는 부수적 관할권(pendent jurisdiction), 주적상위 사건에서는 보조적 관할권(ancillary jurisdiction)이라는 유형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판례법상의 이론이 형성되었다. 현재는 양자를 통합하여 보충관할권(supplemental jurisdiction)이라는 이름하에 Section 1367 of Title 28 of the United States Code<sup>49)</sup>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당해 법률 규정에 따른 청구병합에 관한 보충관할권의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방문제 사건에 주법상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연방법상의 청구와 주법상의 청구가 동일한 거래 또는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때 연방법원은 주법상의 청구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따라서 예컨대, 원고 P가 피고 D를 상대로 연방법상의 상표권 침해에 관한 소를 제기하면서 불공정 경쟁에 기한 주법상의 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연방

44) 장영진·하혜경, 전거서, p.349.

45) 이러한 완전한 주적상위와는 달리 어느 원고와 어느 피고 사이의 주적만 상위하면 주적상위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최소한의 주적상위(minimal diversity)라고 한다. 위 사례에서 C·Z의 주적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원고인 A·B와 다른 피고인 X·Y의 주적이 상이하므로 최소한의 주적상위에 있게 된다.

46) 서철원, 전거서, p.89.

47) 연방법원의 재판관할권 일반에 관해서는, 서철원, 전거서, pp.17~124; 장영진·하혜경, 전거서, pp.347~386 참조.

48) Fleming James, *Civil Procedure*, p.470.

49) 당해 법률은 1990. 10. 28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1990. 12. 1. 이후의 모든 민사소송에 적용되었다.; Friedenthal, *Civil Procedure*, p.77.

법상의 청구와 주법상의 청구가 동일한 거래 또는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연방법원은 주법상의 청구도 병합심리할 수 있다.<sup>50)</sup>

다음으로 완전한 주적상위사건을 근거로 연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 경우에 완전한 주적상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청구가 병합되었을 때, 피고측이 병합하는 청구는 완전한 주적상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최소한의 주적상위(minimal diversity)만 있으면 연방법원은 당해 청구를 병합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측이 제기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주적상위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예컨대, I주 주민인 P는 N주의 전기회사 D를 피고로 하여 전기선을 잘못 관리해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D는 I주 회사인 X가 크레인을 잘못 조작하여 전기선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D가 P에게 배상한다면 X는 D에게 그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D가 X를 상대로 제3당사자 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사례에서 P는 X의 과실로 자신의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X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P와 X는 동일한 주의 주민이기 때문에 완전한 주적상위관할권이 성립되지 못하므로 보충적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P가 D와 X를 공동피고로 제소한 경우에는 완전한 주적상위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연방법원에 심판사항 관할권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병합심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건에 대해서 보충적 관할권을 긍정하여 병합심리를 허용한다면, 이를 원고가 탈법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한 주적상위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sup>51)</sup>

(다) 인적 관할권에 관해서는 심판사항관할권과 같은 보충적 관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병합되는 청구는 별도로 인적 관할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 4. 사실심리의 분리

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청구가 병합되더라도, 법원은 규칙 제42조(b)에 의해서 병합된 청구들에 관한 사실심리의 분리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병합된 청구에 관한 사실심리의 분리가 소송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되며, 소송경제를 촉진하며 또는 분쟁당사자들의 편견(prejudice)을 회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병합된 청구의 분리심리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규칙 18조가 소답서면을 제출하는 자(pleader)에게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청구를 병합할 권리를 부여하더라도, 병합된 청구 모두가 단일한 사실심리에 의해 해결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sup>52)</sup>

# IV. 기관력에 의한 청구병합의 간접적 강제

## 1. 서

어떤 청구에 관하여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이 판결은 앞으로 제기될 사건에 대하여

50) 서철원, 전게서, p.102.

51) 서철원, 전게서, p.104, p.109.

52) *FPP §1586*, p.1.



기판력을 미치게 된다. 기판력은 해당 문제에 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재판이 행해져 종국판결이 내려졌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판결의 효력을 *res judicata*라고 부르기도 하며 청구배제효(*claim preclusion*)라고도 한다. 기판력은 최초의 소송에서 특정한 소송원인(*cause of action*)에 속하는 어느 한 청구의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final judgment*)은, 동일한 소송원인에 속하는 다른 청구를 후의 소로 제기하는 것을 차단하는 작용을 한다.<sup>53)</sup>

기판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청구와 후의 청구가 동일한 소송원인에 속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sup>54)</sup> 소송원인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정의에 의하면 소송원인이란 소송의 심판객체로서 일정범위의 사실의 집합체(*group of facts*)로 이해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동일한 소송원인에 속하는지의 판단은, 청구들이 동일한 거래(*transactions*) 또는 사건(*events*)으로부터 발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임대차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거래 또는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청구들이므로 동일한 소송원인에 속하지 않는다.<sup>55)</sup> 따라서 최초의 소송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을 제기하고 임대차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병합하지 않았더라도 후자의 청구를 후소로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지장이 없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당해 교통사고로 인한 목 부분의 부상을 이유로 한 배상청구와 다리 부분의 부상을 이유로 한 배상청구는 동일한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양자의 청구는 동일한 소송원인에 속한다하는 것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된다. 또한 동일한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신체상의 손해배상청구도 동일한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동일한 소송원인에 기한 청구로 인정된다.<sup>56)</sup>

## 2. 기판력에 의한 청구병합의 간접적 강제

전술한 바와 같이 규칙 제18조는 병합되는 청구가 최초의 청구와 동일한 거래 또는 사건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병합이 강제되지도 않는다. 다만 최초의 소송에서 병합되지 않은 청구의 후소 제기가 차단될 수 있는데, 이는 규칙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판력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예컨대 D의 과실로 인해 D가 운전하던 차량과 P가 운전하던 차량이 충돌하여 P가 부상을 당하고 P의 차량도 파손된 경우에, 신체 부상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차량 파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동일한 소송원인에 속하는 청구들이다. 따라서 P가 D를 피고로 한 최초의 소송에서 전자의 손해배상청구만을 제기하고 후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지 않은 경우, 전자의 청구에 관한 종국판결이 내려지면 후자의 청구에 대한 후소의 제기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부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이 \$10,000임에도 \$7,000만을 청구하여 판결이 내려지면, 나머지 \$3,000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의 제기가 차단된다. 이 때문에 동일한 소송원인에 속하는 청구는 최초의

53) 서철원, 전거서, p.355~p.357.

54) 판결의 기판력 일반에 관해서는, 이규호, “미국법상 기판력 인정의 예외제도 및 지급명령의 효력에 대한 함의”, 민사소송 제13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9. 5), p.603 참조.

55) *FPP §1584*, p.1.

56) 서철원, 전거서, pp.359~360.

소송에서 병합이 간접적으로 강제된다고 할 수 있다.<sup>57)</sup>

## V. 결론

(가) 이상에서 살펴 본 바, 미국연방민소규칙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구병합은 당사자 병합을 그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상호간에 관련성이 없는 청구들도 병합이 가능하고, 소답서면의 제출단계에서만 청구의 병합이 가능하며, 병합되는 청구들은 원칙적으로 연방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병합청구가 분리심리 될 수 있으며, 기판력의 작용에 의해 청구병합이 간접적으로 강제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율하고 있는 청구병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청구병합은 당사자병합을 제외하고 논의하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양국의 법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첫째, 미국 민소규칙상의 청구병합의 적용범위는 우리 민소법상의 그것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우리 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횡소청구(crossclaim)나 제3당사자 청구(the third party claim)을 통한 청구병합의 유형이 인정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관련성이 없는 청구들을 후발적으로 병합할 수 있음에 비해서, 우리 법은 후발적 청구병합의 경우 일정한 관련성을 요구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우리 법은 후발적 청구병합에 해당하는 유형을 청구의 추가적 변경(민소법 제262조·제263조), 중간확인 의 소(제264조), 반소(제269조~제271조·제412조)로 다루고, 청구의 변경에는 청구기초의 동일성, 중간확인 의 소에서는 선결적 법률관계, 반소에서는 본소청구 또는 방어방법과의 관련성을 요한다. 따라서 우리 법은 후발적 청구병합을 미국 보다 엄격한 기준 하에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청구병합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병합을 신청하는 당사자로서는 소답서면 제출단계에서의 청구병합을 요구하는 미국 보다는 우리 법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나 중간확인 의 소는 본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그리고 반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원고의 동의를 얻으면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병합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미국의 사법체계는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재판관할권의 행사요건이 복잡하며, 따라서 병합된 청구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갖지 못하여 병합심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비해 우리 법은 병합된 청구에 관해 관할권을 보다 용이하게 긍정할 수 있다. 즉, 원시적 청구병합에서는 관련재판적(민소법 제2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어느 한 청구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청구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진다. 후발적 청구병합에 해당하는 청구의 추가적 변경의 경우 본소청구 법원에서 추가적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중간확인 의 소와 반소에서는 그 청구가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는 한 본소청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판관할권의 측면에서는 우리 법의 청구병합의 활용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우리 법에서 소송심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법원은 병합된 청구의 분리를 명할 수 있

57) FPP §1582, p.2.

다(민소법 제141조). 다만 해석론으로서는 청구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은 그 취지상 변론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sup>58)</sup> 미국에서는 청구가 관련성이 있더라도 연방법원은 심리의 편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등 일정한 경우 병합된 청구의 사실심리를 분리할 수 있다. 따라서 병합청구의 분리에 관해서 미국 법원의 법관이 더 큰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미국에서는 동일한 소송원인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하지 않으면 기관력의 작용에 의해 후의 소제기가 차단되므로 청구병합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의 청구병합에서는 누락된 청구에 대해서 기관력이 미치지 않으며 후소 제기는 가능하다.

(다) 법체계가 상이한 미국연방민소규칙상의 청구병합과 우리 민소법상의 청구병합에 관한 상술한 비교는 몇 가지만을 기준으로 한 평면적인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 법상의 청구병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미국의 청구병합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민소법상의 제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청구병합의 유형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지막으로 검토한다.

청구병합을 통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하나의 소송으로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민소규칙 제18조(a)의 규정처럼 병합되는 청구 상호간에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우리 민소법상으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요건으로 청구의 추가적 변경을 허용한 다음 이와 관련성이 없는 청구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분쟁 당사자 간에 하나의 소송으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컨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가옥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하면서 대여금반환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이다. 가옥명도청구와 대여금반환청구는 청구기초에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현행 민소법상의 해석론으로서는 피고의 동의가 있거나 이의 없이 변론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가 병합이 가능하다.<sup>59)</sup> 이 때 미국의 청구병합과 마찬가지로 청구의 추가적 병합에 병합되는 청구는 본소청구와 관련성이 없더라도 그 병합을 허용한다면 하나의 소송으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논의는 반소청구와 중간확인 의 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동일가옥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반소로 제기하면서 이에 병합하여 대여금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것이다. 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가옥의 소유권에 관한 중간확인 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에 병합하여 대여금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청구병합을 허용한 후, 본소청구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반환청구가 병합심리됨으로써 소송절차가 지연되거나 심리가 조잡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이익을 침해하게 되지만, 법원은 변론의 분리를 명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 사례에서 청구의 추가적 변경·반소·중간확인 의 소의 제기와 함께 병합하여 제기되는 대여금반환청구의 병합시기는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로 한정하여야 한다.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병합을 허용하면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해 상대방 당사자가 제1심에서 재판받을 이익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다만 변론의 분리를 제외한 이러한 청구병합에 관한 논의는 해석론을 벗어나는 것으로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민소법 제23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58) 김흥규·강태원, 전게서, p.736; 이시윤, 전게서, p.389.

59) 김흥규·강태원, 전게서, p.744; 이시윤, 전게서, p.690;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판결.

“청구의 추가적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족하지 않을까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상균,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상의 반소청구”, 법학논총 제14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12.
- 김상균, “공동당사자간의 횡소”, 비교사법 제6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6.
- 김상균,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상의 당사자병합”, 법학논총 제30권 제2호,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1.
- 김홍규·강태원, 민사소송법(제3판), 삼영사, 2014.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8판), 박영사, 2014.
- 서철원, 미국 민사소송법, 법원사, 2005.
- 손한기, “미국연방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반소와 횡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3.
- 이규호, “미국법상 기관력 인정의 예외제도 및 지급명령의 효력에 대한 함의”, 민사소송 제13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9. 5.
- 장영진·하혜경, 미국법강의, 세창출판사, 2008.
- Charles Alan Wright/ Arthur R. Miller/ Mary Kay Kane/ Richard L. Marcus/ Adam N. Steinman, 5 Fed. Federal Practice & Procedure, <<http://international.westlaw.com>> (last visit: 2014. 4. 10.)
- Charles Alan Wright/ Arthur R. Miller/ Mary Kay Kane/ Richard L. Marcus/ Adam N. Steinman, 6A Federal Practice & Procedure, <<http://international.westlaw.com>> (last visit: 2014. 4. 10.)
- Fleming James, Jr./ Geoffrey C. Hazard, Jr./ John Leubsdorf, Civil Procedure, 4th.ed., Little, Brown and Company, 1992.
- Jack H. Friedenthal/ Mary Kay Kane / Arthur R. Miller, Civil Procedure, 4th.ed., Thomson/West, 2005.
- Richard L. Marcus/ Martin H. Redish/ Edward F. Sherman, Civil Procedure, 4th.ed., Thomson/West, 2005.

## Abstract

The joinder of Claims for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does not deal with the joinder of parties. The Rule 18 provides that a party asserting a claim, counterclaim, crossclaim, or third-party claim may join, as independent or alternative claims, as many claims as it has against an opposing party, even though that claims are not related with the original claim. At the pleading stage are asserted with the joinder of claims, which are satisfied with the federal court jurisdiction independently. The court may order a separate trial of any joint claims for the purpose of convenience, expedition or economy of the procedure. It should be noted when an claim arising out of the same transactions or events with the original claim was not added to the original action, the claim will be precluded from asserting to a subsequent litigation due to the former judgment.

In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the additional joint claims are addressed with the additional alteration in claims, the lawsuit for interlocutory confirmation, or the counterclaim. To extend the scope of the additional joint claims,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Article 253 should be amended to add a subdivision which provides that a party asserting the additional alteration in claims, the lawsuit for interlocutory confirmation, or the counterclaim may join, as independent, alternative, or hypothetical claims, as many claims as it has against an opposing party.

Key Words: Joinder of Claims / Joinder of Parties / Counterclaim / Crossclaim / the Third Party Claim

논문투고일 : 2014. 06. 30

심사개시일 : 2014. 07. 01

게제확정일 : 2014. 07. 20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6권 1호  
2014년 7월호

## 건강권에 관한 일 고찰\*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헌 진

### 국 문 요 약

건강권이 오랫동안 사회권의 기본 원리로서 인식되어져 왔던 경험에 비하여 그것을 규정하는 개념과 규범의 구체성은 크게 진화하지 못 하였다. 우리나라 헌법과 보건의료 관련 법규를 통해서 살펴 본 건강권은 그 구체성의 수준이 낮으며, 낮은 수준의 건강권은 보건의료 제도의 현황을 통해서도 엿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권에 대한 인식과 규범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사회 구성원에게 건강권이 보편적으로 적용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건강권, 사회복지정책, 보건의료

### I. 서 론

우리사회에서 건강권이 정책적 담론이 된 것은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건강권은 용어상의 개념 그대로 對국민적 기본 권리로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동시에, 사회복지정책적 가치로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이념적 토대를 제공 할 수 있는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 건강권이 하나의 학술적이며 정책적 담론으로서 정립할 수 있었던 계기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통해 정론(政論) 또는 정쟁(政爭)에 놓였던 의료보험(현 국민건강보험의 전신) 통합논쟁이라 사료된다. 사회보험의 기제로서 당시 의료보험이 조합주의와 통합주의라는 행정체계가 이념 논쟁에 불씨를 집혔으며, 이 과정에서 건강권은 의료계와 학계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이념적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후 건강권은 의약분업 논쟁을 통해 다시 한 번 정론의 중

\* 이 논문은 2012-2014 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기본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심에 위치하였으며, 건강권은 정치적 그리고 정책적 대상으로 현재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권이 정치권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념적이고 정책적 논쟁의 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론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련 학술 영역인 사회복지학에서는 학문적 관심을 크게 받지 못 하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를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의 학술 영역 내부에서 연구의 대상을 미시적인 수준으로 한정시키려는 분위기와 보건과 의료가 사회복지학에서 하나의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서 큰 관심을 받지 못 하는 학문적 분위기에서 찾고 있다. 무엇보다도 건강권이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적 연구대상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권이라는 보편적 복지의 논리 차원에서 사회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적 관심사로서 접근하기 위해 건강권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건강권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첫째, 법적인 관점에서 건강권을 논의하고, 둘째, 권리의 차원에서 건강권을 접근해 보며, 마지막으로 건강권의 구성요인이라는 측면에서 건강권을 논의해 보겠다.

## II. 건강권에 대한 이론적 접근

### 1. 法的 근거로서의 건강권

#### 1) 헌법상의 건강권

우리나라 헌법이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통해서는 건강권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김주경, 2011: 139-141). 즉, 우리사회에서 건강권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를 기술한 법적인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 제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 11조의 “평등권에 기반을 둔다”라는 법적 규정은 보편적 사회복지의 가치를 제시함과 동시에 건강권에 접근할 수 있는 이념적 원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법제처). 즉, 건강권이 헌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국가원리라는 지배원리로 헌법에는 녹아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김주경, 2011: 149).

한편, 김주경(2011)은 건강권이 헌법상에 도출되는 규정을 간접 및 직접적 근거조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간접적 근거조항으로 헌법 제 10조와 제 35조 1항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법제처). 상기 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논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헌법의 최고원리이며 헌법질서의 구조적 원리인 동시에, 기본권 차원의 이념적 출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주경, 2011: 139).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이념은 어떠한 권리이든 관련 기본권의 간접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에 바탕을 둔 생명권의 보장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강권은 국민이 가지는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김주경 2011: 139).

둘째, 헌법 제 35조 1항 또한 간접 근거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제처). 제 35조 1항과 관련한 특이사항으로, 본 조항에는 ‘건강’이라는 용어를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에서 ‘건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조항은 이것이 유일하다는 것이다(김주경, 2011: 140). 하지만 제 35조 1항 역시 국민의 권리로서 건강을 규정짓고 있으나 간접적인 기본권의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반면, 헌법상의 직접적 근거 조항으로서 건강권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제 34조 1항과 제 36조 3항을 들 수 있다. 건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건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적 근거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34조 1항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상의 명시는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개념적 범위가 물질적인 최저생활보장이라 하더라도 건강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것이다(법제처). 그리고 제 36조 3항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은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김주경, 2011: 141). 더 나아가 헌법 제 34조 2항의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상기 제 36조 3항의 규정과 법적 연계되어 실천적 법적 근거를 규정할 수 있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법제처).

## 2) 보건·의료 관련 법규에서의 건강권

지금까지 헌법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건강권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규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건강권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규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을 경우,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이와 직접 연관된 법규로 볼 수 있다. 한편, 보건·의료와 직접적인 관련 법규로 볼 수는 없으나, 가족의 건강을 언급하였다는 측면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분석 대상에 추가하였다.

이들 법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법령을 통해 인식되는 건강권은 ‘국민으로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국가 및 의료인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의무’, 그리고 ‘의료정보를 알 권리 또는 보호 받을 권리’ 등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헌법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관련 법규상에 나타나는 건강권의 내용은 보건의료기본법의 제 10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이거나 분명치 않으며, 이를 유추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표 1> 국내 보건·의료 관련 법규 내의 건강권

보건·의료 관련 법규	건강권 관련 법 조항
<p>보건의료기본법</p>	<p>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10조(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p> <p>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의료법</p>	<p>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p> <p>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u>응급의료에 관한 법률</u>」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p> <p>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국민건강증진법</p>	<p>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 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p>
<p>건강검진기본법</p>	<p>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제4조(국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p>

보건·의료 관련 법규	건강권 관련 법 조항
<p data-bbox="343 622 512 656">건강가정기본법</p> <p data-bbox="343 752 512 786">국민건강보험법</p>	<p data-bbox="635 309 778 342">지 아니한다.</p> <p data-bbox="635 360 1345 506">② 모든 국민은 자신이 받은 국가건강검진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p> <p data-bbox="635 524 1345 837">③ 모든 국민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가족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자료: 김주경(2011)과 신영전(2011)의 내용과 법제처 관련 법규의 내용을 필자가 재정리한 것임.

### 3) 국제사회에서의 건강권

국제법규에서 명시한 건강권과 관련한 법원은 비차별적 건강권에 대한 1948년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과 이를 구체적이며 실천적으로 접근, 명시한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에서 찾을 수 있다(김희성·홍은경, 2012: 233; 김왕배·김종우, 2012: 7).

1948년 세계인권선언 상에 명시된 건강권과 관련된 법원적 의의는 제 2조와 제 25조에서 찾을 수 있다. 제 2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포괄적 인권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제 25조를 통해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결핍의 경우에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건강권에 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김희성·홍은경, 2012: 235-236에서 재인용).

하지만 이들 조항에 나타난 건강권의 내용 또한 추상적이며 권고적 성격의 문서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실천차원의 구체화 작업이 UN과의 공조 하에 1948년 세계보건기구(WHO) 설립을 통해 나타난다. 특히 WHO는 건강에 대한 개념 정의

를 새로이 추구한다. 1998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강에 대한 정의에 ‘영적 안녕(spiritual well-being)’ 부분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건강의 의미를 포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기여를 하였다(김주경, 2011: 147).

이후 ICESCR을 통해 건강권은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2012년 1월 현재 약 160개국 이 가입해 있으며 ICESCR에 명시된 인권보호 항목은 세계인권선언보다 구체적이며, 더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향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건강권에 대해서는 규약 제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에는 국가의 보편적 건강권에 대한 의무와 어린이 건강과 환경 및 산업위생개선, 질병의 예방과 통제 의무 및 보편적 의료 접근성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김희성·홍은경, 2012: 236-239).

권리로서의 건강권에 대한 인식은 1979년 알마-아타 선언(Declaration of Alma-Ata)을 통해 더욱 발전된다. 알마-아타 선언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제기된 인권으로서의 건강을 보다 사회적인 맥락, 즉 권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류는 건강을 보장받기 위하여 청결한 환경, 국가의 개입을 통한 의료복지라는 차원과 보건·의료 관련 사회기반시설 등 제반 인프라의 설치와 그 이용을 인권의 영역에서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알마-아타 선언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야기되는 건강 불평등의 문제를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김왕배·김종우, 2012: 9).

## 2. 사회적 기본 권리(rights)로서의 건강권

건강권을 권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였을 때, 건강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권적 기본권은 건강권이 국가의 규범만으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즉, 사회권적 기본권이 규범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범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국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기반구축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권적 기반 위의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선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직업 및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주경, 2011: 159; 신영전, 2011: 195).

한편, 자유권적 기본권은 다른 제도적인 장치 없이도 기본권 그 자체만으로 실현이 가능한 소극적인 수준의 권리로 정의한다. 즉, 환자의 알 권리, 치료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및 비밀보장 등이 이에 속한다((김주경, 2011: 159; 신영전, 2011: 195).

기본적 권리로서의 건강권은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하다(신영전, 2011: 193; 김주경, 2011: 153). 먼저, “건강할 권리(right to health)”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건강권을 규정할 때 명시하는 것인 동시에, 건강권의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접근방법이다. 즉, 가장 광범위한 건강권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며, 개별 존재가 신체적이며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을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김주경(2011)은 건강할 권리를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구분하여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즉, 소극적 의미의 건강할 권리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건강할 권리는 국민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국가 또는 사회의 포괄적인 보호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것을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주경, 2011: 153).

둘째, “건강 돌봄을 받을 권리(right to health care)”이다. 이것은 개인의 신분이나 재산, 즉 사회·경제적 계층수준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보건, 의료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셋째, “건강 돌봄 과정에서의 권리(right in health care)”이다. 이것은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내용이다. 즉, 사회 구성원이 사회 또는 국가의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의료 자원을 균등하게 향유할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제공받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이 무차별적이어야 함을 주문하고 있다(김주경, 2011: 54-155).

결국 상기 건강권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사회 구성원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 “신분을 초월한 자원의 접근”,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 내부에서 무차별적인 서비스의 양과 질의 수준”을 건강권의 기본 원리로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왕배와 김종우(2012)는 이를 가용성, 접근성, 용인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정리하면서,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가용성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 설비 및 서비스가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접근성은 “사용 가능한 설비와 서비스 그리고 관련 정보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용인가능성은 “사회문화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수준의 건강 설비와 서비스, 그리고 환경 등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김왕배·김종우, 2012: 10). 이에 대해 이상윤(2010)은 전술한 세 가지 요소에 ‘서비스의 질’을 강조하기도 한다(p.24).

### Ⅲ. 우리나라 건강권 보장 현황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별 국가의 건강권 보장 수준의 정도는 가용성, 접근성, 그리고 용인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 가능하다. 즉 상기 지수를 근간으로 한 국가의 건강권 보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몇 가지 지표로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건강권 보장 정도와 기타 국가 대비 수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가용성과 용인가능성의 측면에서 관찰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건강권 보장 수준은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와 대비하여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GDP 대비 총보건의료비, 총보건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의 수를 살펴보더라도,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보건 의료체계를 소유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 보아도 그 수치는 상당히 낮다. 단,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의 입원진료 병상 수는 일본과 함께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대규모 병원 중심의 운영체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온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표 2> 2011년도 주요 국가 보건의료 관련 지수

국가	총보건의료비	공공보건의료비	활동의사수	입원진료 병상수
	(GDP 대비) (단위: %)	(총보건의료비 대비) (단위: %)	(인구 1,000명당) (단위: 명)	(단위: 인구 천명당)
캐나다	11.2	70.4	-	-
핀란드	9.0	75.4	-	5.5
독일	11.3	76.5	3.8	8.3
이태리	9.2	77.8	4.1	3.4
일본	9.6(2010)	82.1(2010)	2.2(2010)	13.4
<b>한국</b>	<b>7.4</b>	<b>55.3</b>	<b>2.0</b>	<b>9.6</b>
멕시코	6.2(2010)	47.3(2010)	2.2	1.7
스페인	9.3	73.0	4.1	3.2
스웨덴	9.5	81.6	3.9(2010)	2.7
영국	9.4	82.8	2.8	3.0
미국	17.7	47.8	2.5	3.1(2010)

자료: OECD, Health Data 2013에서 필자가 재작성 하였음.

한편, 국내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의 지역별 편중현상은 접근성의 측면에서 건강권 보장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 수도권, 즉 서울과 경기도의 대형 의료기관 수와 입원 병상 수는 기타 광역시도와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더 나아가 광역 시도를 제외한 기타 지방과는 그 편차가 큰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對국민 건강권은 법규의 내용을 간과하더라도 그 현황 만으로도 권리로서의 보장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 지역별 의료기관 및 병상 분포

(단위: 개소, 개)

지역	의료기관 수		입원진료 병상 수	
	종합병원	일반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
서울	58	193	33,304	16,349
부산	27	103	12,779	12,711
대구	12	107	6,416	113,789
인천	16	54	6,729	7,335
광주	21	76	6,796	8,898
대전	8	33	5,153	3,783
울산	4	41	2,230	4,681
세종	-	7	-	902
경기	55	245	21,580	26,303
강원	15	40	5,228	5,342
충북	11	35	4,078	4,554
충남	12	42	4,672	3,877
전북	13	71	5,187	8,626
전남	22	65	6,686	8,760
경북	19	75	7,512	12,080
경남	24	135	8,372	16,348
제주	6	5	2,128	682

자료: 보건복지부,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 필자가 재작성 하였음.

## IV. 결 론

지금까지 살펴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건강권의 이념적 가치는 헌법이나 보건·의료 관련 법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제 법규나 규범에 나타나는 건강권에 관한 규범적 명시는 우리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구체성의 수준이 일정 수준 높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수준에서 건강권은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국가나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강권에 관한 실천적 가치와 의지에 따라서 개별 사회에서 전개되는 실천방향은 다르다.

그 결과는 전술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황에 나타나듯이 공공성과 가용성 그리고 접근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건강권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정부의 이해 수준이 기본 권리로서의 건강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 對국민 건강요인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장은 보건의료복지를 ‘시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보건위생 수준의 향상과 함께 사회구성원의 건강할 권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제도적 원칙하에 관련 기반시설과 서비스가 우리사회에 제공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과 함께 건강하게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왕배·김종우, 2012,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에 대한 탐색과 전망", 『보건과 사회과학』, 32, 1-18
- 김희성·홍은경, 2012,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입법배경 및 사회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36, 233-262
- 김주경, 2011, "헌법상 건강권의 개념 및 그 내용", 『헌법관례연구』, 12, 137-180
- 이상윤, 2010, "우리나라의 건강권 보장 실태", 『복지동향』, 24-28
- 신영전, 2011,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 지표개발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32, 181-222
- 보건복지부,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 OECD, 2013, 『Health Data』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A Study on the Right to Health in Social Welfare Policy

Hunjin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eongju University

Despite of long time interest regarding the right to health, the term and norm of the right to health have not yet been embodied. In Korea, the concrete context indicating the right to health are not discovered through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s in the area of health and medicine as well as social welfare policy. Unfortunately, the low level of recognizing the right to health in the institutional arena has resulted in the lack of public responsibilities in operating health and medical systems in the nation. Thus, it is important for government and policy makers to apply universally the clear recognition of the right to health to policy making process as well as to increase their concrete understanding of the right to health as the social right in the health policy of the nation.

Key Words: the right to health, social welfare policy, health and medicin

논문투고일 : 2014. 06. 30

심사개시일 : 2014. 07. 01

게제확정일 : 2014. 07. 20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6권 1호  
2014년 7월호

##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동석

###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자는 충청북도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주민 314명, 공무원 319명, 정신건강증진관련 전문요원 80명이다. 자료분석은 SPSS 20.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 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차이분석은 집단 간의 평균적 의견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문제 12개의 문항에 대하여 인식의 수준은 평균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정신건강증진관련 전문요원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수준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공무원과 지역주민은 정신건강문제 영역에 따라 인식수준의 깊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성폭력에 관해서는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셋째,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시급성에 인식은 전문요원, 지역주민, 공무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권위주의'와 '사회생활제한'에서는 전문요원, 공무원, 지역주민의 순으로 나타났고, '자비심'에서는 전문요원, 지역주민, 공무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정신건강'에서는 지역주민, 공무원이 전문요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앞으로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통합을 위하여 몇 가지의 함의를 제언하였다.

주제어; 정신건강, 정신건강인식, 정신건강태도,

\* 이 논문은 2013~2014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I.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정신보건법의 시행에 따른 변화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야기된 정신건강문제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자극으로 받아들인다고 되면, 자신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결과는 달라지게 되고 심지어는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도록 한다.

사람들의 인간행동은 개인이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자신의 정신건강이 달라질 것이고, 또 타인을 향해 작동된 상호작용에 따라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주변에서 보이는 정신건강문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서도 지역사회의 질적인 측면이 달라진다. 지역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에 따라서도 균형과 조화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즉, 지역사회의 문제는 하나의 연동된 체계 속에서 관련되기 때문에 그동안 부정적으로 간주해 왔던 정신건강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봄으로써 우리의 지역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전제하에서 정신건강에 대하여 인식과 태도를 연구해왔다. 지역사회가 정신건강문제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인식하여 받아들일 경우, 지역사회의 구성원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문제를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인다. 태도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있게 반응하려는 경향으로 정의하면, 넓은 의미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과 행동성향 뿐만아니라 신념의 총체로 구성된다(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2000). 즉, 특정한 사물, 이슈와 사람에 대한 감정으로써의 태도는 가치판단의 방향감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신건강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는가는 문제는 지역사회의 건강상태를 통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태도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문제를 바람직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정신건강 관련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악화되는 상황은 막게 될 것이다(서유진, 2013).

이러한 인식과 태도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시행되어 왔고 이러한 연구를 연구대상중심으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지역주민(김미영, 2007; 김송숙, 2001; 사공정규, 채정옥, 2001; 송인숙, 2003; 지은희, 2007), 근로자(안채순, 2001; 양선임, 2008), 환자가족(류석환, 2004), 공무원(김연실, 2010) 정신보건전문요원(김부자, 2003; 박선옥, 2002; 정미영, 2006) 등, 다양한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생각해 보면 대체적으로 조사대상을 부분적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다양한 대상간의 역동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단을 지역주민, 공무원,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분류하여 세 집단으로 나누고 이러한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하여 그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이해력(mental health literacy)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해야할 내용으로는 첫째, 일반적 특성과 조사대상집단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둘째,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조사대상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셋째,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조사대상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충청북도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 발행한 ‘2010년 충북 정신건강 연구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사용한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충청북도 12개 시군지역에서 7개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 10개소의 사회복지시설, 7개소의 보건소, 4개소의 정신요양시설을 중심으로 713명을 설문하였고, 지역주민 314명, 공무원 319명, 정신건강증진 관련요원 8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자료수집은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보고식 방법(self-reporting)을 사용하였으며 기간은 2010년 10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이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정신요양시설의 정신건강증진담당자가 대상자에게 설문의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한 임의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역주민의 직업을 보면 단순근로직 55명(17.8%), 숙련직 59명(19.1%), 판매-서비스직 13명(4.2%), 사무직 12명(3.9%), 관리직 3명(1.0%), 전문직 30명(9.7%), 학생 33명(10.7%), 주부 44명(14.2%), 무직 60명(19.4%)으로 분포되었다.

### 2. 설문지의 구성과 측정도구

#### 1) 질문지의 구성

질문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특징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각 질문지의 구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질문지의 구성

요인	항목	문항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집단, 성별, 나이, 거주지역, 결혼상태, 학력, 직업, 종교, 정신질환자 접촉경험,	9
정신건강 인식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자, 노이로제(신경성질환), 정신지체, 간질, 우울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치매노인, 성폭력, 가정폭력, 청소년비행, 자살. 정신건강문제 시급성.	13
정신건강 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CAMI)	40

\* 이 명칭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조사 당시에는 정신보건센터로 사용하였음

## 2) 정신건강인식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경험하고 접촉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설문으로 ‘전혀 심각하지 않다’에서 ‘매우 심각하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하고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위요인은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질환, 신경증, 지적장애(정신지체), 간질, 우울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치매, 성폭력, 가정폭력, 청소년비행, 자살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a .94로 나타났다.

## 3) 정신건강태도 척도(Commun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이 척도는 Taylor와 Decry가 1981년에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Scale(Cohen & Strueing, 1962),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Scale(Baker & Schulberg, 1967) 등을 검토하여 개발한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태도(Commun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판이다. 이 척도는 이주훈(1996) 등이 번역하여 수서-일원 지역에서 신뢰도를 측정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내용은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자비심(Benevolence), 사회생활제한(Social Restrictiveness), 지역정신건강이념(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과 같이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하위척도는 10문항씩 포함하여 4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표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CAMI) 설문지 문항 구성

하위 척도	내용	문항번호
권위주의	정신질환자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비인도주의적 감정으로 대하며, 정신질환자들을 하위계급으로 보아 강압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	부정태도:A1-A5 긍정태도:A6-A10
자비심	종교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정신질환자들에게 온정주의적 생각을 표현하는 것	긍정태도:B1-B5 부정태도:B6-B10
사회생활제한	정신질환자들은 사회에 특히 가정에 위협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입원 중이나 퇴원 후에도 사회적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태도	부정태도:S1-S5 긍정태도:S6-S10
지역 정신건강이념	정신장애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병이므로 지역 사회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견해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및 정신보건시설을 지역 사회 내에 세워서 정신질환자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	긍정태도:C1-C5 부정태도:C6-C10

구체적으로 보면 5개 문항의 긍정적 태도와 5개 문항의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권위주의’ 척도와 ‘사회생활제한’ 척도는 1번 문항에서 5번 문항까지, ‘자비심’ 척도와 ‘지역정신건강이념’ 척도는 6번에서 10번 문항까지 모두가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동의 정도를 ‘전적으로 동의한다(1점)’, ‘동의하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4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5

점)의 5점의 Likert 척도로 되어있고, 하위척도에 대한 6번 문항에서 10번 문항까지는 역채점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위주의는 정신질환자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비인도주의적 감정으로 대하며, 정신질환자들을 하위계급으로 보아 강압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로 간주된다. 둘째, 자비심의 과학적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종교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정신질환자들에게 온정주의적인 견해로써 높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로 간주한다. 셋째, 사회생활제한은 정신질환자들은 가정과 사회에 위협을 주므로 가정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원중이거나 퇴원 후에도 사회적으로 규제가 요구되며, 사회적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로 간주된다. 넷째, 지역정신건강이념은 정신보건 운동의 원리를 구체화하여 지역사회가 정신질환자와 접촉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도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보건시설이 지역 내 설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견해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로 간주된다.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적용한 통계는 SPSS 20.0을 사용하였다. 첫째, 수집된 자료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조사대상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척도의 측정에 대한 신뢰성은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셋째, 조사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정신건강태도와 인식의 평균에 대한 차이는 F검증을 통해 분석하여 파악하였다. 모든 분석에서의 유의수준은  $p < .05$  수준으로 통일하였고 F검증에 대한 구체적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Ⅲ. 조사결과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표 3>에서 보면 성별은 남자 255명(35.8%), 여자 458명(64.2%)이고, 나이는 20-29세 이하 137명(19.4%), 30세-39세 210명(29.8%), 40세-49세 205명(29.1%), 50세 이상153명(21.7%)이며, 종교는 284명(39.8%)가 없고 나머지가 종교를 가졌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163명(23.2%)이고 결혼이 499명(71.0%)이다. 거주지역은 청주가 206명(29.1%)로 가장 많고 이어서 충주시 43명(6.1%), 제천시 64명(9.0%), 청원군 65명(9.2%), 보은군 49명(6.9%), 음성군 32명(4.5%), 단양군 60명(8.5%), 옥천군 33명(4.7%), 진천군 3명(0.4%), 증평군 64명(9.0%), 괴산군 90명(12.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접촉경험을 알아본 바, 전문요원을 제외하면, 가끔 접촉하였다는 사람이 308명(49.0%)이고, 자주 접촉하였다는 경우는 68명(10.8%)이며, 없다는 사람들도 252명(40.0%)이나 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전체적인 특성을 보면, 여자가 2/3를 차지하

고, 나이는 30-40대이며, 60%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70%정도 이고, 청주, 괴산, 증평에 거주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를 접촉한 사람들은 60%정도였다.

## 2. 관련변수의 기술통계

연구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관련변수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응답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한 사례의 범위를 파악하였고, 관련 변수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의 분포를 통하여 응답수준을 파악하였으며, 평균이 3점 내외로 분포함으로써 사용할 변수들은 분석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3. 일반적 특성과 조사대상집단과의 관계

일반적인 특성과 조사대상집단과의 관계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첫째, 성별에 따라 대상집단을 비교해 보면, 남자는 공무원이 많고, 여자는 전문요원과 지역주민이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p=.012$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나이에 따라 대상집단을 비교해 보면, 20-30대는 전문요원이 많고, 40-50대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관련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신건강 인식	정신질환	708	1	5	3.10	1.01
	신경증	709	1	5	2.93	.93
	지적	707	1	5	2.93	.94
	간질	709	1	5	2.57	.96
	우울	708	1	5	3.33	1.13
	알코올	709	1	5	3.39	1.13
	약물	705	1	5	2.67	1.17
	치매	708	1	5	3.40	1.11
	성폭력	710	1	5	3.06	1.18
	가정폭력	707	1	5	3.06	1.14
	비행	711	1	5	3.16	1.10
	자살	710	1	5	3.08	1.20
정신건강 태도	권위주의	687	1	5	27.12	3.34
	자비심	687	1	5	29.30	3.27
	사회생활제한	689	1	5	27.02	3.25
	지역정신건강	692	1	5	26.08	5.35



셋째, 종교에 따라 대상집단을 비교해 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는 공무원이 많고, 기독교와 천주교는 전문요원, 불교는 지역주민이 많았다. 즉, 이러한 경향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결혼 상태에 따라 대상집단을 비교해 보면, 미혼은 전문요원이 많고, 기혼은 공무원이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거주지역에 따라 대상집단을 비교해 보면, 음성과 옥천은 지역주민이 많고, 청주, 청원, 증평, 괴산은 공무원이 많았으며, 그리고 충주, 제천, 보은, 단양은 전문요원이 많았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사대상집단간의 차이

구분		지역주민 (N=314)	공무원 (N=319)	전문요원 (N=80)	합계 (N=713)	유의수준
성별	남	98(31.2)	133(41.7)	24(30.0)	255(35.8)	$\chi^2=8.872$ df=2, p=.012
	여	216(68.8)	186(58.3)	56(70.0)	458(64.2)	
나이	20-29	66(21.1)	44(14.1)	27(34.2)	137(19.4)	$\chi^2=32.417$ df=6, p=.001
	30-39	88(28.1)	95(30.4)	27(34.2)	210(29.8)	
	40-49	76(24.3)	111(35.5)	18(22.8)	205(29.1)	
	50세 이상	83(26.5)	63(20.1)	7(8.9)	153(21.7)	
종교	없다	112(35.7)	148(46.4)	24(30.0)	284(39.8)	$\chi^2=27.099$ df=8 p=.001
	기독교	88(28.0)	62(19.4)	33(41.2)	183(25.7)	
	불교	74(23.6)	70(21.9)	10(12.5)	154(21.6)	
	천주교	36(11.5)	33(10.3)	13(16.2)	82(11.5)	
	기타	4(1.3)	6(1.9)	0(0.0)	10(1.4)	
결혼 상태	미혼	73(23.5)	56(17.8)	34(43.6)	163(23.2)	$\chi^2=29.364$ df=6 p=.001
	기혼	215(69.1)	245(78.0)	39(50.0)	499(71.0)	
	이혼(별거)	8(2.6)	6(1.9)	3(3.8)	17(2.4)	
	사별	15(4.8)	7(2.2)	2(2.6)	24(3.4)	
거주 지역	청주시	68(21.8)	121(37.9)	17(21.8)	206(29.1)	$\chi^2=174.090$ df=20 p=.001
	충주시	31(9.9)	4(1.3)	8(10.3)	43(6.1)	
	제천시	21(6.7)	31(9.7)	12(15.4)	64(9.0)	
	청원군	24(7.7)	38(11.9)	3(3.8)	65(9.2)	
	보은군	29(9.3)	7(2.2)	13(16.7)	49(6.9)	
	음성군	28(9.0)	0(0.0)	4(5.1)	32(4.5)	
	단양군	29(9.3)	15(4.7)	16(20.5)	60(8.5)	
	옥천군	27(8.7)	2(0.6)	4(5.1)	33(4.7)	
	진천군	1(0.3)	2(0.6)	0(0.0)	3(0.4)	
	증평군	25(8.0)	38(11.9)	1(1.3)	64(9.0)	
	괴산군	29(9.3)	61(19.1)	0(0.0)	90(12.7)	
정신질환 자 접촉경험	없다	129(41.3)	123(38.9)		252(40.1)	$\chi^2=.090$ df=2 p=.802
	가끔	149(47.8)	159(50.3)		308(49.0)	
	자주	34(10.9)	34(10.8)		68(10.8)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조사대상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에서 살펴보는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 4. 정신건강인식에 대한 조사대상집단간의 차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개별적인 정신건강문제 12개와 전반적인 정신건강의 시급성을 묻는 1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고, 이러한 정신건강인식에 대하여 조사대상집단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다음은 주요한 결과이다. 첫째, 정신질환, 신경증, 지적, 간질, 우울, 알코올, 약물, 치매, 가정폭력, 비행과 자살 등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3.06-3.40 수준으로 나타났고,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3.0 이상의 점수를 보여주어 조사대상자 모두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집단 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가지 영역 모두에서 전문요원의 인식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정신질환, 신경증, 간질, 알코올, 약물, 치매, 가정폭력, 자살의 항목에서 공무원의 인식수준이 2번째로 높았으며, 그 외에 지적, 우울, 비행의 항목에서는 지역주민의 인식수준이 2번째로 높았다. 즉, 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수준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공무원과 지역주민은 정신건강문제 영역에 따라 인식수준의 깊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수준이 지역주민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수준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정신건강전문요원, 공무원, 지역주민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성폭력에 관해서는 집단간의 차이는 다소 보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수준이  $p=.149$ 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문제에 대하여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셋째, 전반적으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해결의 시급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평균 2.86으로 다소 평균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간에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가장 인식수준이 높은 집단은 전문요원으로 나타났고, 2번째가 지역주민이며, 3번째가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정신건강인식에 대한 조사대상집단간의 차이

		지역 주민a	공무원b	전문 요원c	전체 평균	F	유의 수준	사후 검증
정신 질환	평균	3.03	3.03	3.61	3.10	11.803	p=.001	a,b <c
	표준편차	1.006	1.021	.775				
신경증	평균	2.87	2.90	3.28	2.93	6.450	p=.002	a,b <c
	표준편차	.932	.957	.733				
지적	평균	2.92	2.83	3.32	2.93	8.540	p=.001	a,b <c
	표준편차	.979	.924	.760				
간질	평균	2.49	2.56	2.89	2.57	5.649	p=.004	a,b <c
	표준편차	.952	.964	.886				
우울	평균	3.29	3.25	3.81	3.33	8.579	p=.001	a,b <c
	표준편차	1.167	1.114	.915				
알코올	평균	3.27	3.39	3.86	3.39	8.928	p=.001	a,b <c
	표준편차	1.180	1.110	.896				
약물	평균	2.55	2.70	2.99	2.67	4.530	p=.011	a <c
	표준편차	1.175	1.195	1.025				
치매	평균	3.28	3.45	3.69	3.40	4.902	p=.008	a <c
	표준편차	1.140	1.120	.866				
성폭력	평균	3.01	3.05	3.30	3.06	1.909	p=.149	NS
	표준편차	1.197	1.181	1.095				
가정폭 력	평균	2.93	3.06	3.54	3.06	9.126	p=.001	a,b <c
	표준편차	1.152	1.156	.913				
비행	평균	3.13	3.09	3.53	3.16	5.260	p=.005	a,b <c
	표준편차	1.121	1.083	.993				
자살	평균	2.94	3.07	3.65	3.08	11.446	p=.001	a,b <c
	표준편차	1.227	1.174	1.069				
시급성	평균	2.86	2.77	3.23	2.86	15.008	p=.001	a,b <c
	표준편차	.693	.657	.530				

이러한 결과를 정신건강문제의 개별적인 인식과 비교해 보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서 전문요원집단이 인식수준이 가장 높고 해결에 대한 시급성도 가장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지역주민과 공무원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정신건강태도에 대한 조사대상집단간의 차이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4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서 조사대상집단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4개의 하위

영역 모두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위주의’와 ‘사회생활제한’의 하위영역은 전문요원이 평균점수가 높고, 이어서 공무원, 지역주민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비심’의 하위영역에서는 전문요원이 평균점수가 높고, 이어서 지역주민, 공무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정신건강’의 하위영역에서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평균점수가 전문요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 정신건강태도에 대한 조사대상집단간의 차이

		지역주민a	공무원b	전문요원c	F	유의 수준	사후 검증
권위주의	평균	26.5261	27.3072	28.7467	14.759	$p=.001$	a,b < c
	표준편차	3.70303	2.81281	3.18821			
자비심	평균	26.8937	26.8026	28.3165	7.318	$p=.001$	a,b < c
	표준편차	3.52448	3.06899	2.54470			
사회생활제한	평균	28.9799	29.2524	30.6962	8.871	$p=.001$	a,b < c
	표준편차	3.62128	2.97299	2.56882			
지역정신건강	평균	26.9145	26.5552	21.0875	44.810	$p=.001$	a, b > c
	표준편차	5.21162	4.92420	4.79766			

즉, 전문요원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비해서 정신질환을 통해 보여지는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는 권위적이지 않고, 온정적이지 않으며, 사회적 기능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은 지역사회를 통해서 재활서비스를 받음으로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충북이라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분석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충청북도 정신보건지원단이 2010년에 조사한 ‘충북 정신건강연구 프로젝트 보고서’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여기서 활용한 자료는 2010년 10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1달간 수집하였고, 충북내 12개 시군의 지역주민 314명, 공무원 319명, 정신건강증진관련 전문요원 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0.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 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은 간단해 요약해 보았고, 이어서 다른 연구결과들과 논의를 통해서 분석해 보았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경우, 여자의 응답률이 높고, 30대가 가장 많으며, 종교를 가진 경우가 65%정도로써 이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다. 대체적으로 결혼한 상태이고 거주지역은 대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었다. 공무원의 경우, 남녀가

비슷하고, 나이는 40대가 많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도 비슷하며 불교, 기독교, 천주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상태는 높은 편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거주지는 청주, 청원, 증평 등에서 많았다. 전문요원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고, 나이는 20-30대가 주류이어서 미혼이 다른 집단들 보다 훨씬 더 많으며, 종교를 가진 경우가 많았고 이 중에서 기독교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와의 접촉경험은 공무원이 지역주민보다 다소 많이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특성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전문요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요원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비해서 여자가 많고, 젊어서 미혼상태로 있으며, 종교를 더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신건강문제 12개의 문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균 3.0 이상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 모두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조사대상집단을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비교해 본 결과, 정신건강증진관련 전문요원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수준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공무원과 지역주민은 정신건강문제 영역에 따라 인식수준의 깊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수준이 지역주민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수준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정신건강전문요원, 공무원, 지역주민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할 수 있고 정미영(2006)의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성폭력에 관해서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은 성폭력문제에 대하여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셋째,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시급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요원, 지역주민, 공무원의 순으로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건강문제의 인식과 시급성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정신건강의 이해에 있어서 전문요원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수준을 향상시켜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4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서 조사대상집단간의 차이를 보면 '권위주의'와 '사회생활제한'에서는 전문요원, 공무원, 지역주민의 순으로 나타났고, '자비심'에서는 전문요원, 지역주민, 공무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정신건강'에서는 지역주민, 공무원이 전문요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연구와 평균으로 비교해 보면 지역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김미영, 2007; 사공정규, 채정옥, 2001). 즉, 전문요원이 갖는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는 권위적이지 않고, 온정적이지 않으며, 사회적 기능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신질환은 지역사회재활서비스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전문요원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므로 지경환, 왕은석(2006)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는 지역사회정신건강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고,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과 치료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수준이 나빠지면 환자발생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분

위기가 활력이 없어지며 주민의 삶의 질도 떨어질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지역사회 구성원이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집단별로 생각한다면 정신건강관련 전문요원이 가장 높아 나머지 집단구성원들도 이러한 수준으로 향상시켜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폭력’과 같은 문제는 모든 집단에서 상당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외의 다른 문제들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향상된 인식수준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문제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신질환을 통해 살펴본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도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준을 목표로 하여 태도변화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맡고 있는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사회가 요청하는 영역에서 정신건강의 이해를 돕는 기능에 충실을 다해야할 것이다.

둘째,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같이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생활하는 것이고 증상 혹은 문제가 있지만 이로 인해 생활에 영향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도록 해야한다.

셋째,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시설은 주거생활을 제공하는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이 아닌 외래의원,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 등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과 지원가능한 재활자원을 구축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이해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의 수준을 결정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주민, 공무원 그리고 정신건강증진관련 전문요원을 비교하여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가 겨냥해야할 대상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강도를 제공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후속적 연구과제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미영(2007). 정신장애인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부자(2003). 정신과 간호사, 비정신과 간호사간의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송숙(200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실(2010). 일 농촌지역 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보건문제 및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인식.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옥(2002).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실시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성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석환(2004). 정신과 환자 가족의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보호부담. 사회정신의학, 9, 72-79.
- 사공정규, 채정옥(2001). 포항시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1), 50-62.
- 서유진(2013), 긍정심리학의 정신건강요소에 기초한 장애학생 가족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4), 27-56,
- 송인숙(2003).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연천군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채순, 김지윤, 장숙희, 양호순, 김정숙, 김호덕(2001). 광양만권지역 직장인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조사. 순천 청암대학 학술지, 25, 85-114.
- 양선임, 임현우, 조선진, 지유나, 정혜선, 김보경, 이강숙, 이원철(2008), 정신질환에 대한 중소 규모 사업장 중간관리자의 인식 및 태도, 한국산업간호학회지 17(1), 23-33.
- 이주훈, 이충순, 황태연, 한광수, 이영문(1996). 수서-일원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용인정신의학보. 3(2), 188-199.
- 이학식, 안광호, 하영원(2000), 소비자행동. 학현사.
- 정미영(2006),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지경환, 왕은식(2006).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국립정신병원 직원과 사립정신병원 직원의 비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5(3), 230-237.
- 지은희(2007). 일 도농복합지역 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및 정신보건문제와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 Study on the Attitudes and Recognition about Mental Health

Ra, Dongseo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eong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ttitudes and recognition about mental health for the people living in the community. The raw data of '2010 Chungbuk Mental Health Research Project Report' performed by Chungbuk Mental Health Support Committee were analyzed. Sampl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re 314 community dwellers, 319 public servants and 80 mental health related specialists. Using SPSS 20,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OVA analysis was investigated.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recognition level is higher than average about 12 mental health problems. The mental health-related specialist levels of mental health recognition in the community is the highest, while public servants and community dwellers is lower than the mental health-related specialist. Second, when it comes to sexual violence, even people belonging to any group that has been recognized as serious. Third, recognizing the urgency for mental health problems, mental health-related specialist, community dwellers and public servants in order. Fourth, in the attitudes of mental health, case of 'Authoritarianism' and 'Social Restrictiveness', the mental health-related specialist, public servants, community dwellers showed up order. Case of 'Benevolence', the mental health-related specialist, community dwellers, public servants showed up order. Case of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the community dwellers and public servants higher than the mental health-related specialist. Based on the result, the study discussed and the some implications proposed.

Key Words: mental health, mental health attitude, mental health recognition

논문투고일 : 2014. 06. 30

심사개시일 : 2014. 07. 01

게제확정일 : 2014. 07. 20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6권 1호  
2014년 7월호

## 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외협력팀 과장

박 풍 규

### 국 문 요 약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의 발전과 의료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국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노인계층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및 기대는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높은 비율의 노년인구는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노동과 사회참여의 기회에서 배제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계층의 역할 상실문제, 고독과 소외문제, 경제적 빈곤문제, 질병과 건강관리문제, 노인부양 및 보호문제, 여가시간의 문제 등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에게 있어서 삶과 여가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고 일상적이며 고된 삶을 단순히 연장할 수도 있다. 분명 노년기의 여가 생활은 노인들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년기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인 안정감,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또한 여가는 노인들에게 신체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건강과 연관된 측면 등에서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

우리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추으로써 노인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위에 관심을 갖고 평생 축적해온 경험과 기술, 지혜로써 젊은 세대로부터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 여가 전문인력의 양성, 노인 여가시설의 설치 및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노년기의 여가시간은 더욱 연장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앞으로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주제어 : 노인, 여가활동, 여가시설, 노인문제

## I . 서론

최근 경제수준의 발전과 의료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국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 역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09년에 10%를 넘어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13년 12.2%를 차지했다. 향후 2018년에는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20년 15.7%,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30년 노인인구가 24.4%에 이를 것이다.

고령인구 숫자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3년 12월 현재 613만7천702명이며, 2025년 1천만 명을 넘어선 뒤 2050년 1천799만1천52명, 전체 인구의 37.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고령 사회적·가정적·개인적으로 고령 사회, 더 나아가 초 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1970년 62.1세에서 1990년 71.3세, 1997년에는 남성 70.6세와 여성 78.1세로 남녀 평균 74.3세, 2000년 74.3세, 2001년 남성 72.8세, 여성 80세로 여성은 이미 평균 수명 80세를 넘어섰으며, 남녀평균 76.4세이다. 2005년 77.7세, 2007년 79.6세에서 2012년 81.4세로 1.8세 늘었다. 2013년 현재 남 78세, 여 85세, 남녀평균 81.5세이다. 향후 2020년에 84.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수명도 2007년 71.0세에서 2020년 75.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www.kosis.go.kr).

이러한 고령사회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 자체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은 국가, 사회 및 가족 공동책임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라 가족주기가 변화하여 노인 부부끼리 생활하는 기간과 배우자 사별 후 여성노인이 혼자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건강한 노인의 여가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나아가,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여가활동에 따른 비용 및 노인질환에 대한 의료·요양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켜 사회적 비용과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치매·중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등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2003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14.8%인 59만 명, 2010년에는 79만 명, 2020년에는 114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잠재적 비용은 2003년에 약 4조원으로 추계되었으며 2020년에는 현재가격 기준으로 8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홍미령, 2003: 20).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적자, 낮은 보험료, 한시법에 근거한 재원조달 등으로 재정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미흡하며 건강보험의 3개월 초과 체납

자가 전체의 15%에 이르는 등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고령사회의 노후보장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책, 노인 건강을 비롯한 요양보호 문제 등등 우리나라는 현재 여러 가지 노인의 사회적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노인복지대책이 수립·진행되어야 한다(권중돈, 2007: 38).

위에 기술한 노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노인복지정책과 더불어, 노년기 삶에 있어서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가선용이 노년기 삶의 전부는 아니다. 만약 여가와 노인을 동일시한다면 여가와 관련된 부정적 측면이 노인에게 투영되어 노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에만 기여하게 될 뿐이다.

현재의 노인의 여가활동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인 여가활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미미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로서 고령화 사회의 대두와 경제적 수준의 향상 등에 따른 노인 여가 활동 영향요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 등 각종 통신 매체의 발달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노인들은 더욱 소외감을 느끼고 생활의 빈곤으로 인해 삶의 가치관을 상실해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를 가끔 뉴스를 통해 접한다. 이미 작년 기준으로 볼 때 노령 층의 인구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 노인 자살률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노인이 여가 활동을 통해 자아실현과 자존감 회복을 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의 개념 및 특성

#### 1) 노인의 개념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개인의 자기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어 정상인으로서의 기능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계탁, 1997: 583).

다른 말로하면 인생의 최종단계에 돌입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상실현상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경설, 1993: 76).

브린(Leonard. I. Breen)은 노인이란 생리적, 개별적, 기능적 연령의 실질연령을 중심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 특징으로는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그 기능이 퇴화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

할이 상실된 사람 등을 말한다(Breen, 1960: 150-157).

노인을 단순히 자연 연령만으로 규정하기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실질 연령만으로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난 보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의학적인 견지에서 다음의 다섯 가지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환경변화에 적절히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둘째,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셋째,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시기에 있는 사람.

넷째, 생활체의 적응력이 정신적으로 손상되어 가고 있는 사람.

다섯째,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윤규정, 2003: 6).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노인을 규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생활보호법(1961)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1993)에서도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60세를 노인으로 보는 견해로부터 65세를 전후하여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도시의 중류층 가정에서는 70세경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남기민, 1998: 14).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이나 생활보호법에서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말한다.

## 2) 노인의 특성

### (1) 신체적 특성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신체구조의 쇠퇴로 피부와 지방조직의 감소, 시야의 약화, 심장비대와 심장박동의 약화, 백발의 증가, 머리카락의 감소, 주름살의 증가, 얼룩반점의 증가, 신장의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둘째,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이 나타난다. 특히 만성질환의 출현은 노인의 생리적 기능상의 노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생리적 노화현상은 소화기능, 호흡기능, 신진 대사와 속도의 저하, 변비, 수면의 양과 질의 감소, 피로감, 불면증, 야뇨증 등을 초래한다.

### (2) 심리적 특성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은 우울증적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내부지향적이고 수동적인 증상을 보인다. 둘째, 노인은 융통성이 없고 경직성을 지니고 있으며, 조심성이 증가한다. 셋째, 노인이 되면 지나온 생을 되돌아보고 회심하며, 앞으로 남은 날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넷째, 노인이 되면 자기가 죽을 때 무언가를 남기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신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지각하고 후세에 유산을 남겨 자기가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신체적, 경제적 능력의 쇠퇴로 심리적 의존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3) 사회적 특성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수입의 감소, 지위의 약화, 그리고 사기의 저하, 사회와 가족, 친척들의 외면 등으로 손실감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정년퇴직 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수록 역할의 단절과 위기감의 고조로 불안 초조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의 사회적 손실은 현대 산업사회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 2. 노인의 여가활동

### 1) 노인의 여가의 개념

노인에게 있어서의 여가개념은 재생산의 수단 또는 심신의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젊은이들의 여가성격과는 근본적으로 그 유형을 달리한다. 노인의 경우는 언제 어디서나 여가가 넘쳐나는 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임으로 여가 자체가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무료함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그것은 노인들에게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노인의 경우, 소극적으로는 여가를 적절히 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여가를 즐겁고 보람 있게 보냄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마무리 짓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노인의 여가활동은 ① 건강증진, ② 사회적 접촉과 사권의 기회 증진, ③ 사기와 생활만족감 증진, ④ 신체적 및 정신적 자신감 증진, ⑤ 자기가치성과 자기유용성의 확대, ⑥ 자립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특히 ⑦ 재미있고 즐거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Leitner & Leitner, 1985).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한 것들이 거론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서병숙, 1991).

① 경제적 요인 : 경제적 사정이 좋은 노인들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② 건강상태 : 좋은 건강상태와 기동력은 노인들에게 여가활동의 폭을 넓게 해주고 참여 빈도도 높게 유지할 수 있게 한다. ③ 생활환경 : 가까이 친족이 있거나 이웃에 노인이 많거나 노인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증가할 가능성이 많고 활동 범위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④ 생활 목표 :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양하고 많을수록 그만큼 활동이 많아지게 된다. ⑤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화 : 이는 여가활동의 능력을 향상시켜 노년기에 있어서도 중년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유지 할 수 있게 한다.

### 2) 노인의 여가의 유형

노인의 여가형태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아래 <표 1> 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개인의 연령, 교육정도, 건강상태, 경제적 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과거의 생활관습 혹은 생(生)의 목표 등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인의 여가형태는 심남수(2007)가 분류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6가지의 분류가 매우 보편적으로 쓰여진다고 할 수 있다(김성순, 1990: 서병숙, 1991).

즉, ① 한거형(閑居型), ② 자기완성형(自己完成型), ③ 가족충실형(家族充實型), ④ 사

교오락형(社交娛樂型), ⑤ 사회참여형(社會參與型), ⑥ 폐쇄형(閉鎖型) 등이다.

노인의 여가형태를 6가지로 분류해 보았지만, 어느 노인은 꼭 이 형태에만 해당된다고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몇 가지 형태를 조금씩 가졌지만 특히 어떤 형태를 주로 취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년기 일정 기간의 생활 무드, 의미 있는 타자의 죽음 등 생활환경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발발 등을 이유로 해서 노인의 여가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들은 여가시간을 가정의 테두리 밖에서 보내려는 욕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과거에 누렸던 가부장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자녀들과의 대화단절, 가사 결정권에서의 소외, 가정 내에서는 무용지물 시 되고 있어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없다고 여기는 노인들은 집안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여가시간을 메꾸어 나갈만한 대상을 가정 이외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가정 외에서 여가시간을 메꾸어 나가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그 유형은 반드시 일정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노인여가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그들 중 많은 비율은 노인학교, 경로당, 공원, 약수터, 교회, 사찰, 복덕방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 동년배의 노인들과 어울려서 대화를 나누던가 타인이 노는 것을 구경하며 소일한다. 노인들은 자택에서 가급적이면 근거리에서 있는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조용한 곳을 여가장소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표 1〉 국내외 학자들의 노인 여가활동 유형 분류

연구자	분류기준	여가활동유형
Havighurst(1973)	활동 유형	가사활동, 가족생활활동, 종교활동, 정치활동, 사회활동, 위인관계 활동, 취미·오락 활동
McKechnie(1974)	신체적 유형	조작적 활동, 공작적 활동, 지적 활동, 일상적 활동, 스포츠 활동, 매혹적 스포츠 활동
최인근(2008)	참여 실태	가정 지향적 운동, 자기개발 활동, 종교 수양활동, 사교적 활동, 대중문화 활동, 휴식활동
심남수(2007)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로형, 한거형, 사고오락형, 자기 완성형, 참여 활동형, 폐쇄형
박종천(2011)	참여유형	단독충실형, 우인교류형, 가족충실형, 자아추구형, 건강추구형, 사회참여형
김광득(1998)	여가동기	신체 활동형, 우인 교류형, 독서형, 가족 충실형, 사회 참여형, 시간 소일형
김태현(1994)	활동내용	단독 충실형, 가족 충실형, 우인 교류형, 독서형, 사회 참여형
박재간(1997)	가정 내외역할	가정중심형, 가족활동 중심형

자료 : 오상훈 외(2010)현대여가론, 115-119 참조하여 재구성.

사회 심리적이고 가족적인 적응과 경제적인 적응 외에도 은퇴 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많은 여유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 역시 은퇴적응의 중요한 관제가 되고 있다. 노년기는 직업적인 활동과 자녀양육 등 의무적인 일에서 벗어난 시기로 일상의 대부분이 여가 시간이라 볼 수 있다.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보다 길어진 노년의 자유로운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는 노년기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노년 여가활동이라 하면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 활동, 취미활동, 자원봉사활동 및 학습활동으로 구분하거나, 휴식, 친목모임, 취미 오락, 자원봉사, 교육, 문화적 영역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Ⅲ. 노인여가활동의 현황

#### 1. 제도적 현황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며 인생의 황혼기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1조1항에서는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함으로서 노인들이 노후에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평생교육으로서 노인에게 대한 사회교육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명시 하였으며, 제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하고, 제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제4항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니고 규정하여 노인이 되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시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김충환, 2017). 노인여가복지 시설로는 노인복지법 제36조 1항에 의한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등이 있다.

#### 2. 노인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 1)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유형은 <표 2> 에서와 같이,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용방법에 따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였고 생활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재가

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다.

이들 시설은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와 맞게 재정비되었는데 시설을 통폐합하거나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재가복지시설은 서비스별 시설운영에서 재가복지 시설 하에서 기존의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를 각 서비스별로 제공하거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용시설은 재가 시설 생활자가 통원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과 재가 노인복지시설(방문 요양 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용방법에 따른 분류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용시설이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피학대노인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어 일반 이용시설과는 분리된다.

〈표 2〉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구 분		시 설 종 류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이용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받는 노인 신고시설

자료 : 박효석, 2013년, 노인여가활동 연구, 68p

노인복지시설은 예전에는 입소비용이나 이용비용에 따라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로 구분하였는데, 2007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비용에 따른 시설 구분은 삭제되었다.

최근 노인복지의 시설서비스 중심에서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대상도 저소득층인 중심에서 일반 노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표 3〉 과 같으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연도별 노인 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종 류	시 설	2012		2011		2010		2009		2008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합 계		71,872	167,884	70,643	158,839	69,237	163,136	66,854	130,421	63,919	112,064
노인주거 복지시설	소 계	416	18,179	414	17,450	397	17,270	360	14,353	347	17,342
	양로시설	285	13,164	303	12,509	300	11,906	285	11,561	306	11,520
	노인공동생활가정	108	887	87	710	75	618	56	438	21	177
	노인복지주택	23	4,128	24	4,231	22	4,746	19	2,354	20	5,645
노인의료 복지시설	소 계	4,352	133,629	4,079	125,305	3,852	131,074	2,712	99,350	1,832	81,262
	노인요양시설	2,610	118,631	2,489	111,457	2,429	107,506	1,642	82,271	1,332	66,715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1,742	14,998	1,590	13,848	1,346	11,361	1,009	8,504	422	3,500
	노인전문병원					77	12,207	61	8,575	78	11,047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64,077		63,375		62,469		61,065		59,422	
	노인복지관	300		281		259		237		228	
	경로당	62,442		61,537		60,737		59,543		57,930	
	노인교실	1,335		1,557		1,464		1,280		1,260	
	노인휴양소					9		5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3,003	16,076	2,750	16,084	2,496	14,792	2,696	16,718	2,298	13,460
	방문요양서비스	1,113		1,180		1,118		1,228		1,111	
	주야간보호서비스	840	15,160	842	15,154	786	14,086	714	12,768	621	10,627
	단기보호서비스	94	916	95	930	67	706	288	3,950	217	2,833
	방문목욕서비스	633		633		525		466		349	
	재가지원서비스	323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24		25		23		21		20	

주) 노인복지주택 입소정원 : '08 및 '07년에는 시·군·구 조사 자료에 의거 입소정원을 표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주택은 1세대에 1명 또는 여러 명이 거주 가능하므로 입소정원이 없음. 따라서 '09년부터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정원을 세대수로 표기함('08년 노인복지주택 세대수는 2,596세대, '07년 2,012세대임)

(자료: 보건복지부 2013년 통계 참조)

### (1)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개정(2007.8.3)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으로 통합, 개편 되었다.

①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세대의 고령화로 사회적 부양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져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수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개정(2007.08.03)으로 노인 의료복지시설도 통합, 개편되었는데 ①노인요양시설 ②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노인전문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07년 8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기존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복지관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2006년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총 시설수는 56,789개소로 2003년보다 7,156개소가 증가하였으며, <표 4> 에서 보듯이, 2012년도는 64,442개소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부분은 경로당으로 전체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교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2).

이처럼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로당을 노인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시·도	65세이상 노인인구 (2012.12.31 주민등록 인구기준)	합 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수	종사자수		
합 계	5,980,060	64,077	300	4,000	62,442	1,335
서울	1,105,583	3,640	59	1,009	3,229	352
부산	442,199	2,289	20	277	2,102	167
대구	274,152	1,462	11	125	1,408	43
인천	267,059	1,439	13	174	1,391	35
광주	144,732	1,288	7	84	1,242	39
대전	142,979	794	6	81	774	14
울산	85,736	777	8	92	745	24
세종	17,214	300	0	0	293	7
경기	1,135,242	9,129	51	880	8,912	166
강원	241,694	2,977	10	135	2,948	19
충북	215,245	3,992	16	240	3,961	15
충남	309,840	5,562	13	198	5,469	80
전북	303,586	6,527	21	218	6,423	83
전남	366,524	8,657	28	212	8,561	68
경북	437,519	7,658	13	97	7,535	110
경남	414,831	7,162	18	143	7,053	91
제주	75,925	424	6	35	396	22

자료: 보건복지부 2013년 통계 참조

(4)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이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역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개정(2007.08.01.)으로 구분에 있어 시설중심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며,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표 5〉에서와 같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표 5〉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설치목적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재가노인복지 킹케어(www.kingcare.co.kr)

**(5)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표 6>와같이,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의 권익증진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6>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종류	시설	설치목적	입소대상자	서비스	설치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시·도지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 운영. 노인학대 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24시간 신고, 상담용 긴급전화(1389) 운영	노인학대행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 등 노인학대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피학대노인 및 가해자 상담 일시적쉼터운영	시·도지 사 지정

에이원홈케어센터(<http://blog.naver.com/PostView>.)

**3. 인적자원의 현황**

**1) 전문적인 인적자원 확보**

노인들의 빈곤, 질병, 고독과 소외감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갖춘 인적자원으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노인 스스로 전문직에 종사했던 노인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손길이 노인복지시설에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의 여가활동은 현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닥쳐 온 역할 상실과 소외감으로 오는 정서적인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으며 가정과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와 아직은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역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 올 수 있다.

**2) 생산적인 사회 참여 활동**

노인들은 스스로가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스스로가 참여 할 수 있는 변화가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노인들의 참여율은 아주 저조한 편이다(고양곤, 1997). 노인들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활동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보람을 얻고 싶은 욕구가 있다. 노인들에게 자원봉사에 필요한 경비나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참여를 유도하는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 IV. 노인여가활동의 문제점

### 1. 제도적 문제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여가관련법은 강제성이 아닌 임의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노인여가의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현실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여가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에서 노인들의 욕구에 대한 깊은 인식과 적극적인 연구와 기획을 통한 사회의 전반적인 투자가 부족하며 나아가 노인 스스로 여가활동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물질적, 기능적 면에서 여가를 즐길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임춘식, 2010).

### 2. 시설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 1) 노인복지 시설의 미비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가정 대체 기능, 노인 장애의 치료, 개선, 교육, 재활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능, 생활서비스를 위한 기능, 원조 서비스를 위한 기능 등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 자립훈련 등이 수반되어야 하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2) 형식적인 프로그램

장순자의 연구(2001)에 의하면 노인들이 주거하고 있는 복지 시설 안에서의 노인들의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입소노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특별한 취미활동보다는 담소나 휴식, 그리고 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소극적인 활동을 중점으로 여가활동에 그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단순하고 형식적인 내용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노인들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의 개선책으로 개정된 노인복지법과 앞으로 시행될 노인복지 시설의 평가제 도입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시설 입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제도로 규정하여 의무화함으로써 앞으로 수용시설의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더욱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 3. 인적자원의 문제점

노인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저하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노인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의 부족이다. 따라서 강사진을 개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어려우며, 재정부족과 강사에 대한 장비부족 등으로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못한 무자격 강사나 자원봉사자, 지역유지, 공무원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교육의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을 제도적으로 양성하고, 노인교육전문가 들에 대한 정보를 총괄적으로 입수, 관리하여 노인여가시설에 제공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 V. 노인여가활동의 활성화 방안

### 1. 제도적 활성화 방안

#### 1) 노인여가활동 교육실시

정부차원에서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여가활동에 대한 개념, 기술, 지식 등의 기본적인 것을 알게 하고, 여러 가지 생활상의 지혜와 상식,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양을 쌓고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

#### 2) 여가활동 기회의 균등

노인의 여가생활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인들에게 가용한 여가의 기회가 평준화되어 있지 못하기도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과 장애가 있는 노인, 대학교육을 받은 노인과 무학인 노인 간에는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 기회, 자원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박재간, 2007). 또한 세대 간의 격차도 심하다. 젊은이들은 초현대식 헬스클럽이나 전천후 레크리에이션의 기회가 많은 반면 노인들은 노인정이나 공원, 혹은 고가도로 다리 밑에 삼삼오오 모여 잡담이나 장기로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가양식의 계층화는 원래 대중여가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고영복, 2001).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여가시간의 절대량에 크게 구애받음이 없이 자기들이 가진 경제적 자원 및 문화정보를 충분히 활용해서 여가시간을 집중적으로 또 보다 의미 있게 보낸다.

특히 옥외 여가의 향유와 고가 여가장비의 소지는 하나의 지위상징이자 상층소속감의 징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 자본주의 및 여가산업의 상품판매 전략과 맞물려 과시적 소비현상까지 빚어진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많은 자유시간이 허용되었을 때에도 일과 관련된 활동-부업 등의 형태로-을 하기를 선호하며 텔레비전 시청을 여가활동의 가장 선호하는 형태로 꼽는다. 이처럼 계층에 따라 여가양식이 분화를 넘어서 분리·단절되는 양상은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정부의 여가정책의 방향은 여가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되 누구나 손쉽게 그리고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각자의 경제적 형편과 건강정도에 따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별 프로그램이 주거지역 가까이 존재해야 하겠고, 이러한 요인들과는 관계없이 기본적인 여가선용이 가능하게끔 여가시설과 기구에 대한 사회자본의 투입이 필요하고 이를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겠다. 그 예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한 노인정 여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도서관이나 박물관 혹은 서원을 통한 문화예술·민속민예 프로그램의 개발, 체육시설을 통한 단전호흡이나 기공 등 신체단련 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고로, 여가활동의 기회의 균등화를 위해 사회복지 차원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빈곤, 건강, 노인 단독세대, 학력 등의 조건에 따라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 간의 여가수단, 여가방법, 여가기회 등에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평균화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오락프로그램의 기획 및 지도, 건강증진과 교양, 레저와 취미생활, 클럽활동, 직업훈련 및 알선, 지역사회 참여활동 및 이익집단 활동, 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노인들의 공동생활체 함양 및 참여유도 등 매우 다양하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3) 자기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노인의 자기개발을 위한 여가활동으로 창작활동, 학습활동, 토론, 악기연구와 같은 창의적인 활동과 체조 스포츠, 독서, 봉사활동, 관광여행등과 같은 발전적 활동을 위하여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정부는 평생교육이나 사회 각 기관을 통한 노인의 교육 실시로 여가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지역사회와의 유대증진과 지원체계의 활용

노인복지 및 여가시설이 지역사회의 행정기관, 사회단체, 회원조직, 학교법인, 종교단체, 지역유지 및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어서 그들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5)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의 의식 속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활동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보람을 얻고 싶은 욕구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 단체는 그 규모의 대소를 떠나 항상 지역사회봉사를 그 활동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봉사가 아무리 바람직하다 해도 노인의 능력과 취미, 그리고 정서에 맞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지속되기가 어렵다. 띠를 두르고 교통질서를 외친다거나, 피켓을 들고 자연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현대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순수하게 봉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야 한다.

## 6) 여가선용에 관한 계몽활동

현재의 우리나라 노인들은 젊었을 때부터 노동의 가치가 여가의 가치를 훨씬 능가하는 인식 속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다양하고 의미 있는 여가의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한 노인들이 노년기에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해서 노년기 활동으로 적절한 여가선용 방법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거나 집단 여가프로그램에 자발적이고 협조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여가선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방해요소를 몇 가지 나열하였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에게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소극성과 조심성, 어른으로서의 체면, 사회적으로 노인의 행동규범에 대한 불명확성, 상호교류를 통한 사회성 개발에 대한 무관심 등도 작용할 것이다.

김태현 외(2009)의 연구에 의하면 여가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 즉, 사회적 활동이 많은 노인들은 삶에 비교적 자신감이 있고, 가정에서도 떳떳하며, 본인만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과 다른 젊은이에게도 그 모범을 훈시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권면한다. 따라서 사회적 활동이 많으면 노인의 주체성도 확립되고 사회적 지위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는 것과 여가를 효과적으로 선용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노인들에게 주지시키고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착오를 통해서라도 여가기능을 익히도록 하는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2. 시설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 1) 시설 확충을 통한 활성화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여가시설로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이 있다.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주로 친목도모, 취미오락 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노인교실의 경우는 노인들에 대하여 건전한 취미활동, 노후건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다. 최근 많이 설립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노인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일부 프로그램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평생교육원 내에 노인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여가시설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책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개선책으로 제안되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노인을 위한 여가활용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경로당, 노인학교, 노인 복지시설, 복지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시설이 양적으로는 증대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협소하고 재정이 부족하여 여가



활동을 위한 비품이나 도구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 (1) 경로당

경로당을 활성화하려면 노인복지를 위한 홍보 및 복지교육의 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의 여가선용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추구 및 노인자원복지센터를 조성해야 한다.

경로당은 2013년 현재 전국에 66,442개가 있다. 대부분의 경로당은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거나 전문가의 개입 없이 비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곳도 적지 않다. 경로당에 지역의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경로당에 참여하는 노인은 전체의 1/4 밖에 지나지 않고, 3/4의 노인은 경로당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현실은 경로당의 한계성(김동배, 2008)을 잘 드러내고 있다. 경로당 운영의 개선책은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시되어 왔다.

경로당 운영의 개선책은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경로당 장소의 노후함과 협소함,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려운 참여노인의 특성, 지역사회와의 미약한 유대관계, 특히 현대 사회에서의 경로당 정체성의 문제 등으로 개선책이 쉽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경로당의 정체성 문제란 경로당을 노인들이 편히 쉬며 친구들이나 만나는 '사랑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노인복지를 적극 도모하는 '노인복지회관'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노인 여가생활의 지원체계를 포함한 여가정책의 큰 틀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인근 경로당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로당 지원프로그램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의 혜택을 받는 경로당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경로당운영의 개선을 위한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로당에 가까이 있는 보건소, 사회체육회관, 지역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사회시설들과 연계하여 경로당을 지역 노인을 위한 보건복지 지역 정보센터로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개선책이 될 수 있겠다(고양곤, 2007).

또 하나의 제안으로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 주간보호서비스는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이렇다 할 발전이 없는데, 동네마다에 있는 경로당을 일정 수를 주간보호소로 전환하는 것을 연구해 볼 만하다. 동네에 있는 주간보호소는 접근성이 좋으며, 지역주민과 격리되어 있지 않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2) 노인교실

노인교실은 2013년 현재 전국에 1,335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노인교실은 노인학교, 노인대학, 경로대학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진다. 노인교실은 주로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은 서울시의 경우 정식 등록된 노인교실에 한하여 보조하고 있다.

노인교실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프로그램과 여가활동프로그램으로 나누

어진다. 교육프로그램의 학습내용은 주로 노인들이 원하는 강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전문 강사에 의한 교양강좌보다는 취미·오락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교실도 많이 있다. 단, 몇몇 재정적 지원이 풍부한 종교단체나 전문가에 의해 교육이 진행되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교실은 상당히 짜임새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서울시 노인교실에서 건강 체조, 가요/시조, 단체소풍/견학/시찰, 무용/에어로빅/요가 등 많은 수의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노인교실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규모 활동으로 풍물/장구/탈춤, 한글, 한문, 영어, 수지침 등도 낮은 비율로 실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종이접기, 단전호흡 등의 프로그램이 최근 신설되고 있는 추세이며 일부 노인교실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최근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노인교실은 주로 사회교육, 취미교육, 건강증진 등 3 분야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프로그램과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① 프로그램의 전체 운영에 있어서 비전문성과 비체계성, ② 프로그램 내용의 비 다양성, ③ 프로그램 실시에 있어서의 비연속성, ④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부족과 참여의 제한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대체로 노인교실은 운영자들의 비전문성, 시설의 낙후 및 영세성, 춤과 노래 등 놀이 위주의 프로그램, 전문 강사진 확보의 어려움, 운영재원의 부족, 교육시설·교재 및 교육방법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교실에 대해 운영자 전문교육, 충분한 재정지원, 전문성을 지닌 강사진 확보,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노인교실'이라는 단어가 나타내어 주고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교육법에 의해 노인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노인학교가 없다. 따라서 그 동안 운영되던 대부분의 노인교실은 개인이나 단체가 자의로 설립하고 시설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립자 자신에 의해서 학칙 및 교육과정 등이 결정되었다. 다행히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에 의해 노인교실이 노인교육기관으로 보호·육성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안에 노인교육의 문제를 책임지고 육성할 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노인교육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이니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이니 교육부 소관이라 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미는 평풍계임을 하고 있다.

노인교육이 생애교육으로서 체계화를 이루고 전문적 종사자에 의해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부 소관이 마땅하리라 본다. 물론 현재 교육부 사회교육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노인교실 관련 업무도 취급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감독을 통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과 박물관의 사회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좀 더 고급의 전문교육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무료 또는 실비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이수증 혹은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노인들이 성취감과 함께 새로운 제 2의 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향후 노인교육의 중요 과제라 생각된다.

아울러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추구하여 노인의 여가생활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가차원에서 노인교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이은숙, 2007: 66).

### (3) 노인복지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은 2013년 현재 총 300개소로, 4,000명가량의 종사자가 일을 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회관보다 규모가 크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복지관이란 이름을 노인들이 싫어한다 하여 노인회관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대체로 노인복지관으로 통칭된다.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아직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상담사업, 의료사업, 재가노인보호사업, 복지후생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프로그램(여가·교육 프로그램, 생활체육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은 미비한 상태이다(원영희·모선희, 2008).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여가프로그램은 대체로 여러 종류의 학습과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형식적인 진행에 그치고 있고 현실적으로 전문성과 실효성이 결여되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문적인 질적 접근보다는 양적 접근, 전시 행정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박재간·원영희·이주열, 2007).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 의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인 만큼 사회의 중견층으로 퇴직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질 좋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수혜자 중에는 공백지대가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고 간주하기에는 다소 소득이 높으나 중상층에는 미흡한 일반노인들이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부담 없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기관의 참여자들은 주로 저소득층이고, 특히 권위와 체면을 중시하는 남성노인의 참여가 낮은 이유는 바로 충족되어야 하는 다양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서 참여를 기피하는 어정쩡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소득이나 학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다"고 하며 자신과 그들을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노인복지관은 이런 노인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야 그들의 지혜와 능력이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며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노인문화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체계적인 교육과정, 대단위 집합교육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역동성을 통해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소집단 모임들,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젊은 세대에 올바르게 계승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그룹들이 있음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의 이미지가 개선시킬 것이다. 노인복지관은 이런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 특히 자원봉사를 위한 모임을 내부적으로 활성화시켜 결국 독립적인 노인단체로 탄생될 수 있도록 하는 어머니의 역할(mother agency)을 담당하는 비전도 가져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 의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인 만큼 사회의 중견층으로 퇴직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2)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활성화

### (1) 노인의 여가프로그램 확대

노인들이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 있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시설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가를 보람 있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인을 위한 여가문화교육은 남은 생애를 대비한 문화교육으로서 문화를 가치 있게 선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현재 노인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도록 고령화 사회를 위한 문화와 레크리에이션이 필수적으로, 취미활동, 여행, 교육, 훈련, 우리 전통문화 전수, 외국어공부, 문화유적지 관람, 공연, 연주 등이 필요하다.

### (2) 노인욕구에 적합한 여가문화프로그램 개발

노인의 여가 프로그램은 노인의 성격적, 심리적 특성과 일에 적합한 것으로 정하여야 하며, 노인들이 선호하는 학습욕구를 중시하여 계획하고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간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독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 맞는 여가문화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오늘날 점차 사라져 가는 미풍양속의 전통문화, 즉 민속무용, 전통 민속공예, 전통생활문화 등을 소재로 한 여가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후손에게 보여주고 조상들의 생활양식을 이해시키는 것도 노인여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활동이면 노인의 여가문화 창조에 기여할 것이다(최명옥·조순점, 2013: 82).

### (3) 전문화된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여가문화시설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경로당은 대부분이 바둑, 장기, 화투, 잡담 등이나 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노인들은 공원, 지하철역 등에서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적이다. 이러한 것은 운영비가 적은 관계로 경로당에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가문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보조금만이라도 지급된다면 노인의 여가문화생활의 질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내의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기구가 마련되어 노인들의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트레이너의 도움으로 전문적인 건강생활을 한다면 노인의 여가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4)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노인자원봉사자의 활용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노인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보상제도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 보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의 활동비 지원은 노인인력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 (5) 기타

지역별 노인 취미클럽을 만든다든지 노인전용 휴양시설을 마련하여 노인들에게 실비로 제공하거나, 노인의 신체에 맞는 스포츠를 개발하여 무리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며, 종교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마련도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아울러 노인도 사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인 페스티벌 같은 위안행사를 매년 가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겠다.

### 3. 인적자원의 활성화 방안

#### 1) 전문가 양성 및 확보

노인여가활동 지도자는 단순한 노인 여가활동에 대한 기능이나 정보의 전달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지니고 있는 소외감이나 고민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인문제에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노인을 위한 여가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인교실 운영자의 리더십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 노인교실 운영자들은 현장에서 노인 여가를 전담하는 인력으로서 전체 프로그램의 성격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여가에 대한 욕구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노인교실의 목적과 기능, 역할, 노인 여가활동의 세계적 추세와 방향 등에 대해서 누구보다 인식이 고양되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공공기관에서는 노인교실 운영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연수, 세미나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하여 정보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신동희, 2005: 68).

#### 2) 자원봉사 지원체계의 확립

노인의 자원봉사참여는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공헌을 하고 나아가서 사회개선과 발전에 기여하여 노인이 아닌 계층이 노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는 사회의 일선에서 물러나 자칫하면 상실하기 쉬운 자신의 사회적 존재감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현재까지 한국사회의 노인들은 자원봉사를 받는 대상자이지 자원봉사를 하는 주체자로 인식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40%, 호주의 경우 17%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 봉사활동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김윤재, 2005: 122). 노인자원봉사조직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처럼 노인자원봉사조직이 따로 결성되거나 통합 일원화된 자원봉사조직으로서 구성되는 방안이 있다. 현재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의 총괄적인 업무를 확대 개편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해서 시, 도별로 총괄하는 자원 봉사단 소속 시, 군, 구별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한다. 그리고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산하에 노인자원봉사단, 청소년 자원봉사단, 여성자원봉사단 등을 두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면서 보다 명확하게 행정적 지원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3) 자원봉사의 다양화

강복동(2007)에 의하면 노인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특성에 적합하고 그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노인의 경험, 지식, 기술, 능력 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영역은 원칙적으로 일반인이 활동하는 분야와 동일하게 광범위하며 다양하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지혜, 재능, 기술 등을 충분히 활용하고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찾아내고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면 노인들이 자원봉사로서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겠다.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적합한 영역은 말벗, 가정방문, 시설방문, 문화재보호, 전통문화고수, 교통정리, 행사보조, 홍보, 공원관리, 환경보호, 환경미화, 방법활동, 청소년 선도, 약물예방, 유해환경조사, 행정업무보조, 집수리, 재해구조, 양조부모 맺어주기, 취업상담, 청소년 상담, 법률상담, 호스피스 간병, 통역, 번역, 한문지도, 외국어 교육, 취미교실 등이 제시되고 있다.

## VI. 결론

우리나라 노인여가 문제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3가지로 압축시켜 볼 수 있겠다.

첫째는 노인여가시설의 확충이다. 정부에서는 노인여가를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설립하고 있지만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그 숫자가 편히 이용할 만큼 충분치 못하며, 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재정 및 행정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여가가 노인생활에서 갖는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노인의 지적인 능력, 신체적 건강, 참여의욕 등에 따라 여가시설을 다양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역할은 사실 더 중요하다. 다양한 교육기관, 종교기관, 사회기관, 의료기관, 그리고 노인 자신에 의한 자조조직 등에서 노인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을 활성화한다면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여가시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노인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다양한 노인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우리나라 노인여가시설은 그 시설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특성에 따라 분위기와 프로그램에 차이가 나겠지만, 대체로 노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오락과 게임 위주일 뿐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노인여가프로그램에는 노년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결핍이나 손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치료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인들은 물론이고 노인여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에 10여 년 전에 게이트볼 게임이 도입되어 지금 노인 단체에서 인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노인여가프로그램을 집중 연구하고

보급하는 단체의 설립도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는 노인들 자신의 의식개혁이다. 노년기의 여가선용은 노년기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핵심이다. 따라서 노인들은 누가 만들어주는 여가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노년기에 있어서 여가란 휴식과 오락·취미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계발과 역할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 어떤 연령층보다도 강조된다. 노년기에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여가가 갖는 중요성은 실로 막중하다. 노년을 창의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지를 갖고 활기 있게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또는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노년기의 여가란 재미있는 것을 즐기는 차원만이 아니라 이런 창의적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21세기의 노인은 눈을 뜨고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 살펴보고, 입을 열어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팔을 벌려 이웃과 환경을 수용 보호하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고 평생 동안 쌓아 온 지식, 경험, 기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현세대와 세계를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노인문제, 특히 노인여가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부시책이나 민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의미 있는 노인여가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됨으로서 건전하고 창의적인 노인문화가 발달되어야 하겠다.

진정한 노인복지는 노인을 위한 시혜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인이 사회의 주류로 재 편입 될 수 있도록 여가선용을 통해 노인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김광득(2009), 현대여가론, 백산출판사.
- 김대경(2014),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웰니스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동배(2008). 한국의 도시형 노인정 모형에 관한 시론, 한국노년학, 8, 43-54. 146-168.
-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 (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0-169.
- 박상훈·손명희(2014),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고독감, 관광레저연구.제26권 제2호.
- 박효석(2012),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병숙(1990), 가족과 노인문화, 노인문화의 새로운 정립과 과제, 서울특별시·한국노년학회 제1회 노인복지세미나, 21-44.
- 윤진 (1995), 성공적 노화와 삶의 질: 그 이론적 체계와 측정방법, 박재간 외 편,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나남신서, 79-102.
- 이갑숙(2013), 여가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노인복지과 박사학위논문.
- 이금룡(1999).,노인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밝은 노후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모임 창립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 이미덕(1997), 한국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적 행정적 지원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남숙(2014), 노인 여가복지서비스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 조미정(2014), 고령화사회 노인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남·이동원·원영희(1998), 고령화사회와 중산층 노인의 사회활동, 집문당.
- 최경진(2014), 노년기 여가활동 적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명옥·조순점(2013), 노인의 여가문화와 삶의 질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 연구, 제10권, 제1호.
- Baltes, P. & M. Baltes (1990).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 Press.
- Ellis, A. & E. Velten (1998). Optimal aging: Get over getting older, Peru, IL: Open Court Publishing Co.
- Ellis, E. (1996). The youthful option, Atlanta, GA: Aberdeen House.
- Johnson, H. (1998). Retirement special: Boom years, Worth, April, 52-54.
- Lawson, D. M. (1998). Volunteering: 101 ways you can improve the world & your life, San Diego, CA: ALTI Publishing.



# A Study on the Leisure Activities of the Elderly

Pung-Kyu Park(Ph. D)  
Public Relations Team  
Cheongju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and analyze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the leisure activities of the Korean aged to find out the promotion schemes of those activities and their quality of life.

It is conducted mainly on the basis of literature studies.

For senior citizens, living and leisure are linked very closely. Whether they feel the composure of life or prolong a strenuous life depends partly upon their accessibility to leisure activities. During the third age, leisure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meeting aged people's individual wants and elevating their living standards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psychological stability, perceived happiness, etc. Also leisure activities provide them with various physical, mental and health benefits.

As such, relentless interest and systemic support should be given so as to promote senior citizens' leisure activities. This way, the elderly will be able to show more interest in their surroundings and society as a whole, assuming the role of a vision presenter passing down their life-long experience, expertise and wisdom to younger generations.

This study, in this context, suggests development of old-age leisure activities, education and training of dedicated experts,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old-age leisure facilities in a bid to promote senior citizens' leisure activities.

Finally, taking note of old-age leisure activities as an important mode of life, the study maintains that such activities be studied and developed in a scientific and reasonable viewpoint of cultural creation.

Key word : Senior citizens, Leisure activities, Leisure facilities, Senior problem.

논문투고일 : 2014. 06. 30

심사개시일 : 2014. 07. 01

게제확정일 : 2014. 07. 20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6권 1호  
2014년 7월호

## 군용 비행장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갈등 완화방안 연구\*

청주대학교 직할학부 군사학과 교수  
양 철 호

### 국 문 요 약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용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는 국민의식의 향상으로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항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의 영향은 광범위하여 비행장 주변의 주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항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항공법은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김해공항을 제외한 민·군 공용공항 및 군전용 비행장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규정이 없어 소음피해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각급부대의 노력은 오히려 안전비행에 저해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인명과 전투력의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연구하기 위하여 2011년 항공작전사령부에 접수된 민원과 2012년 대전 지방법원에 집단 민원 소송되었던 조치원지역의 사례를 통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군용항공기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가칭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하며, 모든 군용 비행장의 “소음지도 작성과 소음상시측정망 설치”등 소음관리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주제어 : 항공기 소음, 집단 민원, 소음관리 시스템 구축

\* 이 논문은 2013~2015년도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 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I. 서 론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국토환경 여건상 군용비행장등 군사시설이 주거지역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헬기 소음은 고(高)소음으로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소음대책이 어렵고, 법적·제도적 대책도 미흡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국의 군용헬기 주변지역 인구는 약 40만 명에 달하며, 여기에 민간공항 인근 인구까지 합치면 약 60만 명에 달한다.(국회국방위원회,2012) 이와 같은 군용헬기에 의한 소음으로 인해 2004년 이후 매년 200건 이상의 민원이 국방부에 접수되고 있으며, 1998년부터 2008년 8월까지 18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에 제기 되었으며, 소송인은 69만 명이고, 청구액은 3천 56억원에 달했다.(중앙일보,2008)특히 2011년 1년간 육군항공을 예로 들면 2011년에는 1년간 총 67건의 소음민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항공작전사 예하 조치원기지는 세종시 건설에 따라 기지 이전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있으며 기지 인근 월하리 주민 209명이 2012년 3월에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헬기전용 비행장의 소음 대책을 위한 방안을 찾고 이를 위해 군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적 고찰을 통해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을 살펴보고 소음피해 및 갈등관련 사례 분석과 항공기 소음 관련법의 추진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항공기 소음의 개념

우리나라의 소음·진동규제법은 소음을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김명용,2002) 이러한 소음은 이웃 또는 제3자를 방해할 수 있거나 또는 방해하고, 장시간의 많은 음량의 경우에 있어서는 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리로서,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소리이다.(이기한,2006) 이러한 소음은 데시벨(DB)이라는 단위로 표시된다.

국내 항공기소음의 평가 단위는 항공법 제2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항공기소음의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공항 소음피해지역 등의 지역 구분시 소음영향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량으로 ‘웨클(WECPNL ; Weifgh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김정태, 2008) 이는 항공기가 이륙과 착륙 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주어 종합평가하는 것으로써 단순히 소리 크기만 나타내는 단위인 데시벨(DB)과 다르다.

현행 항공법상 80웨클(WECPNL)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WECPNL)을 넘으

면 소음피해지역에 각각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관련부처에서는 이주 및 방음대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2. 항공기 소음의 특성 및 소음기준

항공기 소음 중 제트엔진 항공기는 엔진의 배기가스 분출로 인한 추진계 소음이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고주파수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전방보다는 후방에서의 소음이 강하며 프로펠러 항공기 및 헬기는 엔진에 의한 소음보다는 프로펠러 및 로타의 회전에 따른 소음으로 회전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주파이고 전·후방 보다는 직하방에서의 소음이 강하다. 또한 항공기 소음은 보통의 다른 소음원에 비해 음향출력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박영민.2007)

또한, 소음원이 상공을 고속으로 이동하므로 주간과 야간에 계속 발생되면서도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며 다른 일반 소음방지대책에 적용하는 차단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다.

항공기소음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 및 운항시에 발생하므로 간헐적이고, 특히 이륙과 착륙시에 더욱더 그 피해는 커진다.(육군항공학교.2011)

인간의 소리에 대한 감각은 최소 음압을 기준 값으로 음압 레벨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음압 레벨의 단위는 데시벨(decibel)이며 dB로 표시한다. 정상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인 0dB을 기준하여 척도를 정한 것이다.

시끄러운 소리는 소음에 해당되는데, 그 음압을 70dB이상이라고 한다. 이것을 세분하면 70~80dB은 시끄러운 소리, 80~90dB는 매우 시끄러운 소리, 100dB이상은 시끄러움을 넘어 청력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특히, 제트엔진 항공기가 이륙하는 경우 전방 100m지점은 120-130dB의 음압으로 측정되어 일반적인 소음원보다 월등히 높은 소음을 발생시킨다.

항공기 소음은 일반 소음과는 달리 간헐적이고 피크레벨이 높은 음질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소음 발생의 크기 단위인 데시벨(dB)로 측정되어서는 안 되며 소음의 기본적인 크기와 소음의 발생빈도, 소음의 지속시간,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대, 바람 방향, 항공기 입·출항 방법 등이 고려된 소음영향도 단위인 웨클(WECPNL)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같은 소음이라도 소음의 발생 빈도가 높거나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의 영향이 더 크므로 가중치를 부과하여 다수의 항공기에 의한 소음의 총 발생량을 1일 평균량으로 평가한 것이다.

2010.11월 대법원 판결에서 군비행장에 대한 최초 소음피해 배상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수원·대구·광주 대도시권은 85웨클을, 기타지역은 80웨클 이상일 경우 배상토록 제시하였다.

항공법 시행규칙에서는 소음피해지역을 90웨클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80웨클에서 90웨클 미만은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에서 2002년에 연구한 군용항공기 소음기준 설정 연구에 따르면 <표 1>과 같은데, 76웨클에서 80웨클 미만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80웨클 이상에서는 개인주택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표 1〉군용항공기 소음기준(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구 분	소음 정도	환 경
90웨클 이상	• 대단히 시끄럽다	• 주거생활 곤란
80~90웨클 미만	• 시끄럽다	• 주거용 건축 방음시설 설치
76~80웨클 미만	• 약간 시끄럽다	• 교육, 병원 방음시설 설치
71~75웨클 미만	• 별로 시끄럽지 않다	• 주거에 지장 없음
70웨클 이하	• 시끄럽지 않다	• 주거 쾌적

### 3. 항공기 소음의 피해

항공기 소음의 피해는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재산피해 및 사회적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항공기 중 헬기소음의 정도를 살펴보면, 중형헬기인 UH-60 헬기의 경우 계류장 내에서는 약 80~85dB 정도이며 이착륙지역에서는 약 75~80dB, 배풍로 지역에서는 70~75dB의 소음이 발생하며 야간에는 전체적으로 약 6dB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항공작전사령부.2012)

이와 같은 항공기 소음에 의한 신체적 피해를 정리해보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간이 강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 감퇴(Hearing Loss)와 청력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그 강도가 110~130dB 이상인 경우에는 귀에 통증을 유발하면서 지각이 둔화(Sensory Effects)되는 경우도 있다.1999년 국제 보건기구가 설정한 기준에 의하면 어른의 경우 140dB, 어린이의 경우 120dB의 소리에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

둘째, 항공기에 의한 소음은 주변 주민의 수면을 방해(Sleeping Disturbance Effects)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주변 음압이 60dB 이하 일 때 숙면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항공기 소음은 주변 주민에게 스트레스와 심장질환, 그리고 정신건강 악화 등의 정신생리학적으로 악영향(Psychophysiology Effects)을 미친다. 소음은 혈압을 상승시켜 인간의 심성과 성격을 거칠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신적인 면에서 항공기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정신장애와 지각 증세가 나타나는 이른바 정신건강상의 악영향(Mental Health Effects)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청취자의 지각에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성가심, 불쾌감, 불만, 정신적인 혼란에 빠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유아기에 소음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어린이는 독서력(Reading Acquisition)이 저하되고 동기흡수력(Motivation Capabilities)도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2〉 소음 크기에 따른 인체의 변화

소음의 예	소음수치(dB)	인체의 변화	비 고
세탁기 소리 전화벨 소리	40 ~ 60	독서 집중이 잘 안됨	
교통체증시 소음	60 ~ 80	짜증 및 잠이 잘안옴	말초혈관 수축시작
혼잡한 지하철 공사장 소음	80 ~100	입맛이 없음	위 운동 감소
록 공연장 소리 비행기 이착륙 소음	100 ~ 120	심계항진 일어남	소음성 난청 발현 가능
제트기 엔진 소음	120 ~ 140	고막이 찢어질 정도	

또한, 항공기 소음은 주변 지역 내 토지와 건물가치를 하락시키고 각종 질병 치료와 노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도 유발한다. 대표적인 물질 피해로는 가축 피해로써 가축의 유산, 젖소의 발유량 감소, 산란율 감소, 유치 가축의 사망 등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진동을 수반하는 항공기 소음은 심한 경우 유리창과 기와 파손, 건물벽 균열 등을 초래하며, 정밀기계의 오작동을 불러오기도 한다. 이와 같이 거주민의 건강상의 악영향, 물질적 피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비행장 주변 지역의 토지는 주택지나 공장용지로 개발 혹은 활용하기 어려우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도 유발한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경부고속도로와 양재대로변의 서울 개포동과 서초동 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도로 소음이 1dB 증가할 때 105㎡(32평) 아파트는 200~212만원, 82㎡(25평)~105㎡(32평) 아파트는 평균 95만원, 82㎡(25평)이하 소형 아파트는 평균 44만원씩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군용비행장 주변에 대한 주택가격은 조사된 바가 없으나 소음의 크기로 보아 그 가격 하락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 4. 항공기 소음관련 법규

### 1) 공기 소음관련 국내법

항공기 소음관련 국내법규는 소음 진동 규제법과 항공법이 있다.

그 중 소음·진동규제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당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공장소음, 생활소음, 교통소음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소음·진동규제법 중 항공기 소음에 관련한 조항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규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9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49조 등이 있다.

위 조항을 살펴보면 다른 소음과 달리 항공기소음에 관하여 소음·진동규제법은 항공기 소음 배출자 또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며 환경부는 매우 제한적인 권한만 가지고 있다. 즉 항공기 소음문제의 경우 오염 원인자가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민간공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국토해양부와 군용비행장에서 군용항공기를 운영하는 국방부라는 점에서 다른 환경문제와 다르다. 환경부는 소음발생원인자인 국토해양부와 국방부에 대하여 소음기준의 준수를 위해 공항 및 비행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의 설치를 명하거나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을 모두 매수하여 완충지대를 확보하도록 명할 수 없다. 환경부 스스로 국가의 한 기관이고 국가를 상대로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법에 근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법인 항공법의 경우는 제107조, 제108조, 제108조의 2, 제109조, 제109조의 2를 통하여 항공기소음관련 규정을 하고 있다. 이 중 항공법 제107조는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법으로써,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 또는 저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미리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용도를 제한 할 수 있다.

항공법 제 108조는 소음기준의 설정에 관한 법으로써,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소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법 제108조의 2는 저소음운항절차 등에 관한 법으로써,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안의 공항에서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기 소음을 감소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소음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항공법 제109조는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법률로써,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가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방지대책 수립대상인 공항에 착륙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제108조에 따른 소음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소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항공법 제109조의2는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에 관한 법률로써, 국토해양부장관·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대책에 관하여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항공법 시행령 제 41조와 제42조의 2는 각각 공항 소음피해지역등의 지정·고시와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공법 시행령 제43조는 항공 소음기준을 항공기 기종별로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소음피해지역을 소음영향도에 따라 구역별로 지정·고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72조는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의 시행범위를 규정하여 소음영향도가 더 큰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소음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제1종 구역안의 경우는 이주대책수립이나, 방음시설을 설치토록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수신장애대책, 소음피해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방음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학교에 대하여는 냉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제273조는 소음 영향도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274조는 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75조는 항공기 기종별 소음등급의 고시, 제276조는 소음등급분류를 위한 자료의 제출, 제277조는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 2)항공기 소음 관련 국외 법규

미국의 항공기 소음기준은 연방정부에서 정책 및 방향 제시만을 하고 실제로 규제대상, 규제 방법 및 규제기준은 각 주정부나 시에서 적절히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군용공항에 대하여 1994년에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위대 등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방위시설 주변에 있어 자위대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생긴 손실보상과 군용공항 주변의 소음피해지역 지정, 피해지역별 규제기준 설정, 항공기 소음대책 수립·시행 등을 정하고 있다.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일본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 등의 행위에 의한 특별손



실의 보상에 관한 법률' 등도 시행되고 있다.

독일은 1971년 제정된 '항공기소음방지법'과 1976년 만들어진 '항공기 교통소음 제어법'에 의해 제트항공기가 운항되는 민간공항과 군용공항 주변지역에 소음방지구역을 설정하고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배상금뿐만 아니라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토지 소유주에게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민간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1985년 7월에 관련법을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며 1988년 3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군용비행장도 동법의 규제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971년에 제정된 '공항주변의 지역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1966년에 지정된 '공항공단법'에서 규정한 방음공사 보조금 교부규정 등을 정하고 있다.

### Ⅲ 항공기 소음실태 및 피해·분쟁 사례 분석

#### 1. 항공기 소음 실태 및 피해 사례

현재 우리나라의 공항은 국제공항 5개소와 국내공항 45개소를 포함하여 총 50개소이다. 그 중 순수 민간공항은 6개소이며, 민군 공용공항 10개소, 군용공항 34개소이다.

그 공항중에서 2011년 한해에 육군헬기의 소음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총 67건이며 그 중 59건이 여름에 접수되었다. 즉, 여름에 민원의 절대다수가 접수되고 있는데 이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무더위로 인해 창문을 열고 생활함에 따라 항공기 소음에 더욱 노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적으로는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권에서 45건이 접수되었고 점차적으로 중·소도시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 표-3 항공기 소음관련 민원 접수 현황 >

계	접수현황(건)			
	봄(3-5월)	여름(6-9)	가을(10-11)	겨울(12-2)
67 건	2	59	3	3
	대도시권	중도시권	소도시권	기타
	45	7	13	2

그 중 집단 소송을 제기한 조치원 기지를 사례로 소음실태와 피해를 분석해 보았다.

조치원기지 일대는 중·대형 헬기가 이착륙을 하는 기지로 10개 지역 수천명의 주민들이 수십 년째 헬기 이·착륙 때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종시 건설로 인해 기지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최근 지역 국회의원의 기지이전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어 있는 실태이다. 그 중 헬기 비행장과 근접해있는 월하리, 쌍전리 주민 209명은 2012년 3월에 대전 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그 헬기 비행장을 관할하는 부대인 항공작전사령부에서는 지난 2012년 4월 '조치원기지 주변 항공기소음'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도가 70~75 WECPNL(약 80dB) 이상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소음의 영향은 76 WECPNL 이상에서 신체적·정신적 이상증세가 나타나며 90 WECPNL 이상 지역은 주거 생활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치원 헬기비행장의 소음은 주변 마을인 월하 1·2·3리, 쌍전리 등 4개 지역 약3,500여명

주민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조치원 헬기비행장 정도의 소음에 주민들이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등 정신적 고통은 물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또한 이 지역의 경우 학교에서는 헬기가 지나가면 수업이 중단될 정도로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 학습권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또한, 헬기비행장 소음피해와 개발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해당지역 주민의 피해를 넘어서 조치원 지역의 발전에 제한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헬기비행장이 위치한 율하리, 쌍전리가 있는 조치원 남부권지역은 인구는 상대적으로 조치원 북부권에 비해 절반에 그쳤다.

특히, 지역개발에 있어 북부권의 경우는 지속적인 택지개발과 주택단지 조성 등 굵직한 개발사업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으나 남부권은 몇몇 아파트 단지 조성 외에는 뚜렷한 개발사업이 없다. 이로 인해 조치원은 헬기비행장 주변지역을 벗어난 북부권 위주의 기형적 도시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2. 기타 군용비행장 소음분쟁

조치원 헬기비행장의 사례 외에 몇 개소의 비행장 소음관련 사례를 들어보면, 대표적인 공항이 수도권인 경우 김포공항을 들 수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충주 공군비행장과 군산 공군비행장을 사례로 들 수 있다.

2005년에 법원이 판결한 결과를 보면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85WECPNL이상이므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김포공항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007년에 판결한 충주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80WECPNL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소음도가 80WECPNL이상 90WECPNL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월30,000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고 충주비행장의 설치 이후 전입자에 대하여는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피고의 책임을 30%감경하였다.

2004년에 판결한 군산비행장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은 미국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비행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미군의 군산비행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책임이 있는지 결정된다고 하였다.

군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는 적어도 소음 80WECPNL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는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월 50,000원, 제 3종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월 30,000원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범위를 정하였다. 또한 1992.12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손해액의 30%를 과실 상계하였다.

### 3. 소결론

항공기에 의한 소음은 공항주변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여름에는 무더위로 인해 창문을 열고 생활함에 따라 그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중 조치원 헬기비행장의 경우는 중·대형 헬기의 이착륙으로 인해 소음에 노출되어 10개지역 수천명의 주민들이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등 정신적고통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민간공항인 김포공항과 공군 비행장인 충주비행장, 군산비행장 의 경우는 법원에서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하라는 판결도 있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이나 민·군공용비행장에 대한 피해규제 및 보상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등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기 소음관리 및 갈등완화를 위한 법규제정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IV. 항공기 소음관리 및 갈등 완화 방안

### 1. 군비행장 소음특별법 제정

2008년 11월 4일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으나 군용 비행장이나 민·군 공용비행장의 경우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비행장 피해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김포·제주·울산·여수 등 민간공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공항 중 항공법이 이미 지정된 김해공항 인근지역 주민은 확대된 소음대책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군용 비행장이 있는 강릉과 민·군 공용비행장이 있는 원주의 경우 공항소음대책지원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주민들이 주택 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냉방시설 가동 전기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군용항공기의 경우 소음피해가 민간항공기보다 더 심해 많은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규제와 보상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피해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소극적인 실정이다. 특히 민간항공기 보다 소음이 더 심한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을 하는 비행장 주변을 비롯하여 군사시설 주변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방부는 가칭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였다. 아직은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소음대책지역의 지정이다. 즉,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소

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구역, 제2종구역 및 제3종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 4 소음 대책 지역 구분 >

구분	구역	소음영향도(단위:WECPNL)
소음피해지역	1종구역	95이상
	2종구역	90이상 95미만
소음피해예상지역	3종구역	가 지구:85~90미만,나 지구:80~85,다 지구:75~80.

둘째는 소음대책사업을 위한 중기계획의 수립이다.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낮추기 위한 소음대책사업, 자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소음대책사업의 실시이다.

국방부장관 등의 소음대책사업의 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내에 있는 주택, 학교, 병원 등의 시설로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당시부터 소재하고 있던 시설에 대하여 소음방지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등의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넷째 자동 소음측정망의 설치이다.

즉, 국방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여 소음대책사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다섯째는 군용항공기의 운항절차 개선 등으로써,

군용항공기에서 나오는 소음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절차를 개선하고,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간 비행 및 야간 사격을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는 소음대책위원회 운영안이다.

즉,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대책 및 소음피해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국방부에서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추계서를 제출하였는데, 소음대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계산해보면, 약 8,6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여기에는 소음대책사업을 위한 용역비와 설계비, 본 사업비등이 포함되었다.

< 표 5 법률안 시행을 위한 연도별 소요 비용 판단>

(단위 : 억원)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이후	합계
금 액	10	32	300	999	7,221	8,562

소음대책사업의 소요예산 산정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대상은 개인주택과 공공시설로 구분

하였으며 설치기준은 개인주택은 85웨클 이상,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시 방음창호 및 내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이 중 민·군 예산이 공군 및 미군 비행장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 표 : 6 소음방지시설 대상별 설치 기준 >

구 분	대 상	설치기준	방음대책 사업내용
개인주택	단독주택, 아파트/연립주택	85웨클 이상	- 방음창호 설치 - 냉방시설 설치
공공시설	학교, 보건소, 복지시설 등	75웨클 이상	

국방부에서 19대 국회에서 입법추진 중이던 가칭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소음대책 사업시기를 2010~2011년에는 용역 및 설계를 실시 후에 2012년에 본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로 선정하였으나 ‘2014년 현재까지도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 실시시기를 법률안 입법예상시기를 고려하여 연장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소음방지시설 설치기준이 개인주택의 경우 현행 항공법 기준인 80웨클과 상이하게 85웨클로 설정함으로 인해 입법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고 헬기전용 작전기지에 주로 운용되는 육군항공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75웨클 이하로 하향되어야 기지 주변의 피해 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시된 기준보다 하향 조정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부족 등이 사유로 입법추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2. 항공기 소음분담금 확보

두 번째는 항공기 소음분담금 확보이다.

정부는 항공법 시행령에서 소음대책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해오고 있지만 재원부족으로 1994년 이후 2007년까지 총 사업비 3천656억원 중 37%만 집행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공항공사가 소음대책 사업에 부담하는 부분을 확대하는 한편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승객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소음분담금은 특정한 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에 대해서 부과되는, 즉 소음대책을 위한 사업을 위한 조달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바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법적 허용요건의 검토가 필요하며 민·군용비행장에서 이러한 특별부담금을 부가하여 이를 소음피해대책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

조세나 부담금과 같은 전통적인 공과금체계만으로는 현대국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부담금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과금체도가 인정되고 있다. 특별부담금은, 특별한 과제를 위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에게 과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공적기관에 의한 반대급부가 보장되지 않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하는 것인데 이 부담금은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관리된다. 따라서 특별부담금은 일반적인 국가재정수요의 충당을 위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그 담세능력에 따라 징수되는 조세와 구별된다.

소음분담금의 경우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재정조달목적의 특별부담금으로

볼 수 있다. 특별부담금의 부과가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방법상 적정한 것이어야 하는데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을 헌법재판소에서 허용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의 경우 재정충당목적의 특별부담금의 경우 일정 요건이 완화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객관적 근접성과 집단적 책임성이 인정되는바 항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밀접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지만 승객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승객의 경우는 특별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하는 특정한 경제적, 사회적 과제 즉 소음방지를 위한 재원마련에 대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항공기 이용자라는 것으로 일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지닌 집단이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집단적 책임성의 경우도 조세 외에 이중부담을 지워야할 특별한 책임근거도 없다. 국회의원들에 의해 추진되었던 항공기 소음분담금의 경우 2008년 11월 여론의 반대로 이는 철회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익사업 일부의 소요재원을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공항 측에 마련케 하기로 하였다.

### 3. 소음관리 시스템 구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소음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음지도 작성하여 비행장 주변에 대한 소음피해 현황을 가능한 명확히 도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음대책에 필요한 사업추진 및 보상, 소음저감 방안 강구에 선행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소음지도 분석을 통하여 공항전체지역에 대한 소음문제 식별 및 소음추이 파악을 할 수 있고 소음대책에 대한 효과평가와 소음경감활동에 필요한 소음대책 예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규제 및 비행장 주변 도시개발시에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행장 신·증설에 따른 활주로 건설 및 운영방안 대해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지도는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작성되고 있는데 모든 군용비행장에 대한 종합적인 소음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항공기 기종변화 등 외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소음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소음상시측정망 설치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체계적인 소음관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광주, 사천, 김해, 원주, 대구, 청주공항에 대하여 소음상시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도 일부 비행장에 대하여 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환경부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소음관리를 하여야 한다. 소음상시측정망을 활용한 항적 정보수집을 통한 저소음 운항절차 수립 및 효과적인 감시체계 수립이 용이하고 3차원 영상의 비행궤적 구현으로 정확한 소음 영향지역 판별이 가능하다. 또한 소음관련 민원제기시 비행항로 확인 및 피해정도 파악도 수월할 수 있다. 또한 비행장별로 주기적인 소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비행장 주변 노출소음도 및 소음피해 면적 등 소음지도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이를 통한 비행경로 개발 및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행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불특정 소음민원지역 및 전원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소음측정을 위하여 이동형 소음측정기의 확보와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 구역 선정과 비행장 소음상시측정망 설치지점 선정 등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4. 소음 감소 노력 공감대 형성

군이 그동안 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민원을 다소 억제하고 있었던 것은 과거에 있어서는 안보논리였다면, 지금은 군의 지속적인 소음대책 홍보효과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지속 시행하여야 한다. 첫째, 소음방지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항공기 엔진정비를 위한 방음 정비기(Hush House), 방음벽, 방음독, 방음림 설치를 통하여 소음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항공기 운항방식 개선이다. 대부분 각급 부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더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항공기 이·착륙 진입경로 변경, 고도 조정, 심야시간대 비행 최소화, 항공기 운항시간대 조정, 훈련용 비행시뮬레이터 활성화, 무기체계 선정시 저소음 장비 채택 등 기술수준의 발달에 따라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여지는 계속 조성될 수 있다. 셋째, 주민지원 대책이다.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해서 농번기 및 재난시 대민지원형식의 장비, 인력의 지원이 있을 수 있다. 소음지역에 대한 토지매입, 훈련시간 사전 통보,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부대차원의 현지 조사, 지역주민 무료진료, 부대 시설개방을 통한 영화상영, 무장 및 항공기 전시, 체육시설 공동사용, 기상정보 제공 등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 부대초청행사, 부대원과 지역주민과의 체육대회행사 및 동아리활동 등도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활동은 군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군 비행장 소음문제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5. 헬기 소음민원 예방활동 예산의 현실화

헬기전용 작전기지도 점차 도시화됨에 따라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2011년간 육군항공 전체 67건의 소음민원이 접수되었으며 특히 조치원기지의 경우 2011년 10월에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으며 2012년 3월에는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헬기소음에 따른 민원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향을 고려하여 각급제대의 많은 노력으로 지난 2011년부터 배정되었던 ‘헬기 소음민원 예방 활동 예산’은 현실화 되지못해 민원 발생시 적극적인 조치가 제한된다. 2012년 배정된 예산은 각급 헬기전용 작전기지의 도시화를 고려하여 A급기지와 B급기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A급기지는 425만원, B급기지는 79만원으로 등급별 차이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며 공군(연간 1,600만원, 대도시권)과 비교시 턱없이 부족한 실태이다. 이에따라 관련예산을 현실화하여 B급을 A급 정도로 상향하고 A급기지 또한 점차 공군과 같이 상향 조정하여야 하겠다.

## V. 결 론

항공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항공기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 또한 광범위하게 늘어났다. 물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보잉사와 같은 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소음기술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MIT는 캠브리지대학과 공동으로 60dB 전후의 정숙성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단기간에 항공기소음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에게 적절한 대안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항공기의 소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많은 분쟁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청주공항 사건이나 김포공항 사건 등 손해배상청구가 계속 되어왔으며, 전국의 주

요 군용비행장 주변에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이 68만명에 이르고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으로 매년 200건 이상의 민원의 접수와 함께 최근 10년간 182건에 3,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적은 금액이다.

이러한 항공기 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군비행장 소음특별법을 입법 추진하고 있으나 소음방지시설 설치기준이 현행 항공법 기준인 80웨클보다 높은 85웨클로 정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헬기전용 작전기지에서 주로 운용되는 육군항공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75웨클로 하향 되어야 기지 주변의 피해 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항공법의 경우 항공운송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소음대책에 대한 규정이 미미하여 예산확보가 어려웠던 면이 있어 국회에서는 항공기 소음분담금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항공기 소음분담금의 경우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방법상 적정한 것으로서 인정되기 위해 몇 가지 허용요건이 요구된다.

따라서 항공기 소음분담금 외에 소음방지대책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입법 예고된 법률안을 보면 방음창, 에어컨 지원, 공영방송수신료 등의 추가지원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군비행장 소음특별법의 경우는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으로 재정이 부족하여 2015년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이유로 벌써 20년째 미뤄지고 있다. 특히 군용비행장과 사격장의 경우 소음 발생원에 대한 저감 대책에 대한 언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국방부가 선진국의 소음 저감 기술과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



## 참 고 문 헌

- 국회 국방위원회,(2012) 군용항공기 소음현황 및 피해실태와 정책적 개선방안  
김명용, (2002) 독일의 항공기 소음 방지법  
김정태, (2008)항공기 소음의 방지대책 및 환경기준  
박영민, (2007) 항공기 소음의 영향 예측기법 개선방안  
이기한, (2006) 항공기 소음방지를 위한 규제법체계연구  
육군항공학교, (2011) 갈등관리 사례 발표  
중앙일보, (2012)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항공작전사령부,(2012) 조치원 기지 헬기소음 현지 심사 결과

# The Study of Mitigation Measures for Conflicts caused by Military Airfield Noise

Cheol Ho Yang

Department of Military Studies

Cheong ju university

As public awareness is increasing, the desire for a quiet life environment causing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is increasing at the same time. However, although the impact of noise generated by aircraft is wide enough to harm the life and health of residents around the military airfield, there is no legal basis to compensate these problems.

In particular, the current Aviation Act defines the noise compensation for civil airports but there are no regulations for noise damages. Therefore, all levels of troops put lots of time and effort to resolve the civil complaints. The efforts and time cause waste of budget, loss of lives and strength of the army.

In this paper, the cases of Jochiwon station filed a lawsuit to Taejon District Court in 2012 and the civil complaints reported to Air Operation Command in 2011 were analyzed to study the compensation measures for noise damages of residents around military airfield.

As a result, to manage the noise from military aircraft and mitigate conflicts with local residents, "Legislation regarding Military Airfield Noise Protection and Support for Local Areas" should be filed as soon as possible. Also, the noise management systems need to be installed such as creating noise mapping and noise monitoring network.

Keyword: Aircraft noise, Collective Civil Complaints, Installation of Noise Management System

논문투고일 : 2014. 06. 30

심사개시일 : 2014. 07. 01

게제확정일 : 2014. 07. 20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6권 1호  
2014년 7월호

## 내부고발자 보호의 주요쟁점 및 관련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부교수  
이주희

### 국문요약

오늘날 공적, 사적 영역을 불문하고 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가기관 자체가 공적 영역에서의 조직이며, 사적 조직의 대표격으로는 기업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 내에서 범죄를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조직의 은밀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에서 이를 발견하고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조직 내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방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내부고발 제도이다. 무엇보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협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내부고발 제도가 조직 내 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가급적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여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과제는 내부고발자 보호 입법을 더욱 완전하게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 입법 중에서 우선법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주요내용은 익명신고의 허용, 언론 또는 시민단체에 대한 내부고발의 허용, 사전적 보호조치의 도입, 양벌규정의 도입 등이다. 이러한 법적 제도의 개선을 통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때 조직 내 부패가 효과적으로 예방·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내부고발, 내부고발자, 부패, 조직비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신고방법, 신고경로, 불이익, 보호조치]

\* 이 논문은 2013.3-2015.2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지원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목차>

- I. 서론
- II. 내부고발의 개념 정의와 관련 용어의 정리
- III. 내부고발자 보호를 둘러싼 주요 쟁점
- IV.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내용과 개선방안
- V. 결론

## I. 서론

오늘날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부정과 비리 등을 감시·예방·방지하기에 유용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분업과 협업의 원리로 무장한 조직(organization)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조직 내부의 부정행위를 외부에서 감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밀성과 폐쇄성은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공조직에만 국한된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기업으로 대표되는 사조직 역시 마찬가지이다. 2001년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미국 엔론사의 파산을 초래한 이종장부 작성에 의한 분식회계 사건이나 2002년 미국 2위의 장거리 전화업체인 월드콤의 파산 원인이 된 회계부정사건의 적발 및 사법처리과정은 이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sup>1)</sup>

그러나 내부고발이 조직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외부에서 볼 때 공익을 위해 조직의 부정행위를 폭로한 용감한 영웅이 될 수 있지만, 해당 조직 또는 그 조직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배신자라고 할 수 있다. 배신자에 대한 응징은 신분상의 불이익에서부터 정신적 괴롭힘과 따돌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할 경우 내부고발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sup>2)</sup>

각종 반부패 국제협약을 비롯하여 외국의 법제들이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도입·강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고 함)<sup>3)</sup>와 「공익신고자보호법」<sup>4)</sup>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내부고발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다.<sup>5)</sup>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후속과제는 내부고발자 보호 입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호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민을 꾸준히 해 나가는

---

1) MK 뉴스, [Topic] 공익(내부)신고자보호법 시행 1년... 고자질쟁이 몰면 누가 나서겠나, 2012.10.15.  
2) 기존의 외국 연구들은 조직의 보복행위에 대한 두려움이 내부고발의 결정을 쉽게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결과를 보여준다(장용진 외, 부패가 없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 조명문화사, 2013, 23쪽).  
3) 2008년 2월 29일 제정·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법」은 2001년 7월 24일 제정되어 2002년 1월 25일 시행되었던 「부패방지법」이 폐지되면서 대체법률로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은 그대로 「국민권익위원회법」에 계승되었다.  
4) 본 법률은 2011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30일에 시행되었다.  
5) 얼마 전 KBS 추적 60분에서는 직장 내 따돌림,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소송 등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하여 밀착 취재하여 방송한 바 있다([http://www.kbs.co.kr/2tv/sisa/chu60/vod/2187057\\_879.html](http://www.kbs.co.kr/2tv/sisa/chu60/vod/2187057_879.html)).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내부고발의 개념을 정의하고 혼용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내부고발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점검해 본다(II). 다음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짚어본다(III). 이어서 현행법상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보호조치들의 문제점들이 무엇이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선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목차 III에서 살펴본 주요 쟁점별로 나누어 검토한다(IV).

## II. 내부고발의 개념정의와 관련 용어의 정리

### 1. 내부고발의 개념 정의

언급한 바와 같이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법률 그 어디에도 내부고발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국민권익위원회법」은 부패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연히 내부고발에 관한 법적 정의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내부고발은 아직 법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논의의 객관화를 위해서는 내부고발이라는 개념의 정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내부고발은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정의들에서 대체로 중복되어 나타나는 개념징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고발의 주체는 조직의 구성원이다. 즉 일정한 조직을 전제로 하여 그 내부인의 제보를 필요로 하되, 해당 조직이 공공조직이나 민간조직이냐는 불문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의 일원이 아닌 일반인 제3자에 의한 신고나 언론에 의한 보도는 내부고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둘째, 내부고발의 주된 목적은 공익 실현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익이란 매우 다양한 의미로 파악되며,<sup>6)</sup> 예컨대 외부인이 알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불법적·반사회적 활동 통제에 의한 부패예방, 단체나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비롯한 생명·신체·재산 등의 권익 보호, 정치권력이나 상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에 대한 내부적 권력통제수단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sup>7)</sup> 따라서 자신의 비리를 감추거나 대가를 얻기 위한 비리 제보는 내부고발의 범주에서 제외된다.<sup>8)</sup>

셋째, 내부고발은 조직의 비리나 부정을 내부 또는 외부에 제보하는 것이다. 조직 비리를 내부에 제보하는 것을 내부형(internal whistleblowing), 외부에 제보하는 것을 외부형(external whistleblowing)이라고 한다. 물론 내부고발의 폭로성이라는 성격을 강조하게 되면 조직 내부에서의 비리 제보를 내부고발에 포함시키기가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sup>9)</sup> 그러나

6) 공익 개념에 대해서는 J. Isensee, Gemeinwohl und Staatsaufgaben im Verfassungsstaat, in: J. Isensee/P. 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III, 2.Aufl., C. F. Müller, 1996, S. 3ff. Rn. 4.

7) 박경철, “내부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52쪽.

8) 문영식 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방안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2008, 7쪽 이하.

9) 이러한 이유로 내부고발을 외부형 내부고발로 정의하는 견해로는 장용진 외, 앞의 책, 2쪽 이하; 박흥식, 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 1999, 32쪽 이하; 이진국·황태정,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형사법적 검토”, 형사정책 제1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5, 10쪽; 최정학,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일단 조직의 비리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해당 조직과 사회에 미치는 과장이 크다는 점과 내부의 비리 제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sup>10)</sup>을 고려할 때 내부형 내부고발을 내부고발의 범주에 포함시켜 조직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징표들을 바탕으로 내부고발의 개념을 정의하면, 내부고발이란 조직의 비리나 부정을 알게 된 구성원이 공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조직 내부 또는 외부에 알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정의한다면 내부고발과 그와 유사한 행위들을 보다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내부고발 관련 논의에 있어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관련 용어의 정리

그런데 내부고발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문헌들은 내부신고, 내부제보, 내부보고, 내부공익신고<sup>11)</sup>, 공익제보<sup>12)</sup>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용어상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들 용어들은 기존의 내부고발이라는 개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만 내부고발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다소나마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내부고발이라는 개념에 밀고자, 변절자 등의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이다.<sup>13)</sup>

하지만 내부고발이라는 개념이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대체하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논점이 흐려지고 논의가 복잡해 질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내부고발이라는 친숙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내부고발이 담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는 용어의 교체가 아니라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 Ⅲ. 내부고발자 보호를 둘러싼 주요 쟁점

### 1. 내부고발의 활성화

법적 가능성”,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3, 316쪽(하지만 최정학 교수는 2009년 논문에서 내부형 내부고발까지 내부고발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견해를 수정하였다-최정학,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민주법학 제40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2009, 204쪽).

10) 김승태,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평가”, 외법논집 제34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96쪽.

11) 이것은 권익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방지위원회가 내부고발이라는 단어에 갈음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용어이다(부패방지위원회, 2003 부패방지백서, 부패방지위원회, 2004, 194쪽 이하).

12) 이 용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최근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례에서 쓰이고 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3년 7월에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때 공익제보란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신고, 여타 법률상에서 별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보를 통칭한다.

13) 김준성, 정신교,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의 형사법적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제18권 제4호, 한국부패학회, 2014, 277쪽.

다음으로 내부고발 내지 내부고발자 보호를 논의할 때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주요한 쟁점들을 제시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쟁점들을 살펴으로써 내부고발과 관련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한 쟁점 중의 하나로 내부고발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내부고발자가 조직의 밀고자·배신자로 치부되고 불이익을 받게 되면 장차 내부고발을 하려는 자가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활성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부고발 활성화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금전적 보상은 자신에 대한 불이익을 예상하면서도 공익을 위하여 소속 조직의 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도 함께 갖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반론도 존재할 수 있다. 첫째,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내부고발이 갖는 순수한 공적 동기를 훼손할 수 있다. 둘째, 고발을 유도 내지 조장함으로써 조직 내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셋째, 보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를 야기하여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sup>14)</sup>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보다 세밀한 제도설계와 운영, 이를 테면 내부고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보상금의 수준을 책정한다면, 허위신고를 방지하여 신고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장치 등을 통해 해결가능하다고 본다.

보상금 제도와 함께 내부고발을 고무·촉진시키는 유인책으로 책임감면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 내부고발 이후 고발자들은 조직이나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이유로 형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sup>15)</sup>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담한 조직범죄에 관련한 정보를 제보한 경우에는 아무리 공익을 위한 정당한 내부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범죄와 관련한 형사책임의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형사책임의 위험을 불사하고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고발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결국 내부고발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부고발로 인해 발생한 각종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제시키는 혜택을 부여하는 책임감면제도는 유용한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내부고발의 경로와 방법

내부고발의 경로와 방법 역시 검토가 필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속 조직의 비리에 대한 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할 수도 있고 조직 외부에서 할 수도 있다. 조직 외부라고 할 경우 여기에는 관련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도 포함된다. 다만 내부고발의 경로를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곧 내부의 비리가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조직의 평판과 존립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발 경로의 확대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속 조직 내부에서의 비리 제보를 내부고발에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내부고발은 비리의 형태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조직 내부에 먼저 보고하고 수용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또는 그로 인해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게 되면 외부에 제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한다.<sup>16)</sup> 이러한 진행 과정을 감안할 때 조직 내부에서의 내부고발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

14) 최정학, 앞의 글(2009), 220쪽.

15) 김준성·정신교, 앞의 글, 278쪽 이하.

16) 박흥식, 앞의 책, 36쪽.

하여 내부고발의 경로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내부고발의 방법은 익명으로 하는 방법과 기명으로 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익명에 의한 내부고발은 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부고발 활성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익명성을 빌미로 해당 조직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의 내부고발 등 무분별한 내부고발을 조장할 수 있고 고발 내용의 진위과 악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익명에 의한 내부고발의 장점과 단점은 반대로 기명에 의한 내부고발의 단점과 장점으로 작용한다. 즉 기명에 의한 내부고발의 경우에는 신분 노출로 인해 무분별한 내부고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반면 내부고발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 3. 각종 불이익으로부터의 내부고발자 보호

내부고발을 이유로 가해지는 불이익으로부터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내부고발에 있어서의 또 다른 쟁점이다. 내부고발‘행위’에 대해서는 권력의 부패와 기업의 부정적인 이윤추구를 감시, 예방,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적 행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작 내부고발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밀고자, 고자질쟁이, 정보원으로 취급하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되어 있다. 특히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내부고발자는 조직을 배반한 배신자로 비춰지게 되고 그 결과 해당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한 각종 보복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때 내부고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sup>17)</sup> 해임, 해고 등을 통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근무조건 또는 임금이나 상여금 지급에서 차별을 받을 수도 있으며 직장 내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또한 명예훼손 등을 빌미삼아 형사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기도 한다.

조직 내에서 가해지는 불이익으로부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발자의 신원비밀을 최대한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고발을 당한 조직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발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을 것이고 만약 고발자의 신분이 드러날 경우 보복조치가 가해지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sup>18)</sup>

내부고발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어 불이익이 가해진 때에는 불이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에 대한 보호조치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해고, 해임, 파면이나 전직, 감봉과 같은 인사상 조치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통한 신분유지 또는 불이익처분의 무효 등과 같은 신분보장이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유형적인 불이익 처분 외에 광범위하게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내부고발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집단적 따돌림과 같은 무형적 불이익이 주목을 받고 있는 바, 심리상담 등 효율성 있는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sup>19)</sup> 더불어 불이익 처분에 의해 발생한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등도 고발자를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7) 이상수, 공신법 및 부패방지법 내 공익제보 보호조항 개정안 제안-정책토론회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공익제보자 보호법제의 개정 필요성과 의의, 국회 시민정치포럼.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2013, 7쪽; 박흥식, 앞의 책, 87쪽 이하 참조.

18) 최정학, 앞의 글(2009), 216쪽.

19) 박흥식,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현실-보호법 제정을 요구한다”, 사회비평 통권 제35호, 나남, 2003, 152쪽.



또한 내부고발자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조치와 함께 입증책임의 문제가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관건이 되는 것은 내부고발과 불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일정한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여야 하므로, 내부고발의 경우 입증책임은 내부고발로 인하여 이리이러한 불이익을 당했으니 보호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내부고발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불이익을 가할 때에는 내부고발이 아닌 업무태만 또는 명령 불복종 등 다른 이유를 근거로 삼는다는 점 그리고 조직과 개인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일개 내부고발자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내부고발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입증책임의 배분 등과 같이 불이익에 대한 보호조치를 주장하는 내부고발자 측의 입증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안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IV.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내용과 개선방안

### 1. 내부고발자 보호의 일반법으로서의 「공익신고자보호법」 : 「국민권익위원회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관계

앞에서 두어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제로는 「국민권익위원회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다. 그런데 이 양 법률의 관계와 관련하여 공공부문의 신고에 대해서는 전자가, 민간 부문의 신고에 대해서는 후자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인 듯하다. 대체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정 배경에 대하여 기존의 「국민권익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이 공공부문의 부패로 한정되어 있는데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의 대상 범위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0)</sup>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양 법률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먼저 두 법률 모두 신고자 자격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누구든지’ 요건을 맞춰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양 법률은 각각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에 있어서도 그 행위주체를 공직자나 사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법」의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자를 행위의 주체로 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를 공직자로 국한시키고 있지 않은 것이다.<sup>21)</sup>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법」상 부

20) 김승태, 앞의 글(2010), 206쪽; 최정학(2009), 앞의 글, 207쪽.

21) 「국민권익위원회법」제2조 제4호 참조.

패행위는 사조직 또는 사인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예컨대 공공기관과 일정한 계약을 맺은 기업이 그 이행에 있어 비리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제보한 경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법」상의 부패행위가 될 수 있다.<sup>22)</sup>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 행위 또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신고대상인 공익침해행위로 정의하면서도 그 주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sup>23)</sup> 따라서 예를 들어 공직자의 행위가 「국민권익위원회법」상의 부패행위는 아니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된다. 또한 공직자의 행위가 「국민권익위원회법」상의 부패행위인 동시에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인 경우에는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정리해보면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하여 양 법률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24)</sup> 이러한 점에서 다수의 견해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양 법률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실마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5조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 조항에 의하면 법규범의 경합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들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대해 우선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있어서 우선법적 지위에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 (1) 보호대상이 되는 내부고발의 대상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내부고발의 대상은 전술한 것처럼 공익침해 행위이다. 공익침해행위의 정의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호). 즉 신고대상 법률로 지정

22) K통신회사 비리를 제보한 여상근씨의 내부고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본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진행과정은 장화익 외, 앞의 책, 99쪽 이하 참조).

23)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 이에 대해서는 아래 2. (1)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24) 참고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일반법 형태의 법률로서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대표적인 입법례로는 영국의 공익제보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과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있다(임병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2008, 10쪽; 문영식 외, 앞의 글, 42쪽). 영국의 공익제보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J. Gobert.M. Punch, Whistleblowers,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The Modern Law Review. Vol. 63, 2000, pp. 25참조.

된 벌표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만이 공익침해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11개의 법률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169개의 법률이 동법 시행령에 신고대상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상의 위법행위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입법방식을 개별적 열거방식이라고 한다.<sup>25)</sup>

하지만 이는 결국 180개의 신고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은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나 다름없다.<sup>26)</sup> 차명계좌, 분식회계, 배임, 횡령, 탈세 등과 같은 기업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sup>27)</sup>이나 사학비리에 대한 내부고발 등<sup>28)</sup>은 관련 법률이 보호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를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공익신고행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sup>29)</sup> 먼저 새로운 법률을 현행 신고대상 법률 목록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sup>30)</sup> 그러나 이 방법은 개별적 열거방식을 그대로 고수함으로써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내부고발자의 발생이라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한 이처럼 보호가 필요한 새로운 영역이 등장한 경우 이를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데, 매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역시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익침해행위를 개별적 열거방식이 아닌 포괄적 정의방식에 의해 규정하는 것이다.<sup>31)</sup> 포괄적 정의방식이란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다.<sup>32)</sup>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공익침해행위 및 새롭게 등장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범주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유형을 제

25) 개별적 열거방식에 대해서는 문영식 외, 앞의 글, 73쪽.

26) 실제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개월간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 중에서 180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처리가 어려운 신고건수가 총 479건 중 172건으로 35.9%에 달했다고 한다(이상수, 앞의 글, 21쪽).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주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한 KT의 부당이득 의혹에 대한 내부고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180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한겨레 21, 공익은 나중에 따지는 거라고?, 2013.12.24.).

27) 이상희, 공신법 및 부패방지법 내 공익제보 보호조항 개정안 제안-정책토론회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내 공익제보보호조항 개정안 제안, 국회 시민정치포럼.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2013, 30쪽; 김승태, 앞의 글(2013), 590쪽.

28) 최정학, 앞의 글(2009), 210쪽 이하.

29) 같은 견해로는 김승태, “반부패 정책수단으로서의 공익신고자보호법 평가”,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590쪽; 박경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의의와 문제점”, 공법연구 제40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1, 179쪽.

30) 2013년 9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하 권익위 개정안이라 칭함)은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 다수의 생활안전과 관련되었거나 약자의 권익보호 및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법률 등 100개를 적용대상 법률에 새롭게 포함시키고 있다(김인종, 공신법 및 부패방지법 내 공익제보 보호조항 개정안 제안-정책토론회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정부안 내용 소개(9.26 국회 제출), 국회 시민정치포럼.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2013, 69쪽).

31) 2013년 12월 12일 참여연대가 국회에 입법청원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하 참여연대 개정안이라 칭함)은 포괄적 정의방식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참여연대 개정안 제2조 참조).

32) 외국의 입법례 중에서 포괄적 정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는 영국의 공익제보법이 있다. 본 법은 범죄행위 및 범죄의 우려가 있는 행위, 법령 위반행위 및 위반의 우려가 있는 행위, 부정행위의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개인의 생명·건강·안전 또는 근무환경에 대한 위협 또는 위협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공익제보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보호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영국 공익제보법 제43B조 참조).

시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유형의 내부고발 사례에 대한 탄력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sup>33)</sup> 즉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범주에 해당되면 어느 영역에 대한 내부고발인지를 불문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괄적 정의방식을 선택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내부고발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 경우 무엇보다 광범위한 내부고발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2) 내부고발의 활성화

### 1) 책임감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고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고발자의 책임감면과 보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책임감면이라는 측면에서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고,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내부고발자를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내부고발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내부고발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14조).

그러나 형벌의 임의적 감면이 얼마나 내부고발의 유인책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형벌의 감면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재적 내부고발자들이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조직의 비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의적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형벌을 감면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34)</sup>

내부고발을 이유로 조직에서 가하는 징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처럼 위원회로 하여금 징계권자에게 징계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내부고발을 장려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징계라는 것이 조직이 배신자에게 가할 수 있는 손쉬운 보복수단이기 때문이다.<sup>35)</sup>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징계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36)</sup>

### 2) 보상금 지급

또 다른 활성화 전략인 보상금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자는 내부고발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보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도록 하고 있다(제26조). 본래 내부고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인정하는 입법례는 미국의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 1986)을 제외하고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한다.<sup>3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33) 문영식 외, 앞의 글, 72쪽.

34) 김승태, 앞의 글(2013), 595쪽 이하; 박경철, 앞의 글(2011), 185쪽 이하; 이진국, 황태정, 앞의 글, 168쪽(다만 이진국, 황태정 교수는 내부고발 장려를 목적으로 비리에 연루된 고발자의 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법치국가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 법관의 선고형을 기준으로 징역 1년 이하에 처할 사건인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신고자에게 징역 1년 이상에 처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35)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 사례들은 이러한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용환, 공신법 및 부패방지법 내 공익제보 보호조항 개정안 제안-정책토론회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사례로 본 공익제보 보호법제 개정 필요성, 국회 시민정치포럼 참여연대 공익제보 지원센터, 2013, 98면 이하 참조).

36) 김승태, 앞의 글(2013), 596쪽.

상 보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고발을 촉진하기 위한 강한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보상금 지급이 명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금액의 범위가 향후 연봉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보상될 수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sup>38)</sup> 내부고발에 대한 보상은 국민 또는 공직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비롯하여 적법한 행위과정에서 소용된 물질적, 정신적 비용의 보전과 그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희생에 대한 대가 지불의 의미를 가진다.<sup>39)</sup> 따라서 실제로 지불되는 보상금의 액수는 최대한 직장에서의 해고와 같은 상황에서 생계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의 마련과 관련하여 최근 보상을 위한 기금 설립 및 기금 운용을 위한 보상공단의 설치를 제안하는 견해가 대두된 바 있다.<sup>40)</sup>

권익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1년 9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이래로 매년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41)</sup> 만약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내부고발의 대상이 지금보다 확대될 경우 보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고발의 활성화라는 정책적 취지를 살리는 한편 보상금 액수의 현실화를 추구하는 방안으로 보상공단과 기금 설립에 관한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3) 내부고발의 경로와 방법

#### 1) 내부고발의 경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내부고발의 경로는 내부형과 외부형이 모두 허용된다. 내부형 내부고발의 경로로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업자가 상정되어 있으며,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이 외부형 내부고발의 경로로 지정되어 있다(제6조).

반면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의 대외적 경로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제보한 내부고발의 경우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는 보호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물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내부고발의 경우 신빙성이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무차별한 폭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국가 및 사회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37) 최정학, 앞의 글(2003), 333쪽 이하. 미국의 부정주장법에 대해서는 M. S. Raspanti, D. M. Laigaie, Current Practice and Procedure Under the Whistleblower Provisions of the Federal False Claims Act, 71 Temp. L. Rev. 23, 1998, pp. 23 참조.

38) 예컨대 내부고발자 보호 및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호루라기 재단의 상담 사례를 보면 현재 연봉이 6천만원이고 회사 성격상 정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최소한 15년은 더 근무할 수 있지만 신고했을 때 받는 보상금은 최대한 계산해도 1억 정도여서 사실 신고에 나서기가 주저된다고 하였다(이문, 공신법 및 부패방지법 내 공익제보 보호조항 개정안 제안-정책토론회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공익정보지원법제에 대한 의견, 국회 시민정치포럼.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2013, 95쪽).

39) 박흥식 외,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방안, 국가청렴위원회, 2006, 49쪽.

40) 박흥식 외, 앞의 글, 163쪽 이하 및 173쪽.

41)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권익위, 올해 공익신고 보상금 2억 3천여만원... 지난 해 8배, 2013.12.27.

수 없으며, 내부고발자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내부고발사례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도움을 얻어 공론화된 것이기도 하다.<sup>42)</sup>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여 이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매개로 한 내부고발 허용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에 대한 제보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현행법상 정해진 행정기관에 제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거나 불이익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sup>43)</sup> 이는 내부고발의 경로를 언론이나 시민단체로 확장할 경우 조직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외부에 폭로되어 조직의 문화나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것은 이른바 ‘내부고발 절차에 있어서의 보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내부고발의 방법

내부고발의 방법으로는 고발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면이든 구술이든 내부고발자는 고발 내용에 대한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

서면에 의한 기명제보를 원칙으로 한 것은 무분별한 내부고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내부고발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내부고발을 반드시 기명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 기명에 의한 내부고발만을 인정할 경우 고발자의 인적사항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결과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익명에 의한 내부고발이다.<sup>44)</sup> 이러한 익명에 의한 내부고발 허용에 대해서는 내부고발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비리나 부정 사실을 제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까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남용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sup>45)</sup> 오히려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클 수 있다. 먼저 내부고발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기재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신원비밀 보호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나 조사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sup>46)</sup> 또한 소속 조직의 위법행위 등이 진행중이거나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의 실태를 밝히고 증거자료를 확보

42) 박경철, 앞의 글(2011), 181쪽; 노상현, “내부고발과 근로자의 법적 보호”, 노동법학 제18호, 한국노동법학회, 2004, 179쪽 참조.

43) 영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내부고발의 절차를 단계화하여 비리제보 기관을 조직 내부신고→관련 법에서 정한 행정기관→언론이나 시민단체로 지정하고 내부에서 외부로 갈수록 보호요건을 강화하고 있다(영국 공익제보법 제43C조 이하;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 제2조 및 제3조 참조). 영국의 내부고발 절차 및 보호요건에 대해서는 이건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120쪽 이하. 일본의 내부고발 절차 및 보호요건에 대해서는 이상윤, “해외법제뉴스-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 법제 2008, 183쪽.

44) 참여연대 개정안은 내부고발자를 비롯한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변호사가 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참여연대 개정안 제8조 참조). 참고로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은 익명에 의한 공익통보의 경우에도 사후에 통보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 제2조 제1항).

45) 최정학, 앞의 글(2009), 217쪽.

46) 최정학, 앞의 글(2009), 216쪽.

함에 있어 익명의 제보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sup>47)</sup>

#### (4) 조직 내 불이익으로부터의 내부고발자 보호

##### 1) 각종 불이익에 대한 보호조치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고발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sup>48)</sup> 무엇보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한편(제15조) 이러한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진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7조).

더불어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경우 처리절차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 불이익처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19조 내지 제20조). 내부고발자와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이러한 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21조). 즉 보호조치 결정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곧 자신에게 유리한 보호조치결정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불이익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sup>49)</sup> 따라서 보호조치, 즉 내부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정한 기간 내에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요구하는 결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불이익처분을 한 자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sup>50)</sup> 다른 한편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권익위가 내린 보호조치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이른바 긴급이행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sup>51)</sup>

##### 2) 내부고발과 불이익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고발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하여 내부고발과 불이익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과 관련해서는 불이익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제23조).<sup>52)</sup> 그러나

47) 박경철, 앞의 글(2011), 182쪽.

48)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그 동안 문제시되어 왔던 불이익 처분의 범위를 매우 명시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6호). 특히 집단따돌림과 같은 정신적·무형적 불이익의 문제도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종래 불이익 처분의 근거로 자주 이용되었던 동료평가나 부당한 감사 등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최정학, 앞의 글(2009), 212쪽 이하).

49) 실제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결정을 내린 총 5건 중에서 4건에 대하여 불이행(이후 2건에 대해서는 소 취하 후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한다(이상수, 앞의 글, 23쪽).

50) 이 방안은 권익위 개정안 제21조의2(이행강제금) 및 참여연대 개정안 제21조의 2(이행강제금) 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51) 이 내용은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인 2008년에 권익위가 입법예고했던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들어있다(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5조 제3항 참조).

52) 본 조항은 구체적으로 불이익조치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최근 대법원 판례는 현재의 추정규정만으로는 내부고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53)</sup> 내부고발자에게 가해진 징계의 원인을 둘러싸고 내부고발자와 조직의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우리 법원은 문제가 된 징계가 내부고발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추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과 징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불이익이 내부고발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해당 조직이 입증하도록 하는 등 내부고발자의 입증책임은 현행법상의 불이익 추정보다 더욱 완화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sup>54)</sup>

### 3)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통해 받게 된 피해의 전보와 관련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반면 구조금 제도를 두고 있다. 구조금 제도란 내부고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고발자에게 고발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실 등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금으로 먼저 지급한 후 내부고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하는 것이다(제27조).

내부고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전보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조금 제도는 바람직한 내부고발자 보호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더 강화하고 불이익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sup>55)</sup>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 이러한 손해배상 특칙에는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입증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6조와 같이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sup>56)</sup> 또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과 같이 행위자와 소속기업의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sup>57)</sup>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4) 내부고발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사 제재 부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각종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

---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는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 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53) 대법원 2013.7.25. 선고 2011두1214 판결-이는 권익위가 내부고발자의 보호조치 요구에 근거하여 내린 보호처분에 대하여 해당 기관(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한 첫 번째 확정 판결이다.

54) 예컨대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제30조)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도 불이익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장화익, “근로자 내부고발보호제도 국제비교: 영.미.일의 사례와 시사점”, 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2007, 244쪽), 외국법제 중에서는 영국의 공익제보법이 근로자가 고용심판소에 불이익처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영국 공익제보법 제48조 (2) 참조).

55) 김성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방안 연구-토론문,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2008, 71쪽; 최정학, 앞의 글(2003), 326쪽 이하.

56) 김영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방안 연구-토론문,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2008, 75쪽.

57) 문영식 외, 앞의 글, 107쪽.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조치의 내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확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30조).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실제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아닌 관리주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아닐 수 없다.<sup>58)</sup> 양벌규정의 도입을 통해 관리주체의 책임회피 내지 책임전가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 V. 결론

지금까지 내부고발의 개념정의에서 출발하여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삼아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주요한 관련 규정들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내부고발을 지금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내부고발자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보호의 방법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이 고발한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특히 고용관계에 있어서 신분상 불이익을 면하거나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법적·제도적 수단들이 강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수단들이 향후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선·보완시에 반영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신고를 허용하거나,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고발을 허용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된 법적 공방이 길어져 내부고발자가 장기간 신분상 불안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임시구제의 절차를 활용한 사전적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고, 적절한 대안임을 주장하였다.

이성적으로는 내부고발은 국가와 기업의 부패를 방지하여 세금 낭비를 막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용기 있는 행위임을 인정한다. 또 조직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충심어린 행위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감성적으로는 내부고발자를 조직을 해치는 사람, 불편한 사람, 지나친 영웅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폄하하는 일이 많다.

이미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은 시작되었다. 우리가 관성적인 감성보다 명징한 이성의 목소리를 따를 때 이러한 법들은 제대로 효용을 발휘할 것이며, 향후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또 그래야 경제적 번영과 정의로운 사회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다.

---

58) 최정학, 앞의 글(2009), 218쪽.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단행본>

- 박흥식, 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 1999.
- 장용진 외, 부패가 없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 조명문화사, 2013.

#### <논문>

- 김승태,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평가”, 외법논집 제34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반복되는 경우 앞의 글(2010)로 기재함.
- 김승태, “반부패 정책수단으로서의 공익신고자보호법 평가”,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반복되는 경우 앞의 글(2013)로 기재함.
- 김준성·정신교,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의 형사법적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제18권 제4호, 한국부패학회, 2014.
- 노상현, “내부고발과 근로자의 법적 보호”, 노동법학 제18호, 한국노동법학회, 2004.
- 박경철, “내부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반복되는 경우 앞의 글(2008)로 기재함.
- 박경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의의와 문제점”, 공법연구 제40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1: 반복되는 경우 앞의 글(2011)로 기재함.
- 박흥식,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현실-보호법 제정을 요구한다”, 사회비평 통권 제35호, 나남, 2003.
- 이상윤, “해외법제뉴스-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 법제 2008.
- 이진국·황태정,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형사법적 검토”, 형사정책 제1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5.
- 장화익, “근로자 내부고발보호제도 국제비교: 영·미·일의 사례와 시사점”, 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2007.
- 최정학,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법적 가능성”,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3: 반복되는 경우 앞의 글(2003)로 기재함.
- 최정학,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민주법학 제40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2009: 반복되는 경우 앞의 글(2009)로 기재함.

#### <보고서 및 토론회 자료집>

- 공신법 및 부패방지법 내 공익제보 보호조항 개정안 제안-정책토론회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국회 시민정치포럼·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2013.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2008.
- 박흥식 외,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방안, 국가청렴위원회, 2006.
- 부패방지위원회, 2003 부패방지백서, 부패방지위원회, 2004.
- 이건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국외문헌]

- J. Gobert·M. Punch, Whistleblowers,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The Modern Law Review. Vol. 63, 2000.

- J. Isensee, Gemeinwohl und Staatsaufgaben im Verfassungsstaat, in: J. Isensee/P. 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III, 2.Aufl., C. F. Müller, 1996.
- M. S. Raspanti-D. M. Laigaie, Current Practice and Procedure Under the Whistleblower Provisions of the Federal False Claims Act, 71 Temp. L. Rev. 23, 1998.

# A Study on the Major Issues of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Current Law

Lee, Joo-Hee  
Professor, Dep. of Law,  
Cheongju University. Dr. iur.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s with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tries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current law. First of all, whistleblowing is to be defined as the act of informing about irregularities of fraud that the organization's members get to know. The reporting of the fact may be made either inside or outside of organization.

Starting with this concept, it is clarified that the whistleblowing should be more active than now. In addition, it is said that whistleblowers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disadvantages effectively. In this regar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employment will not be disadvantaged because of the whistleblowing.

To achieve this,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may be utilized. And these means should be reflected in the revision of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For example, anonymous reporting should be allowed in order to protect the identity of whistleblowers. Reporting on the media and NGO will also be allowed. Furthermore, it is argued that to the temporary relief of the court to guarantee the employment of whistleblowers.

Legislation for activation of whistleblowing and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has already begun. Now, all we need to do that this legislation will be settled down as stably as possible.

[Keywords: Whistleblowing, Whistleblower, Corruption, Misconduct of Organization, Anti-Corruption Ac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Reporting Methods, Reporting Channels, Unfavorable Dispositions, Protective Measures]

논문투고일 : 2014. 06. 30

심사개시일 : 2014. 07. 01

게재확정일 : 2014. 07. 20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6권 1호  
2014년 7월호

## 대학생의 도박행동과 정신건강<sup>1)</sup>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수미

### 국문 요약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학생 집단은 청소년, 성인에 비해 도박행동에의 참여가 더 높고, 도박과 관련된 다양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87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도박행동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7.4%의 대학생이 문제도박의 위험을 나타내었고, 대학생의 도박행동 수준과 우울, 불안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p < .001$ ).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도박문제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예방 및 치유재활을 위한 개입전략 수립에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대학생, 도박행동, 정신건강, 우울, 불안, 스트레스

## I.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문제도박 비율은 서구 국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수준의 자료로 시행된 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6.4%(문화관광부, 2006), 7.2%(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하 사감위 2012)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국 2.9%(2007), 캐나다 1.7%(2005), 호주 2%(200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박민수, 2011 재인용). 이와같이 한국의 문제도박율이 높은 것은 전통적으로 도박에 허용적인 문화적 배경<sup>2)</sup>을 가진 상태에서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한 올인, 대박, 한탕주의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장수미, 전영민, 김성재, 2009).

1) 본 연구는 2013-2014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2) 한국은 일상적인 놀이문화로서 '세 사람만 모이면 화투판을 벌인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만큼 도박(내기)게임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런 놀이문화는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적 특징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해석되는데 즉, 한국인은 여럿이 어울려서 함께 하는 놀이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도박을 처음 시작하는 계기 또한 주변사람의 권유인 경우가 많으며, 여럿이 어울려 게임을 즐기기 때문에 도박에 대한 거부감이 낮게 형성된다(사감위, 2010a).

오락과 여가활동의 수단으로서 도박행동이 문제도박이라는 심각한 병적 행동으로 발전되는 데에는 도박에 몰입하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 뿐 아니라 도박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인식 등 문화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사감위, 2010a). 우리나라는 손쉽게 복권을 구입할 수 있고 경마, 경륜, 경정 등은 본장뿐 아니라 장외발매소를 통해서도 베풀 수 있다. 합법 카지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설경마와 같은 불법 스포츠베팅, 각종 인터넷 게임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장수미 외, 2009). 이와 같은 환경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의 높은 문제도박율은 합법적인 사행산업뿐만 아니라 불법 사행산업의 급증과 세계 어느 국가보다 눈부신 초고속인터넷의 발전으로 도박에 대한 용이한 접근환경이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한국에서는 성인기와 노년기에 있는 성인은 물론 아동, 청소년들도 도박 경험이 매우 보편적인데(인형뽑기, 판치기, 인터넷을 이용한 고스톱, 포카 등) 이중 대학생은 다른 생애주기 인구보다도 높은 도박경험 및 문제도박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규모 전국 표본(n=2,026)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도박행동에 대한 사실상 최초 조사라고 할 수 있는 사감위(2010b)의 보고서에는 대학生の 문제도박율이 11%로 나타나 성인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대학生の 도박행동은 정신건강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대표적인 우울, 불안과 중독행동간의 관련성을 보면, 대학생 집단의 우울은 흡연, 알코올관련 문제, 자살, 낮은 학업수행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부정적인 건강행동과 강한 관계가 있었다(Cranford et al., 2009). 불안 역시 흡연과 음주 빈도와 같은 부정적인 건강행동과 정적 관련성을 나타내었다(Gilles et al., 2006). 이와 유사한 결과를 선행연구에서도 제시하고는 있으나 대학생 집단에서 도박행동과 정신건강의 공동발현(co-morbidity)을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Martin et al., 2013).

이상의 논의는 대학생이 다른 인구집단보다 도박행동과 정신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더 높은 위험을 가진 집단임을 제시된 것이다. 특히 사회문화적으로 도박에 접근성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대학생은 도박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에 더 취약한 집단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박행동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조사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결과는 대학生の 중독행동과 정신건강에 관심을 유도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예방 및 치유재활 개입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대학生の 도박행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008)에 의하면 도박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요행수를 바라고 위험한 일이나 가능성이 없는 일에 손을 대는 일, 돈이나 재물을 걸고 서로 따먹기를 다투는 짓(이희승 국어사전, 1982),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결과에 기대어 금전을 포함해서 가치 있는 어떤 것의 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동(김교현, 2003) 등으로 정의된바 있다(이순목 외, 2009 재인용). 정신의학 영역에서

는 반복적이고 과도한 도박행동의 부정적 결과로 도박중독에 이른 상태를 병적도박(pathological gambling), 문제도박(problem gambling), 강박적 도박(compulsive gambling), 도박장애(gambling disorder) 등으로 칭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종합하여 문제도박으로 통일하였다. 한편 문제도박의 반대 개념을 책임도박(responsible gambling)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대학생의 도박행동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권복순, 김영호, 2011), 전국 대학생 2,026명에 대한 조사에서 문제도박율은 11%로 나타났고 이는 성인(6.1%)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다(14.6% vs 6.6%,  $p < .001$ ). 구체적으로 스포츠도박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문제도박율은 21.4%, 인터넷 도박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19.3%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이하 시기에 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집단에서 문제도박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이른 시기의 도박경험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고, 초등학교 시기부터 도박중독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국외의 경우 일본의 Kido & Shimazaki(2007)가 일본판 SOGS 척도를 이용하여 대학생 도박행동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문제도박율이 8.5%로 보고되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치를 알 수 있다. 서구의 연구에서 Ladouceur 외(1994)는 대학생 1,471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90%가 도박경험이 있으며, 22-24%가 주 1회 이상 도박을 하였고, 3%는 문제도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Bondolfi 외(2000)는 29세 이하에서 더 높은 고위험도박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고, Volberg 외(2001)는 스웨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5세 이하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문제도박률이 나타남을 제시하여 대학생과 같은 초기성인기 발달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도박중독의 고위험군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대학생 집단을 고위험군으로 보는 이유는 대학생의 발달적 특성으로 이해된다. 발달심리학자인 Arnett(2000)는 대학생이 18-25세 사이에 있으며 고위험행동, 관계, 결혼, 일, 교육 등에서 중간자적 지위를 갖는 “emerging adult”라고 명명하며 대학생의 특성을 설명했다. 즉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위험감수행동(risk-taking behavior)을 하며, 불안정 상태에 있으며, 자기중심적이며 부모와 사회의 통제 없이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였다. “emerging adult”라는 지위는 알코올 및 약물사용, 도박, 위험한 성적행동에 관련되기 쉬운 시기임을 의미하며, 실제로 대학생의 과도한 도박행동은 재정적, 학업적,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Ashrafioun et al., 2012; 장수미, 2013 재인용).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고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면 상대적으로 부모의 감독이 느슨해진 상태가 되며 동기, 선후배와의 관계가 활발해지는 대학 문화에서 음주, 도박과 같은 중독행동에 빠지기가 더 쉬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학생의 도박행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

## 2. 도박행동과 정신건강

문제도박, 즉 통제하지 못할 상태에 이를 정도의 도박행동은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양산한다. 도박은 개인적 측면에서 불안, 분노,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쾌락의 추구, 통제력 상실 등의 심리적 문제와 거짓말, 무책임함, 자기중심성과 같은 행동적 문제를 초래하며 우울증, 자살사고, 알코올중독, 불안장애,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사감위, 2008). 가족적 측면에서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같은 부정적 결

과는 부부갈등, 양육의 어려움, 가정폭력, 별거/이혼과 같은 가족해체를 초래하는데, 신체적인 증후가 있는 알코올중독과 달리 도박은 상당히 심각해지기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발견되면 그 심각성이 치명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사회적으로도 도박의 결과는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손실, 실직, 범죄와의 연결 등이 불가피해진다.

사감위(2010b:3-4)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학생 도박문제의 증가는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먼저 직접적 피해로 대학생의 도박행동은 이 시기의 정상적인 성장과 안전, 학습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문제와 함께 비행과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무엇보다 대학교육의 핵심인 학문연구와 건전한 인격체로의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간접적 피해의 경우 대학생의 도박과 이를 통한 금전추구는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고 도덕성 상실, 가치관 파괴로 인한 탈선과 파멸로 이어져 사회적 병리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도박문제는 술, 약물과 같은 2차적인 중독으로 연결될 소지도 갖고 있으며,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과적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다.

정신건강을 황폐화시키는 도박행동의 부정적 영향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문제도박을 보이는 성인이 다른 정신장애를 함께 보인다고 나타났다는데, 높은 약물사용장애, 니코틴중독, 우울, 불안 등을 보였다(Lorains et al., 2011). 또 대규모 전국조사에 의하면 하나이상의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도박중독이 될 가능성이 약 17배 더 많다고 하였다(Kessler et al., 2008). 이 연구에서는 도박중독자가 비도박중독자보다 불법 약물중독 평생유병율이 5.5배, 정동장애(mood disorder) 4배, 불안장애(anxiety disorder)가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도박행동과 정신건강간의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 집단은 정신장애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2009), 하나의 정신장애는 다른 정신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므로(Shaffer et al., 2004) 대학생은 여러 정신장애의 동시발현(co-morbidity)에 취약하다. 대학생이 경험하는 우울은 흡연, 낮은 학업성적, 알코올 관련문제, 자살과 관련이 있으며, 불안은 흡연, 알코올소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rtin et al., 2013). 하지만 대학생의 음주문제와 정신건강의 관련성에 비해 도박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최근 연구로 Martin et al.,(2013)은 1,430명의 대규모 학부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문제도박 대학생의 문제음주, 불안, 우울의 정신장애 공동발현율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불안과 문제도박의 관계만 제외하고 문제음주와 문제도박, 우울과 문제도박간에 유의미한 관계( $p < .01$ )가 있음이 나타났다. Johansson et al.,(2008)는 문제도박의 위험요인을 살펴보는 문헌연구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변인(나이, 성별), 인지적 왜곡(지각의 장애, 통제에 대한 착각, 감각특성, 강화계획), 공동장애 요인(우울, 불안, 강박장애, 알코올 및 약물남용, 성격장애), 비행/범죄행위 요인의 크게 4가지 범주의 위험요인을 밝혀내었다. 이중 공동장애 요인은 도박행동과 정신건강간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총 14개의 4년제 대학교 남녀 재학생 870명으로, 조사는 2012년 10~11월에 조사원이 직접 캠퍼스를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이에 대한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자기보고(self-report)식으로 이루어졌다. 성별, 학년, 전공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도록 미리 일정량의 설문지를 준비하여 실시하였다.

## 2. 측정도구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사용되는 도박행동 선별도구로는 임상면접에 의한 DSM-V,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인 SOGS, PGSI 등이 보편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군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일반인의 도박행동 측정에 유용한 PGSI(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되며 0~3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총점이 0점이면 비문제도박자, 1~2점 저위험도박자, 3~7점 중위험도박자, 8점 이상은 문제도박자로 선별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932이었다.

대학생의 정신건강은 Lovibond & Lovibond(1995)의 DASS(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을 통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정도가 측정되었다. 총 21문항으로 각 문항의 내용이 지난 한 주 동안 자신에게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를 '나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0점에서 '대부분 나에게 적용된다' 3점으로 표기하며, 연구의 신뢰도는 .940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인구사회학적 정보로는 성별, 학년, 전공, 성적, 종교, 부모와 거주여부, 경제적 상태, 군복무상태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 3. 자료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도박행동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을 비교하기 위해 T-test, ANOVA 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870명의 조사대상 대학생 중 문제도박에 해당하는 경우는 64명(7.4%)로 나타났다. PGSI 척도에서는 문제성도박자(32명, 3.7%)와 중위험도박자(32명, 3.7%)를 합쳐서 문제도박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대학생 집단의 문제도박율은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인 6.4%(문화체육관광부, 2006), 7.2%(사감위, 2012)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반면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도박행동 경험이 있는 남자 대학생에 대한 조사에서는 14%로 나타나(장수미, 2013) 남학생, 여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자 대학생이 보다 문제도박의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도박행동 정도

구분	빈도(명)	%
비문제성도박자	769	88.4
저위험도박자	37	4.3
중위험도박자	32	3.7
문제성도박자	32	3.7
합계	870	100

다음 <표 2>는 본 연구와 동일표본을 사용한 장수미(2013)의 연구에서 도박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66명 남자대학생만을 대상으로 도박유형별 빈도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유형별 도박행동 빈도

도박 유형	전혀 없다	주1회 이하	주2회 이상
카드나 화투	166(45.4)	177(48.4)	23(6.3)
경마/경륜/투우/투견(사설경마, 장외경주 포함)	300(82.0)	58(15.8)	8(2.2)
스포츠경기나 윗놀이 돈내기	216(59.0)	122(33.3)	28(7.7)
주사위 게임(크랩, 다이사이 등)	263(71.9)	85(23.2)	18(4.9)
카지노(국내외 합법 및 불법카지노 포함)	292(79.8)	66(18.0)	8(2.2)
복권구입(로또, 스포츠토도 등), 숫자게임	148(40.4)	173(47.3)	45(12.3)
룰렛게임	306(83.6)	44(12.0)	16(4.4)
주식/선물거래	306(83.6)	39(10.7)	21(5.7)
성인오락실에서 슬롯머신, 포커머신, 기타	326(89.1)	31(8.5)	9(2.5)
내기볼링, 내기당구, 내기바둑 등	189(51.6)	141(38.5)	36(9.8)
빙고게임	235(64.2)	111(30.3)	20(5.5)
인터넷도박(해외불법 사이트 포함)	288(78.7)	54(14.8)	24(6.6)

장수미(2013: 241)

남자 대학생이 가장 많이 하는 도박유형은 로또, 스포츠토도와 같은 복권구입 행동이었는데, 60% 정도가 주1회 이상 복권을 구입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카드나 화투, 내기볼링/당구/바둑 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도박유형은 성인오락실에서의 슬롯머신/포커머신게임, 룰렛게임이나 주식 등이었는데 이는 접근의 어려움이나 대학생 신분으로 경제력과 관계된다고 예측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대체로 한국인의 도박행동이, 처음에는 친목목적 게임(고스톱 등)→로또 복권→로또나 스포츠토도를 제외한 기타 복권→오락형 온라인 게임(한게임 등)→스포츠 토도→경마→카지노→경륜→경정→현금전환 가능한 온라인 게임→성인오락실→카지노 바→사설 스크린경마 순으로 나타난다는 보고(사감위, 2010a)와 유사하다.

<표 3>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정신건강, 즉 우울, 불안,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모두 유의미하게 높았고, 학년별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특히 1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나 대학 신입생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외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불안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 경제적 상태와 불안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 군복무 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미필인 경우 제대를 한 경우보다 우울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종합적으로 군미필의 남학생으로서 저학년이면서 경제적 상태가 낮은 집단이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구분	N(%)	우울			불안			스트레스				
		M	SD	F/T	M	SD	F/T	M	SD	F/T		
성별	남	571(65.6%)	5.23	4.24	-3.57	5.66	4.18	-1.28	6.52	4.47	-5.05	
	여	299(34.4%)	6.33	4.39	***	6.05	4.30		8.20	4.72	***	
학년	1(a)	220(25.3%)	6.52	4.31	5.02	6.44	4.18	3.33*	7.61	4.55	3.31*	
	2(b)	204(23.4%)	5.02	4.11		**	5.20		4.07	6.25		4.44
	3(c)	247(28.4%)	5.29	4.27	a>b,	5.61	4.12		a>b	7.22		4.62
	4(d)	199(22.9%)	5.62	4.49	c	5.94	4.52		7.23	4.82		
거주 형태	부모와 거주	462(53.1%)	5.59	4.27	.19	5.76	4.22	.31	7.14	4.61	-.33	
	바깥 거주	408(46.9%)	5.64	4.39		5.85	4.22		7.04	4.65		
학자 금대출	유	262(30.1%)	5.87	4.47	1.13	6.29	4.42	.30*	7.55	4.71	1.90	
	무	608(69.9%)	5.50	4.25		5.58	4.11		6.90	4.58		
전공	인문사회	200(23.0%)	5.68	4.28	.49	5.84	4.10	.96	7.18	4.81	.95	
	경영	199(22.9%)	5.55	4.44		5.88	4.35		7.11	4.54		
	이공	319(36.7%)	5.53	4.20		5.82	4.12		7.06	4.53		
	예체능	34(3.9%)	4.97	4.65		5.35	4.59		6.50	4.59		
	기타	118(13.6%)	6.01	4.46		5.64	4.40		7.19	4.78		
군복 무 상태 3)	미필(a)	171(19.7%)	5.94	4.29	3.44*	6.21	4.28	2.38	6.80	4.47	1.07	
	면제(b)	6(0.7%)	5.17	3.06		a>c	7.33		4.50	8.33		4.37
	제대(c)	394(45.3%)	4.93	4.21		5.40	4.10		6.36	4.47		
종교	유	324	5.65	4.48	-.22	5.85	4.30	-.27	7.37	4.72	-1.35	
	무	546	5.59	4.23		5.77	4.17		6.93	4.56		
성적 4)	3.5이하	392(45.1%)	5.87	4.47	1.58	5.86	4.13	.39	7.17	4.58	.43	
	3.5이상	478(54.9%)	5.40	4.19		5.75	4.29		7.03	4.67		

\*p<.05, \*\*p<.01, \*\*\*p<.001

도박행동의 정도별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4>,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문제도박(중위험도박+ 문제성도박)인 경우 비문제성 도박에 비해 유의미하게 우울과 불안 정도가 높음이 제시되었다(p<.001). 스트레스의 경우는 중위험도박과 문제성도박이 모두 비문제성도박, 저위험 도박보다 평균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3)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함.

4) 학교마다 상이한 학점체계를 4.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학점인 3.59를 기준으로 함.

<표 4> 조사대상자의 도박행동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도박행동 정도	N(%)	우울			불안			스트레스		
		M	SD	F	M	SD	F	M	SD	F
비문제성(a)	769(88.4%)	5.47	4.30	6.55 ***	5.57	4.19	10.04 ***	6.97	4.67	2.37
저위험(b)	37(4.3%)	4.78	3.45		5.86	3.71		7.03	4.25	
중위험(c)	32(3.7%)	7.56	4.90		8.44	4.54		8.84	4.87	
문제성(d)	32(3.7%)	8.09	4.01		8.63	3.36		8.25	3.12	
Scheffe 검증		a,b<d			a<c, a<d					

\*\*\*p<.001

## V. 결론

전국 표집을 통해 대학생의 도박행동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건강한 인격발달과 학업성취를 위해 이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정부, 대학 교직원, 캠퍼스 내 학생상담센터, 지역사회 정신보건전문가 등에게 여러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중독행동 중 도박문제에 대해 예방 및 치유재활을 주로 담당하는 정부부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서 산하에 서울, 경기, 부산, 강원, 광주 전국 5개의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가 있다. 대표적인 활동을 보면 사감위에서는 대학생 도박중독 예방활동단을 구성,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학생 대상 도박예방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전략으로 다음을 제시한 바 있다(사감위, 2010b). 첫째, 도박중독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인식증진 프로그램으로 팜플렛, 포스터, 게시판, 뉴스레터의 활용, 소시오드라마 공연의 제안 둘째, 대학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적용기술 개발로서 대학의 경영진과 교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성 개발 세미나와 대학생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의 실시 셋째, 지역사회기관과 연계된 예방프로그램으로 대학과 지역사회 관련기관들이 참여하여 도박중독 해소 및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캠퍼스내에서 도박예방 정책을 함께 검토 넷째, 공중보건 및 사회정책의 수립으로써 지역사회와 정부의 도박관련 규정과 법률을 확인하고 대학내에서도 도박관련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도박문제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인식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문제도박에 개입하는 전문 기관수와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치유활동은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정부 정책이 지역사회 관련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대학생 도박행동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 대학생 도박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신설 및 확대,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양성되고 있는 중독전문인력(중독전문가, 도박중독예방강사, 도박중독상담가, 중독전문사회복지사 등)의 양성 및 수퍼비전 체계수립, 대학의 대학생 도박문제에 대한 관심 증진, 지역사회의 청소년, 정신보건, 중독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 등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대학생의 도박행동,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자기보고(self-report) 방법에 의해 조사함으로써 두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사회적 바람직성의 이슈로 인해 솔직한 응답

이 제한받을 수 있으며 둘째, 조사대상자의 도박 및 도박개념에 대한 인식이 상이함에 따라 도박행동이 정확히 측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권복순, 김영호(2011) 한국 대학생의 도박참여 실태와 도박중독 유병율 조사, 정신보건과 사회 사업, 39: 5-28.
- 박민수(2011) 도박폐해예방과 감소를 위한 국가전략, 도박중독예방강사 양성 시범과정 자료집, 48-56. 서울.
- 사감위(2008)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분석 및 총량 조정 연구.
- 사감위(2010a) 한국 사회의 도박중독자의 특성 연구: 한국인과 일본인의 문화적 특성 비교를 중심으로.
- 사감위(2010b) 대학생 대상 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사감위(2012) 사행산업 이용 실태조사.
- 이순목, 김종남, 최삼욱, 현명호, 김수진(2009) 도박의 정의와 범주화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1-27.
- 장수미, 전영민, 김성재(2009) 외국의 도박중독상담 전문인력 자격제도 비교: 미국, 호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대한스트레스학회지, 17(1): 53-62.
- 장수미(2013) 대학생의 문제도박 발달경로 구조분석-Jacob의 중독의 일반이론 적용-, 한국 사회복지학, 65(2): 231-254.
-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2009) In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Ed.)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National College Health Assessment II: Reference group executive summary fall 2009. Linthicum, MD: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 Bondolfi, G., Osiek, C., & Ferro, F. (2000) Prevalence estimates of pathological gambling in Switzerland,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1: 473-475.
- Cranford, J., Eigenberg, D., & Serras, A. (2009) Substance use behaviors, mental health problems, and use mental health services in a probability sample of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34: 134-145.
- Gills, D., Turk, C., & Fresco, D. (2006) Social anxiety, alcohol expectancies, and self efficacy as predictors of heavy drinking in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31: 388-398.
- Johansson, A., Grant, J., Kim, S., Odlaug, R., & Gotestam, K. (2008) Risk factors for problematic gambling: A critical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5: 67-92.
- Kessler, R., Hwang, I., LaBrie, R., Petukhova, M., Sampson, N., Winters, K. et al.(2008) DSM-IV pathological gambling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Psychological Medicine*, 38: 1351-1360.
- Kido, M., & Shimazaki, T. (2007)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odified Japanese version of the South Oaks Gambling Screen(SOGS). *The Japanese Journal of Psychology*, 77(6), 547-552.
- Ladouceurs, R., Dube, D., & Bujold, A. (1994) Prevalence of pathological gambling and related problems among college students in the Quebec metropolitan

- area, *Journal of Psychiatry*, 39: 289-293.
- Lovibond, S., & Lovibond, P. (1995) Manual for 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2nd ed.), Sydney: Psychology Foundation.
- Lorains, F., Cowlishaw, S., & Thomas, S. (2011) Prevalence of comorbid disorders in problem and pathological gambling: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population surveys, *Addiction*, 106: 490-498.
- Martin, R., Usdan, S., Cremeens, J., & Vall-Smith, K. (2013) Disordered gambling and co-morbidity of psychiatric disorders among college students: An examination of problem drinking,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1.
- Shaffer, H., LaPlante, D., LaBrie, R., Kidman, R., Donato, A., & Stanton, M. (2004) Toward a syndrome model of addiction: Multiple expressions, common etiology,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2: 367-374.
- Volberg, R., Abbot, M., Ronberg, S., & Munck, I. (2001) Prevalence and risks of pathological gambling in Swede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4(4): 250-256.

## Abstract

# Gambling Behavior and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Soo Mi Jang

(Cheongju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According to recent studies, college students are high-risk group to develop problem gambling and have various mental health problems related to gamb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gambling behaviors and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A poll of 870 college students are surveyed their level of gambling behaviors,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The results are that 7.4% of participants are screened as a problem gamblers and there are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gambling behaviors and depression/anxiety( $p < .001$ ). This results might be useful for college and community to build intervention strategies on gambling problems.

Key words: college students, gambling behaviors, mental health, depression, anxiety, stress.

논문투고일 : 2014. 06. 30

심사개시일 : 2014. 07. 01

게재확정일 : 2014. 07. 20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6권 1호  
2014년 7월호

# 부모양육행동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 일반가정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의 비교를 중심으로1)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황 혜 원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반가정 유아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양육행동과 학교준비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부모양육행동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충북지역 4~7세의 유아를 둔 어머니 2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유의하게 높은 과보호 및 허용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하게 높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준비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학교준비도는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 중 일상생활지식 영역에 있어 다문화가정 유아가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회귀분석 결과,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 및 온정적·격려적 양육행동 등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주제어 : 학교준비도, 유아, 다문화가정, 부모양육행동

## I. 서론

유아는 초등학교 입학을 통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며 이러한 변화

1) 이 논문은 2013-2015년도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 되었음.

에 잘 적응하고 생활해 나가기 위해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입학의 계기로 유아기에서 아동기로의 전환을 맞게 되며 이들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에 적절히 적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손은영, 2008). Rouse, Brooks-Gunn, & McLanahan(2005)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은 아동은 부적응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학교생활을 위한 사전 준비는 반드시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일반가정 유아들에 비해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정체성 혼란, 또래들과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가정 유아들에 비해 학교준비에 있어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Brooks-Gunn & Markman(2005)은 일반유아와 다문화유아의 학교준비도의 차이는 이들 부모의 양육행동의 차이에 일부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들을 대상으로 학교준비도에 차이가 있는지, 부모양육행동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란 학습준비도(Learning Redadiness)와 혼동하여 사용되기도 하지만 개념상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학교준비도는 학문적·인지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신체적·사회적·정서적으로 바람직한 적응과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준비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지성애 외, 2006).

이러한 학교준비도는 앞으로 학교생활에서의 성공적 적응을 예측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특히 생애초기부터 일반 가정의 유아들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은 학습능력을 포함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한 실패가 단기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발생한다는 연구결과(Rouse, Brooks-Gunn, & McLanahan, 2005)를 생각해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이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이 초등학교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는데 강현옥과 황혜원(201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아의 자신감, 어머니의 적극적 대처와 긍정적인 양육행동,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중 읽기능력, 이웃과의 유대가 학교준비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 소득,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학교준비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학교준비도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 등을 포함한 개인변인(박순희, 2009; 서현·이승은, 2007),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한국어 수준, 학력 등을 포함한 어머니변인(김영옥·임진숙·정상녀, 2008; 도미진·김주후, 2011)과 가족원의 구성, 가족관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포함하는 가

족관련 변인(하미화, 2009; 홍정미, 2008), 사회적 지지와 교사의 지지 등을 포함한 사회적 변인(고유미, 2009; 박은혜, 2009)에 관한 연구들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유아의 학교준비도 수준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도미진과 김주후(2011)의 연구는 결혼이민자 여성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다문화가정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전 학교준비도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능력, 정서교류능력, 단체생활태도, 학습활동능력과 같은 준비도 하위 영역이 평균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도 낮은 수준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일반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양육태도의 하위 영역 중 '통제'가 학교준비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취학 전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학교준비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학교준비도를 다룬 선행연구를 근거로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적 요인 중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정미영·문혁준, 2007; 정혜영·정옥분, 2011)와 성별에 따라 학교준비도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박연정·정옥분, 2010; 홍정미, 2008; Zill & West, 2001)로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유아의 낙천적인 성격과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과 정적 관계를 가지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여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연정·정옥분, 2010; 이완정, 2002; 이훈진, 1999; Bowman, 2006; Masten, 2001).

다음으로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을 살펴보면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대처기제, 가족간의 관계가 주로 검증되어 왔다(Brooks-Gunn & Markman, 2005).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방임하거나 과보호하는 양육행동에 의존하며 자율적이고 격려의 양육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도미진·김주후, 2011; 하명선·이순복, 2009). 이러한 양육행동은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불리한 양육환경으로 작용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합리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들(신정희, 2010; 신호선, 2008; 홍정미, 2009)이 보고되었으나,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어머니가 유아에게 많은 한계를 정해줄수록 유아의 공격적 행동, 불안정성을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이경희·최경순, 1992; 최형선, 2009)와 어머니의 한계설정이 아동의 독립심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손승희, 2002, 정혜영·정옥분, 2011)들을 볼 때,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에 관해서는 서로 상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 양육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은 향상된다고 보고되었다(김현경, 2009; 도미진·김주후, 2011).

한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가족의 물리적 배경이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정혜연·정옥분, 2011).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유아들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유아보다 학교준비도가

낮다고 보고되었다(박연정·정옥분, 2010; Janus & Duku, 2006).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일정거주기간이 지나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독해·쓰기 능력에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학교준비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도미진·김주후, 2011, 홍정미, 2008).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정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학교준비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충북에 거주하고 유아를 둔 일반가정 및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유아의 나이는 4세~7세로 한정하였다. 본 조사는 충북지역 어린이집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고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288명이 응답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연구자가 조사원(센터 직원 및 통번역사)에게 설문내용과 설문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는 본국어로 번역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30분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질문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은 응답자에게는 통역사의 설명이 진행되었다.

### 2. 측정도구

#### 1) 학교준비도

학령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연정(2007)의 학교준비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부모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4개 하위영역인 단체생활태도(6문항), 정서교류능력(13문항), 일상생활지식(9문항), 학습활동능력(8문항) 등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학교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연정(2007)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값은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단체생활태도 .78, 정서교류능력 .81, 일상생활지식 .83, 학습활동능력 .9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교준비도의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 2)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박주희(2000), 홍정유(2007)가 Crase, Clark와 Pease(1978)의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IPBI)와 박영애(1995)의 척도, 이숙(1989)의 척도, Scheafer(1959)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등을 참고하여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보호·허용적인 양육행동(7문항), 거부·방임적인 양육행동(8문항) 등 2개의 하위 요인을 위협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온정·격려적인 양육행동(11문항),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8문항) 등 2개의 하위 요인을 보호요인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많이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alpha$ 값은 과보호적인 양육행동 .72,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68, 온정적인 양육행동 .83,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은 .71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학교준비도의 차이 및 관련 변인들에 따른 학교준비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를 이용하여 t검정 및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교준비도의 관계는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단체생활태도, 정서교류능력,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의 네 가지 영역의 학교준비도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이 실시되었다. 또한 양육행동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유아의 성별은 여아가 69명(53%), 남아가 62명(47.3%), 연령은 4세가 48명(37%)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어머니는 26~30세의 연령이 41명(31.3%)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아버지의 경우는 41~45세가 52명(39.7%)으로 가장 많은 수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상 88명(67%), 출신국가는 베트남 56명(43%),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한국어수준에 대해 '보통이상'이라고 99명(75%)이 응답하였고, '못한다'라고 인식하는 어머니는 35명(25%)이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1명(62%), 경제소득은 2012년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495,550원을 기준으로 150만원 이상을 '상위집단', 150만원 이하를 '하위집단'로 구분하였고, 상위집단이 85명(65%)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가정 유아의 경우 성별은 여아가 85명(54.1%), 남아가 72명(45.9%), 연령은 3세(28.7%)와 4세(27.8%)가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어머니는 31~35세의 연령이 62명(39.5%)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아버지의 경우는 36~40세가 65명(41.4%)으로 가장 많은 수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하

84명(53.5%),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68(41.6%)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132명(84.1%), 경제소득은 2012년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495,550원을 기준으로 150만원 이상을 ‘상위집단’, 150만원 이하를 ‘하위집단’로 구분하였고, 상위집단이 123명(78.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유아의 성별과 연령은 다문화가정이나 일반가정이 유사한 비율이며,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은 다문화가정이 낮고, 아버지의 경우 다문화가정 유아의 아버지의 연령이 높으며 학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징

변인	구분	다문화 가정 N(%)	일반 가정 N(%)	변인	구분	다문화 가정 N(%)	일반 가정 N(%)
성별	여아	69(53)	85(54.1)	출신 국가	베트남	56(43)	
	남아	62(47.3)	72(45.9)		중국	36(27)	
연령	3세	19(15)	45(28.7)		일본	14(11)	
	4세	48(37)	43(27.4)		필리핀	10(7)	
	5세	28(23)	36(22.9)		기타	15(12)	
	6세	11(8)	27(17.2)	가족 형태	핵가족	81(62)	132(84.1)
	7세	20(15)	6(3.8)		확대가족	46(38)	16(10.1)
어머니 연령	25세 이하	19(14.5)	2(1.3)	아버지 연령	26~30세		9(5.7)
	26~30세	41(31.3)	14(8.9)		31~35세	4(3.1)	34(21.7)
	31~35세	31(23.7)	62(39.5)		36~40세	42(32.1)	65(41.4)
	36~40세	19(14.5)	60(38.2)		41~45세	52(39.7)	35(22.3)
	41세 이상	21(16.0)	18(11.5)		46세 이상	32(24.4)	12(7.6)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88(67)	84(53.5)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97(73)	68(41.6)
	전문대졸 이상	43(23)	73(46.5)		전문대졸 이상	34(27)	86(55.9)
	상	85(65)	123(78.3)		한국어 수준	보통이상	99(75)
하	42(35)	34(21.7)	못함	32(25)			

## 2.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른 양육행동과 학교준비도의 차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관련 변인에 따른 학교준비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른 양육행동과 학교준비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2>와 같이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과보호허용( $t=7.78, p<.001$ )과 부정적 양육행동( $t=5.53, p<.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머니가 일반가정 유아의 어머니에 비해 높은 과보호허용 양육행동 및 부정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른 학교준비도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인 일상생활지식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일반가정 유아가 다문화가정 유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일상생활지식 수준을 나타냈다.

<표 2>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른 양육행동과 학교준비도의 차이

	하위요인	다문화가정(n=131)	일반가정(n=157)	t
		M(SD)	M(SD)	
양육행동	온정격려	34.82(4.60)	34.30(4.83)	.93
	한계설정	22.53(3.69)	22.92(3.95)	-.84
	과보호허용	16.84(3.81)	13.53(3.36)	7.78***
	거부방임	19.63(3.67)	18.82(4.19)	1.75
	긍정적 양육행동	57.35(6.30)	57.22(7.59)	.16
	부정적 양육행동	36.47(6.58)	32.34(6.09)	5.53***
학교준비도	단체생활태도	17.59(3.16)	17.57(2.80)	.06
	정서교류능력	39.41((5.91)	39.78(5.01)	-.58
	일상생활지식	28.26(4.48)	29.56(4.22)	-2.53*
	학습활동능력	22.11(5.46)	22.09(5.87)	.04
	학교준비도 전체	107.37(16.60)	109.00(15.32)	-.86

\*p<.05 \*\*<.01 \*\*\*<.00

###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교준비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변수들 간의 관계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교준비도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것은 <표 3>과 같다. 상관관계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

<표 3>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온정격려	1									
2. 한계설정	.34***	1								
3. 과보호허용	.01	-.04	1							
4. 거부방임	-.42***	-.03	.41***	1						
5. 긍정적양육행동	.86***	.77***	-.02	-.30***	1					
6. 부정적양육행동	-.25***	-.04	.84***	.84***	-.19**	1				
7. 단체생활	.43***	.37***	-.09	-.32***	.49***	-.25***	1			
8. 정서교류	.45***	.30***	-.15*	-.30***	.47***	-.26***	.71***	1		
9. 일상생활	.36***	.29***	-.24***	-.21***	.40***	-.27***	.72***	.74***	1	
10. 학습활동	.21***	.34***	-.06	-.07	.33***	.07	.57***	.57***	.63***	1
11.학교준비도전체	.41***	.37***	-.16**	-.24***	.48***	-.24***	.83***	.89***	.89***	.83***

\*p<.05 \*\*<.01 \*\*\*<.001

니 양육행동의 모든 하위변인과 학교준비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양육행동(r=.48, p<.001), 온정격려적인 양육행동(r=.41, p<.001), 한계설정 양육행동(r=.37, p<.001)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부정적 양육행동(r=-.24, p<.001), 과보호허용적 양육행동(r=.16, p.<01), 거부방임적인 양육행동(r=-.24, p<.001)은 학교준비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긍정적 양육행동은 학교준비도의 모든 하위변인들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부정적

양육행동은 학습활동능력을 제외한 모든 학교준비도의 하위변인들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온정격려적인 양육행동은 학교준비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4.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양육행동의 하위변인인 온정격려적 양육행동, 한계설정 양육행동, 과보호허용적 양육행동, 거부방임적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성별, 나이, 다문화가정 여부, 가족소득, 보육경험 유무를 통제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학교준비도에 대한 전체설명력이 36.4%로 나타났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한계설정 양육행동( $\beta=.34, p<.001$ )과 온정격려적 양육행동( $\beta=.18, p<.05$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력은 유아의 성별, 나이, 다문화가정 여부, 가족소득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나 양육행동에 있어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고 온정적이며 격려하는 양육행동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과보호허용적 양육행동이나 거부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 보다는 온정격려적 양육행동 및 한계설정 양육 행동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변 수	학교준비도		
	B	$\beta$	t
유아성별	1.66	.06	.83
유아연령	2.64	.26	3.81***
다문화가정 여부	-5.40	-.06	-.86
가족소득	-.68	-.07	-1.03
보육경험 유무	-.17	-.01	-.03
온정격려	.58	.18	2.18*
한계설정	1.31	.34	4.48***
과보호허용	-.39	-.07	-.84
거부방임	-.24	-.06	-.86
R <sup>2</sup>		.40	
adjust R <sup>2</sup>		.36	
F		11.19***	

\* $p<.05$ , \*\* $p<.01$ , \*\*\* $p<.001$

주) 성별은 남자=0, 여자=1로 dummy처리함.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정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학교준비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가정 및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교준비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온정적이며 격려적인 양육행동이나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 등 긍정적 양육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유의하게 높은 과보호 및 허용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하게 높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준비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학교준비도는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 중 일상생활지식 영역에서 다문화가정 유아가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박임자·이경숙(2012)의 연구결과인 일반가정 어머니가 다문화가정 어머니보다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과 민감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행동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과보호 및 허용적 양육행동 등 부정적 양육행동을 유의하게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유아를 위한 바른 양육행동이 지나치게 보호를 하거나 허용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부모에게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도미진·김주후(2011)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학교준비도가 낮은 수준임을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지식 영역을 제외한 모든 학교준비도의 하위영역과 전체 학교준비도에 있어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다문화 가정 유아가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매우 낮은 학교준비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편견은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 생의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여부를 떠나 모든 유아들이 공평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긍정적 양육행동은 학교준비도의 모든 하위영역들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부정적 양육행동은 학습활동능력을 제외한 모든 학교준비도의 하위영역들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의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과 온정적이고 격려하는 양육행동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한 도미진·김주후(2011)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적극적 참여, 자율적 격려 및 통제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느 정도 통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율적 격려와 더불어 방임이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제한을 두는 양육행동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정진 외(2012)의 연구에서도 적극적인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준이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격려하

는 양육행동이 학교준비도를 높인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 공평한 학교준비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유아를 둔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데 유아를 위한 보다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무엇이며 이것이 이후 유아의 학교준비도 더 나아가 성공적인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의례적인 부모교육이 아니라 훈련된 부모교육 전문가를 활용하고 최대한 부모들이 참여 가능한 여건을 갖추어 접근성이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가정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들의 양육행동과 유아들의 학교준비도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차이가 있는지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로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거나 미흡했던 부분을 다루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대상이 한 중소도시 지역에 국한된 점과 부모의 양육행동을 다루지 못하고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데에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고 후속 연구에서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육경험 유무만을 통제변수로 살펴보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보육의 질이나 내용 등이 함께 고려되어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설명하는 보다 보완된 모델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현옥·황혜원(2013). 다문화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2(1), 101-119.
- 고유미(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외국인 어머니가정 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임진숙·정상녀(2008).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양육태도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43-164.
- 김현경(2009).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관련 변인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도미진·김주후(2011). 다문화가정 유아의 학교 준비도 수준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사이의 관계.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5(3), 31-48.
- 박순희(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 (29), 125-154.
- 박순희·이주희·안효자·조원탁(2010). 국제결혼이주가정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이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3), 185-217.
- 박연정·정옥분(2010).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관련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17(3), 37-54.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은혜(2009).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과 관련된 어머니 양육목표, 양육행동,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현·이승은(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손은영(2008).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준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승희(2002).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또래유능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정희(2010).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접변태도, 부부 갈등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효선(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최경순(1992).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2), 83-97.
- 이숙(198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동학회지**, 9(2), 61-91.
- 이완정(2002). 발달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노출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보호 요인분석. **아동학회지**, 23(1), 2-16.
- 이훈진(1999).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영·문혁준(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4.
- 정해영·정옥분(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 영향. *인간발달연구*, 18(2), 277-297.
- 지성애·정대현·정효은·안지송·박은영(2006). 유아의 초등학교준비도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교사와 학부모 및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227-249.
- 하명선·이순복(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47-258.
- 하미화(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정미(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정유(2007). *어머니의 놀이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owman, B.(2006). School readiness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In B. Bowman & E. K. Moore (Eds.), "*School readiness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Perspectives on cultural diversity*". National Black Child Development Institute, Inc.
- Brooks-Gunn & Markman(2005).
- Janus, M., & Duku, E, K(2006). School readiness as the outcome of early child development: Relation to family factors. ISSBD. 국제학술대회자료집.
- Masten, A. S.(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Rouse, C., Brooks-Gunn, J., & McLanahan, S.(2005). Introducing the issue. *The Future of children*, 15(1), 5-14.
- Shae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Zill, N., Collins, M., West, J., & Hausken, E. G.(1995). Approaching kindergarten: A look at preschoolers in the United States. *Young Children*, 51(1): 35-38.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the School Readiness: Focused on Comparison between Young Children from Non-Multicultural Famili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Hwang, Hye-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ifferences in parenting and school readiness between young children from non-multicultural famili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school readiness. For this research, 288 mothers with young children age 4~7 participated. The results are as in the following.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 on the overprotecting and permissive parenting than mothers from non-multicultural families. Also,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otal school readiness between young children from non-multicultural famili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However, you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howed significantly lower level in the knowledge on daily life, the sub-factor of school readiness.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limit setting, affectionate, and encouraging parenting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young children's school readiness. Based on these findings, several suggestions to improve the school readiness of young children from non-multicultural and multicultural families were suggested.

Key word: multicultural family, parenting, school readiness, young children

논문투고일 : 2014. 06. 30

심사개시일 : 2014. 07. 01

게재확정일 : 2014. 07. 20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조병선 교수 [청주대 사회과학대학장]

운 영 위 원      오석웅 교수 [청주대 법학전공]  
진재구 교수 [청주대 행정학전공]  
김윤기 교수 [청주대 지적학전공]  
김영재 교수 [청주대 정치외교학전공]  
김미숙 교수 [청주대 사회학전공]  
나동석 교수 [청주대 사회복지학전공]  
이두원 교수 [청주대 신문방송학전공]  
정창준 교수 [청주대 광고홍보학전공]

감      사      홍성언 교수 [청주대 지적학전공]

편집위원장      오석웅 교수 [청주대 법학전공]

편 집 위 원      진재구 교수 [청주대 행정학전공]  
김영재 교수 [청주대 정치외교학전공]  
김미숙 교수 [청주대 사회학전공]  
나동석 교수 [청주대 사회복지학전공]  
조종혁 교수 [한국외국어대 언론학전공]  
민수홍 교수 [경기대 경찰행정학전공]  
차동필 교수 [신라대 광고홍보학전공]

편 집 간 사      최예지 조교 [사회과학대학 조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학술지 운영 규정집**

## 1. 논문제출 규정

「한국사회과학연구」(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는 사회과학 이론(Theories)과 실무(Practices)에 관련된 학문영역 및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 개발에 공헌하고자 출간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술지는 사회과학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Theoretical Study), 경험적 실증 연구(Empirical Study),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 및 사례 연구(Case Study)를 수록한다.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중이거나 발간된 논문이어서는 안 되며, 개별 논문으로서의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 1. 응모논문 접수

- 1) 수시로 응모 가능하다.
- 2) 논문제출 규정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되며, 논문제출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저자에게 반환된다.
- 3) 본 지에 게재를 원하는 투고자는 사회과학연구소 e-mail로 보내거나 디스켓을 사회과학연구소로 우송한다.

우130-79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6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편집위원회 전화: 043) 229-8231  
E-mail: sign@cju.ac.kr

- 4) 우송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접수 후 접수확인 메일을 발송한다.

## 2. 논문 작성

논문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최신판 출판 지침서에 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의 논문 작성 규정은 국어 용어 논문 작성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APA 양식 중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 1) 일반적인 고려사항

- (1) 파일형태는 반드시 아래아한글로 작성한다.
- (2) 분량은 A4용지 20매 내로 한다(참고문헌 포함)
- (3) 파일 포맷
  - 위아래 여백은 A4용지 기본설정대로 한다.
  - 줄 간격은 180%로 1페이지 분량이 33-38행 내외로 한다.
  - 제목/하위제목은 1. 1). (1). 가. 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 페이지번호는 반드시 붙일 것

-모든 표 및 그림은 일련번호와 제목 또는 설명을 선명하게 붙이고 본문 중에 원하는 위치에 삽입한다.

-각주는 최소화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그 내용은 각 면 아래에 작성한다.

-참고문헌은 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정리한다.

(4) 논문 첫 페이지(Cover Page)에는 제목, 논문의 성격(이론연구, 실증연구, 기술적 연구, 사례연구), 저자명 및 저자신상(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을 기재하고 특히 공동 연구의 경우 제1저자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편집 시 첫 번째 저자를 제1저자로 한다).

(5) 모든 연구논문은 한글요약, 영문요약 및 한글 및 영문 키워드를 별도 페이지에 작성, 제출한다.

## 2) 인용

(1) 본문 내에서의 인용은 괄호를 이용하여야 하며, 저자의 이름과 출판 연도가 기재되어야 한다(예. Smith, 2003; 홍길동, 2000). 만일 본문에서 저자의 이름을 밝혔다면 이름 옆에 연도만 표기한다 (예. 홍길동(2001)은...).

(2) 특정 페이지나 단락, 공식이 인용되면 페이지 번호를 붙인다(예. 홍길동, 1997, p. 20).

(3) 저자명이 두 명에서 여섯 명 이하인 경우, 본문에 인용문이 처음 나타났을 때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입하고, 그 다음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의 이름 다음에 "등" 또는 "외" (영어로는 et al.)를 써서 나타낸다. 6명 이상의 저자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지 않아도 된다.

(4) 동일 저자에 의해 작성된 두편 이상의 저작물들은 출판연도순으로 배열한다. (예. 홍길동, 1996, 1999). 만일 동일 저자의 2개 이상의 작업이 동일한 출간 연도 일 경우 (Smith, 1981a, 1981b)로 표기한다.

## 3) 참고문헌

(1) 참고 문헌에는 저작물의 준비나 연구물에 사용되었던 자료들만을 포함시켜야 하며, 따라서 참고문헌에 기입된 저작물은 본문의 어느 한 부분에 인용되어 있는 것이라야 한다.

(2) 내국인 먼저 첫 번째 저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영문으로 표기된 저자들은 알파벳순으로 정렬한다. 괄호 안에 출간 연도를 기재한다.

(3)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출간 연도, 논문 제목, 간행물 제목, 권호, 페이지 번호 등이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윤각, 김회훈, 윤정아. (2002). 잡지광고에 투영된 여성의 역할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과학 연구**, 10(2), 207-224.

Schegloff, A. (1987). Analyzing single episodes of couple interaction. *Journal of Human Communication*, 35(April), 73-82.



(4) 단행본의 경우

강진령(1997). **APA 논문작성법**. 서울: 양서원

Knapp, R. M., and Bangelisti, E. A. (1996).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hip(3rd ed.)*. London: Allyn and Bacon.

(5) 편집된 단행본의 경우

한규석 (1997). 사회심리학에서의 문화비교연구. 한국 심리학회(편),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서울: 성원사

Gibbs, J. T., & Huang, L. N. (Eds.). (1991). *Children of colo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ith minority youth*. San Francisco: Jossey-Bass.

### **3. 부칙**

본 규정은 2005년 2월 28일 개정하여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II. 논문심사규정

### 1. 심사방법

- (1)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성격(실증 연구, 기술적 연구, 사례 연구)에 따라, 편집위원과 심사위원단 중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선정한다. 단, 적절한 심사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사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회원들 중에서 임시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를 요청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마감일까지 이메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익명 심사를 받는다.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한다.
- (4) 심사 결과는 「무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5)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판정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6)항~(9)항과 같이 처리한다.
- (6) 심사 결과, 심사위원 2명 이상의 「무수정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선입고' 순서에 따라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이 지적한 내용을 연구자에게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7) 심사 결과, 심사위원 2명 이상의 「부분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친 후, 해당 심사위원의 확인을 받고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8) 심사 결과, 심사위원 2명 이상의 「대폭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대폭수정을 하도록 요청하고, 차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사 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차 심사를 담당했던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 (9) 심사 결과, 심사위원 2명 이상의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투고자에게 게재불가로 판정을 통보한다.
- (10)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구애됨 없이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 (11)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투고자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 2. 심사 기준

각 논문의 분야별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이론 연구(Theoretical Study)
  -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이론적, 학문적 기여도)
  - ② 이론적 주장의 논리성
  - ③ 기존 이론들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논제의 독창성)
  - ④ 연구 결과의 해석 및 논의 전개적 적절성
  - ⑤ 학문적 공헌도 및 시사점
  - ⑥ 내용/문장의 명료성

(2) 실증 연구(Empirical Study)

-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 ② 가설 및 연구문제 도출의 논리성
-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④ 연구 결과의 해석 및 논의 전개적 적절성
- ⑤ 학문적 공헌도 및 시사점
- ⑥ 내용/문장의 명료성

(3)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

-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 ② 내용 전개적 논리성
- ③ 내용 정리, 분류의 체계성 및 이론의 타당성
-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⑤ 학문적 공헌도 및 시사점
- ⑥ 내용/문장의 명료성

(4) 사례 연구(Case Study)

- ① 사례분석 내용의 중요성(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 ② 내용 전개적 논리성
- ③ 내용의 참신성
- ④ 학문적 공헌도 및 시사점
- ⑤ 내용/문장의 명료성

3. 심사절차

순서	항 목	내 용
1	논문접수	사회과학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 이메일로 접수하되 수신자는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2	접수통지	저자에게 접수확인 사항을 e-mail로 통지한다.
3	편집위원회 소집	분기별 논문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4	편집위원회 개최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명단 중에서 가장 적합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② 임시 심사자의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본인의 승낙을 받은 후, 심사를 의뢰한다.
5	논문심사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추후공지)에게 심사마감일까지 발송한다.
6	게재여부 결정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7	결과통보 및 수정요구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대해 저자에게 통보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가 “부분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접수하여 다시 해당 심사위원에게 수정확인을 의뢰한 후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대폭수정후 재심사 논문은 차기 정기 편집위원회에서 다시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한다(이때, 연구자가 요청할 경우 1차 논문심사자들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4. 편집 방침

- (1) 논문의 게재 순서는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나, 학술지의 구성을 위해 편집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2) 논문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 (4)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소유한다.
- (5)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 (6)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5.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2월 28일 개정하여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III. 「한국사회과학연구」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과학연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활동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위원회

「한국사회과학연구」의 편집, 발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 1. 자격

위원회 위원의 선정은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 및 국내외 사회과학 연구자 중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특히 전국규모의 학회지 및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대내·외적 학술활동이 많은 자로 한다.

##### 2. 조직

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편집간사 1인을 포함한다.

##### 3. 편집위원의 위촉 및 임기

###### 1) 위원회의 위촉

편집위원은 각 분야별 학문적 연구업적과 전공영역을 고려해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은 사회과학연구소장이 선임한다.

###### 2) 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논문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위원 교체 시 전체위원 정족수의 50%까지만 교체할 수 있다.

##### 4. 임무

위원회는 우수 연구논문 발굴 및 「한국 사회과학 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 외부심사위원 선정, 그리고 편집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 5.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다른 위원에게 본인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3. 논문심사

1.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

자가 담당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각 분야별 학문적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하여 총 20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3.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의견서를 작성,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논문의 심사결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 **4. 기 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5.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2월 28일 개정하여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 학술지 논문 투고 안내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공식 학술지인 『한국사회과학연구』는 2011년까지 연간 2회(6월, 12월)발간하였으나 2012년부터 연간 3회(6월, 10월, 2월)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과학 연구주제의 급증과 학계의 연구 열의가 고조됨에 따라 연구기회를 더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에 투고논문을 접수하는 형식에서 탈피하여 연간 상시논문을 접수 받고 각 분기별 논문 마감 일자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입고 선출판” 방침에 따라 심사에 통과된 논문이 많을 경우, 차기 호에 게재하여 우수한 논문이 탈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 논문주제 : 자유 (단, 사회과학 현상과 관련된 논문)
2. 원고분량 : A4 사이즈 (글자크기 10P, 행간180% 기준)로 20페이지 내외, 원고분량 준수)
3. 신청내용 : 원고는 본 학술지 “논문제출 규정”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 편집 위원회나 연구소 간사 교수님께 그룹웨어로 발송
4. 원고 접수처  
우360-76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편집위원회 ☎ (043)229-7911, FAX : 229-8233
5. 제출된 논문은 반드시 본 연구소가 규정한 논문의 제출 규정에 일치하여야 함.

### □ 『한국사회과학연구』 발간 목적

『한국사회과학연구』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의 발간 목적은 사회과학 이론(Theories)과 실무(Practices)에 관련된 학문영역 및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본 학술지는 사회과학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Theoretical Study), 경험적 실증 연구(Empirical Study),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 및 사례연구(Case Study)를 수록하며,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 이거나 발간된 논문이어서는 안되며, 개별 논문으로서의 독창성을 지녀야 합니다. 사회과학의 하위분야로서 법학, 행정학, 도시계획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광고홍보학, 사회복지학, 지적학 등과 같은 영역의 세부 주제 및 학제 간 연구를 장려합니다.

2014년 7월 31일 인쇄

2014년 7월 31일 발행

발행인 : 조 병 선

발행처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60-76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TEL. 043-229-7911, FAX. 043-229-8233

인쇄처 : 출판사

(360-83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36-3번지 2층

TEL. 043-256-8903, FAX. 043-253-7042

---